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42-08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FTA

March 2021 Vol.01(통권 33권)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42-08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FTA

March 2021 Vol.01(통권 33권)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Contents

FTA TRADE REPORT

March 2021 Vol.01(통권 33권)

FTA 동향 006

FTA TOON 051

한-영 FTA 관련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 054

정영욱 | 원스탑관세법인 관세사

RCEP 협정의 주요 내용과 체결 의의 062

오수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한-영 FTA 쉽게 활용하기 070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원

파나마의 통상 및 통관환경 084

이주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관세율표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 품목분류와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094

오수교 | KPMG 관세법인 관세사

EU 관세행정 발전방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104

정재호 | 주벨기에 및 유럽연합 한국대사관 관세관

한-EU FTA 활용하기 116

EU 4대 경제대국 스페인의 시장 잠재력

정기훈 | 주스페인대사관 경제 담당 실무관

FTA 지도 128

- 2019년 vs. 2020년 수출입 증감품목 (FTA 체결국)
- 한눈에 보는 2019년-2020년 주요 산업별 (MTI 3단위 기준) FTA 활용 수출입 비교

쉬어가는 페이지 140

철강(제72류)의 품목분류와 FTA 원산지결정기준 144

최지수 | 관세법인 더블유 관세사

FTA-PASS 400% 활용하기 160

기업의 모든 자료관리부터 사후검증 대비까지 PASS

김소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와 이를 수입하는 FTA 체약상대국의 HS CODE의 해석 상이에 따른 대응 170

신호근 | 관세법인 한림(서울) 대표 관세사

FTA 동향

2020년 FTA 체결국과 603억 달러 무역흑자

협정별로는... 아세안이 342억 달러로 흑자규모 1위

우리나라는 2020년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과의 교역에서 6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는 1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FTA 발효국과의 수출은 전년대비 3.9% 줄어든 3,831억 달러, 수입은 1.3% 줄어든 3,228억 달러로 수출 감소 폭이 수입 감소 폭보다 커 무역수지 흑자액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가 150억 달러 적자임에도 전체 무역수지는 63억 달러 증가한 4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FTA 교역이 선방한 것으로 분석됐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지난해 대비 2.7% 감소해 전체 교역 감소폭 6.2%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다. FTA 주요 발효국 중 아세안과의 교역이 4.9%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대아세안 수출이 6.3% 큰 폭으로 감소한 탓에 아세안 전체 교역규모가 줄어들었지만, 무역흑자는 342억 달러로 1위를 기록해 거대 경제권인 아세안 과의 교역이 중요함을 방증했다.

FTA 상대국 중에서 유럽연합(EU)은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이는 전년대비 수출은 1.2% 감소한 데 반해 수입이 6.6%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특히 승용차·소매의약품·가방 등 소비재 수입이 급증했다.

[2020년도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교역 규모			
		교역	수출	수입	수지
FTA 발효국	2019년	725,893	398,703	327,190	71,513
	2020년	705,959 (△2.7)	383,118 (△3.9)	322,841 (△1.3)	60,277
비발효국	2019년	319,683	143,530	176,153	△32,623
	2020년	274,378 (△14.2)	129,671 (△9.7)	144,708 (△17.9)	△15,037
전체	2019년	1,045,576	542,233	503,343	38,890
	2020년	980,337 (△6.2)	512,789 (△5.4)	467,549 (△7.1)	45,240

* 전년대비 승용차 8.4%, 소매의약품 6.5%, 가방 등 신변잡화 15.9% 증가

FTA 수출활용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진 74.8%, 수입활용률은 4.9%포인트 증가한 81.5%로 집계됐다.

수출활용률은 캐나다(95.4%), EU(87.2%), 미국(84.4%), EFTA(80.1%)이며, 수입활용률은 칠레(99.1%), 뉴질랜드(92.7%), 페루(89.3%), 베트남(89.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FTA 활용률이 증가한 협정으로는 수출의 경우 중국(7.8%), 인도·뉴질랜드(1.6%)이며 수입의 경우 EFTA(12.9%), 미국(8.6%), 중국(5.0%)이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활용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한·중 FTA 발효 5년차인 2019년 이후부터 관세 인하 효과에 따른 수혜품목이 늘어나면서 FTA 활용률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 (수출) 2019년 57.2% → 2020년 65.0% (7.8% ↑)
(수입) 2019년 80.1% → 2020년 85.1% (5.0% ↑)

주요 산업별 활용률은 수출은 기계류, 수입은 농림수산물 분야에서 각각 85.5%, 92.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자동차* 수출시 대부분 FTA를 활용(99.0%)하고 있어 기계류산업의 높은 활용률을 주도하고 있고, 합성수지 및 정밀화학원료의 수출이 급증하며 FTA도 적극 활용한 영향으로 화학공업제품 활용률이 3.5% 가장 크게 증가했다.

* 기계류의 총 수출금액 551억달러 중 자동차가 284억달러로 51.5% 차지

와인과 커피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 기호식품으로 수입시 대부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농림수산물 수입활용률을 높게 유지하게 했고, 수송기계·산업기계의 활용률이 급증*해 기계류 전체 수입활용률 상승에 기여했다.

* 선박·철도차량 부품 등 수송기계 7.1%, 섬유·화학 및 기초산업기계 13.4% 급증

[주요 FTA 발효국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교역		수출		수입		무역 수지
	2020.12월말	증감	2020.12월말	증감	2020.12월말	증감	
전체	705,959	△2.7	383,118	△3.9	322,841	△1.3	60,277
중국	241,425	△0.8	132,555	△2.7	108,870	1.5	23,685
아세안	143,886	△4.9	89,051	△6.3	54,836	△2.4	34,215
미국	131,646	△2.6	74,159	1.1	57,487	△7.1	16,672
EU	111,630	2.8	52,144	△1.2	59,487	6.6	△7,343

[주요 산업별 FTA 활용 현황]

(단위: %)

순위 (금액)	수출			수입		
	산업	활용률	증감	산업	활용률	증감
1	기계류	85.5	0.4	기계류	85.8	9.4
2	화학공업 제품	72.0	3.5	화학공업 제품	87.3	4.3
3	전자전기 제품	67.6	△1.3	광산물	61.4	4.6
4	철강금속 제품	63.8	△4.2	농림수산물	92.2	0.6
5	플라스틱 고무 가죽	69.6	1.1	전자전기 제품	77.0	4.0
	평균 활용률	74.8	△0.1	평균 활용률	81.5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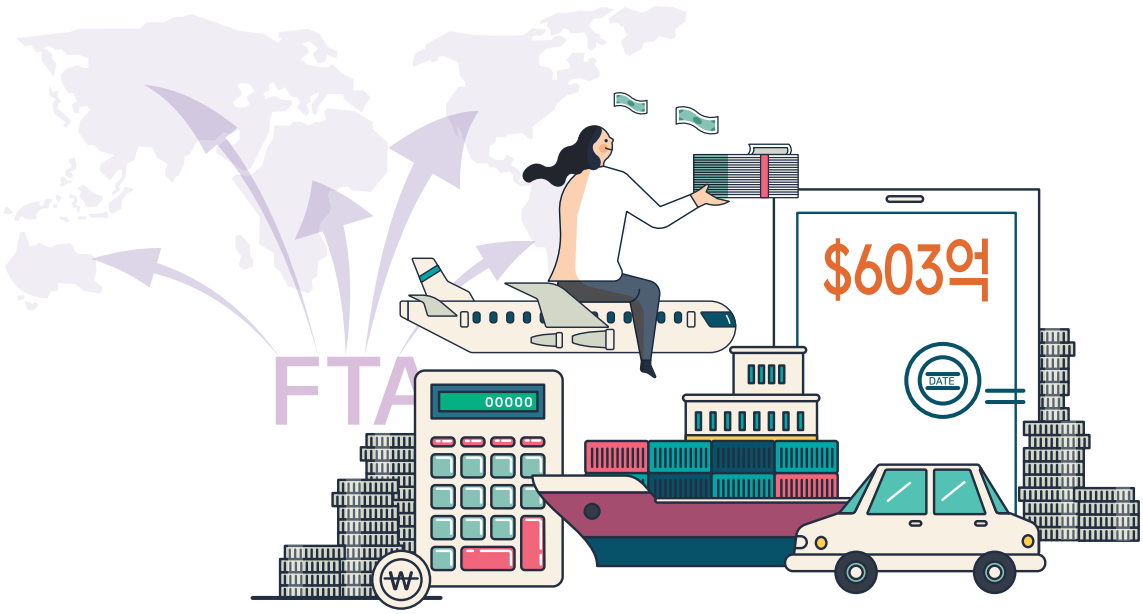

관세청, 코로나19 백신 신속통관 준비 완료

백신 수입통관 현장 사전점검

관세청은 1월 28일(목)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코로나19 백신 수입에 대비하여 사전점검 및 모의훈련을 자체 진행했다.

관세청은 짧은 보관기관과 적정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통관에 초점을 맞춘 '특별 통관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였으며, 백신 이동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은 없는지 점검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 도착 즉시 국내로 운송이 가능하도록 보다 신속·간편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① 수입자의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하여, 백신이 도착하기 전 세관 수입심사를 완료하고, ② 세관검사를 생략하는 한편, 백신과 포장용기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신고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 백신 : 관세 0%, 부가세 10% / 포장용기 : 관세 8%, 부가세 10%

③ 또한, 백신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항공기에서 바로 백신 전용 운송차량에 적재해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 "코로나19 백신의 차질 없는 국내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통관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 도입일정과 물량 등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한 번 최종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통관절차 등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반통관 절차

▶ 특별 통관절차 적용

★ **세관검사, 보세구역 반입 등** 절차 생략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

관세청장, 설명절을 맞아 계란 신속통관 현장 점검

관세청장은 설명절을 앞둔 2월 8일(월) 오전 신선계란 수입통관 현장인 경기도 여주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신속통관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계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의 통관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장은 검역·식품검사 등 통관 전 사전조치를 위해 신선계란을 보관중인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관세청장은 검역·식품검사*를 통과한 경우 즉시 통관절차를 집행해 설명절 이전 시중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업체의 작업공간 부족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추가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 검역 :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수입 검역조건확인(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검사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위생요건 확인(식약처)

**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 수입물품은 보세구역(창고)에 보관되어야 하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세구역 이외의 구역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허가하는 제도

설명절 전까지 2,000만개의 계란을 수입해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긴급수입 계란 신속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2일부터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에 대해 신속한 보세운송 승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등을 통해 국내도착 후 지체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계란 등 설 성수품 가격안정 민관협동 전담반'에 적극 참여해 유관기관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계란을 포함한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섬유수출기업에 '유럽연합-베트남 FTA' 적극 활용 당부

원산지 누적규정, 2020년 12월 23일부터 소급 적용

관세청은 유럽연합(이하 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됨에 따라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이런 내용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비로소 시작됐다.*

* 2월 8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조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EVFTA 누적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fabrics)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

특히, 직물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EU-베트남 FTA 누적규정 적용 개요도]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이에 따라 관세청은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VFTA 누적규정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세·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전국 세관 기업지원 부서 및 미국·베트남 현지 등 70명 배치

사례 1

A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 현지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요청을 받았다. FTA 활용 경험이 없어 난관에 봉착한 A사는 서울세관을 찾게 됐고, 공익관세사로부터 C/O 발급부터 품목분류까지 상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한-베트남 FTA를 활용(관세율 20% → 0%)해서 첫 수출에 성공했다. A사 대표는 "1인 기업이라 혼자서 수출을 진행하는데 한계를 느꼈는데 서울세관에서 직접 나와 상세하게 알려주고, 공익관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사례 2

계측기를 수출하는 B사의 요청으로 부산세관 기업지원팀은 공익관세사와 함께 B사를 직접 방문했다. 수출 실적이 꾸준함에도 불구하고 관세환급 받은 이력이 전혀 없음에 착안해 과거 2년 치 관세환급과 자동간이환급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FTA 체결국인 베트남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줬다.

사례 3

의료기기를 인도네시아에 신규 수출하려던 C사는 바이어 측의 갑작스런 원산지증명서 요구로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광주세관의 공익관세사 지원활동을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했다. C사의 원산지 관리능력 제고와 향후 원산지증명서 간편 발급을 위해 공익관세사는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상담을 제공했고, 그 결과 C사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함으로써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EU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오늘부터 58명의 2021년 공익관세사를 위촉·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익관세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업체 방문 상담은 최소화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의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년차를 맞이했고, 작년까지 총 2,800개 기업에게 FTA 활용(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의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리 FTA 집행기획담당관은 “국내 공익관세사 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베트남 현지에도 각각 8명, 4명의 공익관세사를 구성해 운영 중이니 우리 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도와드립니다

2.25~26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 3.2~19일 상반기 지원 신청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 수출물품 검증 요청건수 : (2018년) 651사 → (2019년) 254사 → (2020년) 783사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예산은 약 4.3억원 투입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부담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수혜기업의 부담률을 하향 조정(최대 40% → 30%)하고, 상담 무료 제공 범위를 확대(2020년 매출액 2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했다.

올해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FTA 포털을 참고하거나 2월 25~26일 양일간에 걸쳐 각각 서울세관, 인천세관 주관으로 개최될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된다.

* 온라인 사업 설명회 참여 신청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관세청 FTA 포털'을 찾아 공지사항 참조

사업세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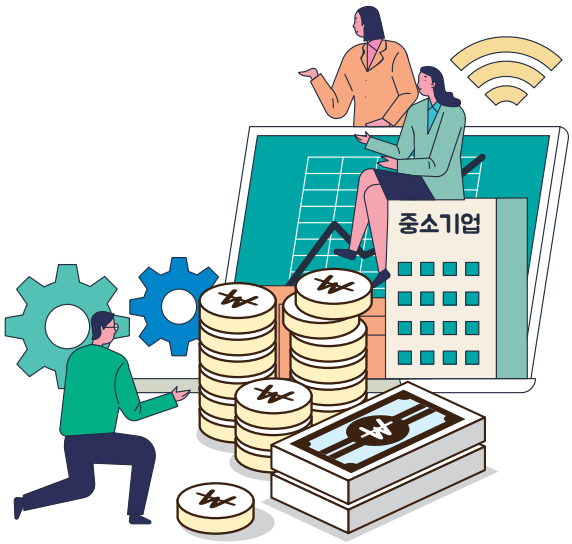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

한-메르코수르 TA, 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농림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美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밝혔다.

* 인구 6억4천만명, 경제규모 5.8조불(세계 GDP의 6.7%)의 신흥경제지역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무역 흑자 지역

"이번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 1995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간 결성한 관세동맹으로 2018.9월 이후 5차(2020.2월) 협상 진행

** 2012년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간 결성한 지역 연합으로 협상세칙 합의 및 협상개시 구체화 추진 중(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시 한-멕 신규 FTA 체결 및 칠·페·콜과의 FTA 개선효과)

*** 한-칠레 FTA(2004년 발효)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 총 4차례(2018.11월, 2019.7월, 2019.10월, 2020.11월) 개선 협상 개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20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남미 교역 규모]

(억불)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367	363	359	307	254	281	278	263	195
수입	197	184	183	160	152	171	193	203	203
교역	564	547	542	467	406	452	471	466	398
무역수지	170	180	176	147	102	110	84	60	△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1.20)

한-우즈베키스탄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기반 추진

양국 정상 화상회의 계기 무역협정 협상개시 공식 선언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정상은 2021년 1월 28일(목) 15시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간 무역협정의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2019년 4월 정상순방을 계기로 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베키스탄측 투자대외무역부는 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MOU를 체결한 이후, 2020년 7월 장관급 면담 계기 공동연구를 완료하여 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협상개시 전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2020년 10월)하고,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2020년 11월) 계기 협상개시 추진에 합의하며 본격 협상개시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우즈벡과의 무역협정 추진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①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은 신북방국가와 추진하는 첫 상품무역협정이다.

* 현재 신북방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은 없으며, 러시아와는 서비스·투자 FTA 협상 진행중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 최대시장*으로, 상품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뿐 아니라 신북방 진출 교두보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앙아 5개국 중 인구규모 1위 : 우즈벡 3,394만명, 카자흐 1,899만명, 타지키스탄 975만명, 키르기스스탄 662만명, 투르크메니스탄 612만명

② 또한, 무역협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면화, 금,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과 젊은 노동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을 뿐 아니라, 최근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우즈벡의 경제성장률(IMF, %) : (2017)4.5 → (2018)5.4 → (2019)5.6 → (2020e)0.7

이번 무역협정에도 경제협력 챕터를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경제협력을 통한 우리기업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STEP*)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새로운 FTA 모델*의 첫 번째 사례이다.

*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공식명칭으로 'STEP(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에 합의

**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모델로서, 시장개방 이외 우리의 산업발전 및 FTA추진경험 공유를 통해 개도국 경제성장 기여 및 경제협력관계 강화 추진

양측은 STEP을 통해 우즈벡의 시장개방과 산업발전을 연계하여 양국의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 5대 면화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섬유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섬유원부자재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ODA를 통해 구축한 섬유 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경쟁력 제고와 우리 섬유기업 투자진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양국의 지속가능한 섬유산업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2015~2019년 ODA 지원을 통해 2019.9월 개소

협상개시 공식 선언에 따라 양측은 올해 1/4분기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 협상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1.28)

2021년 EU 통상정책 전망 세미나 개최

EU와 기후변화,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 강화 제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28일(목) 코엑스에서 한국유럽학회(회장 이무성)와 공동으로 「EU 통상정책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美 바이든 정부의 출범, 中-EU 투자협정 타결 등에 따른 EU 통상정책의 변화를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지난해 우리와 EU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인 입국 허용과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공조하였다.

*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 (폴란드, 헝가리) 및 신차 출시 (체코, 터키) 등을 위한 기업인 예외 입국 실적은 약 3,700여명임

그 결과, 2020년 교역액은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하였고, 유럽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큰 애로 없이 경제 활동을 지속하였다.

* 교역(억불, 영국 포함) : (2017)1,113 → (2018)1,200 → (2019)1,086 → (2020)1,116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EU 양측이 유럽 그린딜과 한국 K-뉴딜의 연계하에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글로벌 현안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EU 집행위는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2019.12월) 및 디지털 미래 전략의 일환으로 AI(The White Paper on AI),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 공개(2020.2월)

"올해 한-EU 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계기에 양측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EU의 對美, 對中 관계에 있어 협력과 견제가 혼재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기후변화, 디지털 등 글로벌 이슈에서는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 EU-미국간 새 대서양 동맹(A New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 발표(2020.12.2) 및 EU-중국간 포괄적 투자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타결(2020.12.30)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규범 중심의 질서' 등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對中 견제는 아시아·태평양, EU 등 동맹과의 협력을 구축하여 '양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였다.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는 美-EU 통상관계가 상호 관세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에서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무역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對中 통상정책에 있어 EU와 미국은 공조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였다.

부경대 안상욱 교수는 EU가 유럽그린딜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디지털세 도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태현 전문연구원은 기후변화, 디지털 분야 등에서 한-EU간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EU의 관련 규제 신설 및 외국인 투자 사전 심사 강화 등의 리스크 준비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1.29)

붙임 주제별 발표 내용 요약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 통상정책 변화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 신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對中 견제는 동맹과의 협력을 구축하여 '양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전략 수립 및 미국-EU 간 전통적인 동맹관계 강화가 전망되며 경기회복을 위한 보호조치도 당분간 지속 예상.

■ 美,中 주요국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EU 통상정책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
- 美-EU 관련, 기존 협력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으나 일정 수준의 무역 긴장은 계속될 수 있으며, 환경 부분에 있어 양측은 다양한 협력 이슈를 발굴할 것으로 예상됨.
- 對中 정책에 있어 EU와 미국은 중국의 내부 시장 개방, 글로벌 규범 수용 등에 초점을 두고 공조할 가능성이 높음.

■ 2021년 EU의 주요 정책과 통상 현안
(안상욱 부경대 교수)
- EU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유럽그린딜 실현, 디지털 경제, 해외 보조금 규제 등과 관련하여 한국은 화석연료자동차 대체를 위해 EU가 도입할 입법조치들, 전기·전자장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순환전자(circular electronics) 이니셔티브가 국내 전자제품 수출에 미칠 영향, 디지털세 도입, 해외 보조금 규제 등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함.

■ 한국의 對EU 통상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태현 전문연구원)
- 금년 EU는 적극적으로 경제·산업·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그린딜 중에서도 디지털, 기후변화, 에너지, 스마트운송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그린딜과 한국판 뉴딜의 연계를 통해 탄소 배출 감축,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2021년 2월 3일(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 한-캄 FTA 협상 타결 선언식(화상) 개요

- **(일시/장소)** 2.3.(수) 13:00 / 소공동 롯데호텔
- **(참석자)** 우리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캄측 빤 소라삭 상무부 장관 등
- **(내용)** 협상 타결 선언 및 공동 선언문 서명

양국은 2019년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 양자 FTA 추진에 합의, 공동연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협상을 개시하였다.

이후 7개월간 4차례 공식협상*, 회기간 협상을 집중 진행하여 상품, 원산지, 통관,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10개 협정문 및 시장개방에 합의하여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하였다.

* (1차) 2020.7.30~31 (2차) 2020.8.31~9.2 (3차) 2020.10.6~8 (4차) 2020.11.18~20

한-캄보디아 FTA는 우리의 旣체결 FTA 중 최단기(7개월)*에 타결하였으며, 비대면으로 협상 全 과정**을 진행한 최초 FTA협상이다.

* (EFTA) 9개월, (미국) 10개월, (싱가포르) 13개월, (중미·페루) 17개월
** 협상 개시선언, 4차례 공식협상, 3차례 회기간 회의, 수석대표 회의, 타결선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가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양국이 더 많은 교역·투자·협력을 이루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오늘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에는 현대건설기계, 대주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티에이치인터내셔널, 보해양조 등 기업이 함께 참여하였다.

건설기계 기업들은 "中-아세안 FTA로 중국산 건설중장비가 무관세로 캄보디아에 수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산과 동등한 경쟁뿐만 아니라 일반관세 (15%)를 부과받고 있는 일본, 유럽, 미국산에 비하여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캄보디아 건설중장비 관세율 : (현행) 15% → (한-캄보디아 FTA) 10/15년에 걸쳐 관세 0%으로 인하

한-캄보디아 FTA 타결은 우리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무역투자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싱가포르(2006년 발효), 베트남(2015년 발효), 인도네시아(2020.12월 서명)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네 번째 양자 FTA 체결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양자 FTA는 양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체제의 RCEP 협상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지역의 허브이며, 성장잠재력이 큰 캄보디아와의 FTA 타결로 아세안 내 시장접근을 공고화하고 있다.

* 캄보디아는 지난 10년간 연 7%대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며(단, 2020년은 코로나19로 -2% 성장), 35세 이하 인구 약 65%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역내 공급망(RVC)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기업은 POST-베트남, POST-차이나*로 캄보디아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2020.2월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로 현대·기아 자동차의 생산 중단 위기시, 캄보디아에서 생산한 부품(와이어링 하네스) 구입 등으로 생산 재개

양국은 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한-아세안 FTA(2007)와 RCEP에도 불구,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철폐 했으나, 금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0.8%p, 전체 수입액의 19.8%p(1.1억불 규모)를 추가 개방하고 있다.

또한, 우리측 對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및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 뿐만 아니라, 딸기(7%), 김(15%) 등 농수임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로 캄보디아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 다만 우리측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 FTA(RCEP, 한-베트남 FTA, 한-인니 FTA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

한국과 캄보디아는 양국간 공급망이 형성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철폐하여 양국간의 밸류체인을 강화하였다.

특히, 섬유 품목에 있어 캄보디아측은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우리측은 의류(5%)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상호 교역증대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의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완화*하여 우리기업의 섬유·의류 관련 수출을 용이하게 했다.

* 수출국에서 '재단·봉제' 모두를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 삭제

한-캄보디아 FTA내 협력 협정문에 합의하여 정보통신·전자상거래·농업 등 분야에서 기술·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활동을 통하여 우리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 및 투자가 가능하다.

* 산업발전정책(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IDP 2015-2025)을 통해 의류, 신발, 건설, 식품가공에 편중된 자국 산업 구조를 다각화 추진중

캄보디아는 2019년 8월 공공투자 계획(Public Investment Program 3 year-Rolling)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을 통해 2020~2022년 동안 600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한 우리의 旣체결 FTA 중 최초로 팬데믹 상황 시 협력을 합의하여, 팬데믹 상황에도 양국간 필수 물자·인력의 이동 등을 통해 경제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양측은 법률검독 및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2.2)

해외 FTA 활용애로,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산업부·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온라인 워크샵'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2월 25일 KOTRA와 함께 해외무역관에 위치한 15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이하 해외센터) 전담직원과 비대면 화상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자국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전자무역의 확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등 통상 교역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올해 해외 FTA활용사업 점검과 사업애로를 청취하고, 해외 현지맞춤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인도·베트남 등 8개국 15곳에 있는 해외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진행되었다.

* FTA 해외활용지원센터(개소, 2021.2): 중국6(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다롄 톈진), 베트남 2 (하노이 호치민), 인도2(뉴델리 첸나이), 인도네시아1(자카르타), 태국1(방콕), 필리핀1(마닐라), 멕시코1(멕시코시티), 영국1(런던) 등 8개국 15곳

금년 해외센터는 디지털 교역 확대, 통상환경 급변 등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 FTA 활용 설명회 및 컨설팅을 역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해외센터 전담직원으로부터 연중 무료로 FTA 활용을 상담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여전히 진행중인 코로나 상황을 고려,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FTA국가별 수출입 통관 정보, 원산지 결정기준 및 활용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컨설팅 설명회를 병행해 개최할 계획이다.

* (예시) ❶ 인도 원산지관리규정 시행으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여부 논란으로 통관애로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 원산지관리규정(CAROTAR 2020) 대응 웨비나' 등 설명회 개최

❷ 베트남 한-베 FTA, EVFTA, RCEP, CPTPP까지 총 14개 협정을 체결 중으로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활용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 및 가이드북 발간 계획

❸ 베트남산 의류에 사용된 한국산 직물도 베트남-EU FTA 특혜적용이 가능함을 적극 설명

② 현재 해외센터 실적점검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기존센터 재배치를 검토하고, RCEP 발효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RCEP 지역대상으로 신규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③ 특히, 국내외에 소재한 FTA 활용애로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18개 국내 FTA 활용지원센터*, FTA 종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반기별 화상 워크숍도 새롭게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 국내 FTA 활용지원센터(18곳): 강원1, 경기2, 경남1, 경북2, 광주1, 대구1, 대전1, 부산1, 울산1, 인천1, 전남1, 전북1, 제주1, 충북1, 충남1, 세종1

산업부와 KORTA는 우리기업과 해외 바이어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2015년 4월 이후 해외현지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15개 해외센터에서 3,900여건의 FTA활용 상담 컨설팅을 수행했고, 중남미거점 확보와 브렉시트 대응지원을 위해 멕시코(2020.5)와 영국(2020.12)에 신규 센터를 개소하는 등 활발한 기업지원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FTA 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국내 18개 지역 및 15개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FTA 활용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FTA 시장진출을 원하거나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FTA 활용센터 활용"을 당부하였다.

[수출제품의 HS CODE 개정으로 인한 애로해소 해결사례]

◇ 한국의 두유제조 수출기업인 K사는 한-인도 CEPA 세율을 적용받아 5%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던 중 인도세관의 CEPA적용불가 통보로 기본관세 30% 적용상황에 직면하면서 해당기업에서 인도 뉴델리 FTA해외활용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해옴

◇ 뉴델리 센터는 5년 단위로 이뤄지는 HS CODE 개정에 따라 두유의 HS CODE가 분류·변경되었음에도 인도세관 전산망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임을 파악, 인도세관 상급 세관원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한 후 문제를 해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2.26)

3월 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발효

중미 물류허브, 파나마 발효로 중미 및 북남미 교역 확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중미 FTA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 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협정문 발효조항*에 의거하여, 3월 1일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 한-중미* FTA를 전체 발효한다고 밝혔다.

* 협정문 제24.5조 :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다.

* 니카라과·온두라스(2019.10.1), 코스타리카(2019.11.1), 엘살바도르(2020.1.1)

한-중미 FTA는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미국(2012.3), 캐나다(2015.1), 칠레(2004.4), 페루(2011.8), 콜럼비아(2016.7)

협상 개시선언(2015년 6월)

정식서명(2018년 2월)

■ 한-중미 FTA 및 파나마 발효 기대효과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하였으며,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품목수 기준) (韓) 95.6%, (파) 95.3%, (수입액 기준) (韓) 99.5%, (파) 99.3%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중소 품목으로의 교역 다양화가 기대된다.

특히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측 관세가 즉시 철폐(0%)되어, 가공식품 3대 수출품목인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중미 통합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중-코스타리카 FTA(20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와 체결한 FTA 전무

특히 한국은 파나마운하 이용 상위국가*(세계5위, 2020년)로서, 파나마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 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① 미국(179), ② 중국(39), ③ 일본(35), ④ 칠레(28), ⑤ 한국(28) (백만톤, 2020년 기준)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FTA를 발판으로

우리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

특히 파나마의 경우, 민자사업도 개방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 주한 중미 5개국 대사 간담회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한-중미 FTA 전체 발효를 기념하여, 2월 25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중미 FTA 성과창출 및 이행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미 5개국 대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미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미 FTA 전체 발효가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이에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FTA가 경제 활성화의 거울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발효초기 FTA 이행의 기틀을 견고히 다지고, 분야별 이행을 각별히 점검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중미 5개국 대사들은 3월 1일 전체 발효를 기점으로 금년내 제1차 FTA 공동위 및 산하 이행위 등 이행 협의채널을 본격 가동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주변국가의 가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키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중미 FTA 활용 시장진출 전략, 수출 유망품목 등 우리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행위 등을 통한 FTA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2.26.)

한·미 FTA 발효 9년차(2020년) 교역 동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글로벌 교역 감소* 및 저유가**로 2020년 양국간 교역은 1,316억불로 전년대비 △2.7% 감소하였다.

* 2020.12월 기준 세계경제 성장률(%): △4.2 / 세계교역 증감률(%): △10.3
** 국제유가 추이(두바이유, $/배럴): (2019) 63.5 (2020) 42.2(△33.6%)

FTA 발효 후 對美 교역 증감률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對세계 교역 증감률을 지속 상회하였으며, 2020년에도 對세계(△6.3%)에 대비하여 높다.(FTA 발효 후 對美 교역 동향 표 참조)

2020년 對세계 수출은 감소(△5.5%)한 반면, 對美 수출은 741억불로 1.1% 상승하여 對세계 수출 증감률 상회하였다.(FTA 발효 후 對美 수출 동향 표 참조)

[FTA 발효 후 對美 교역 동향]

(단위: 억불, % /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對美 교역	1,018 (1.0)	1,036 (1.8)	1,156 (11.6)	1,138 (△1.6)	1,097 (△3.6)	1,193 (8.8)	1,316 (10.3)	1,352 (2.7)	1,316 (△2.7)
對세계 교역	10,675 (△1.1)	10,752 (0.7)	10,982 (2.1)	9,633 (△12.3)	9,016 (△6.4)	10,522 (16.7)	11,401 (8.4)	10,455 (△8.3)	9,801 (△6.3)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FTA 발효 후 對美 수출 동향]

(단위: 억불, % /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對美 수출	585 (4.1)	621 (6.0)	703 (13.3)	698 (△0.6)	665 (△4.8)	686 (3.2)	727 (6.0)	733 (0.9)	741 (1.1)
對세계 수출	5,479 (△1.3)	5,596 (2.1)	5,727 (2.3)	5,268 (△8.0)	4,954 (△5.9)	5,737 (15.8)	6,049 (5.4)	5,422 (△10.4)	5,125 (△5.5)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對美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으로 컴퓨터(104.2%)[1], 반도체(25.3%)[2] 등의 수출 호조로 對美 수출이 증가하였다.

다만, 석유제품(△46.5%)[3], 무선통신기기(△26.4%)[4], 자동차부품(△11.5%)[5] 등은 감소하였다. 2020년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3%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다.

* 주요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2019년) ① 중국(18.1), ② 멕시코(14.3), ③ 캐나다(12.8)
(2020년) ① 중국(18.6), ② 멕시코(13.9), ③ 캐나다(11.6)

[對美 품목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 / 한국무역협회)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2012	2019	2020	품목명	2012	2019	2020
1	자동차	10,574	15,743	15,758	원유	0	8,980	5,390
2	반도체	2,611	5,951	7,457	반도체 제조용 장비	2,711	3,202	4,629
3	자동차부품	5,961	6,211	5,494	반도체	4,478	3,711	3,450
4	컴퓨터	1,523	2,129	4,347	LPG	98	3,162	2,930
5	무선통신기기	5,710	4,151	3,054	항공기 및 부품	3,144	3,528	2,609
품목 총계 (비중 %)		26,379 (45.1)	34,185 (46.6)	36,110 (48.7)	품목 총계 (비중 %)	10,431 (24.1)	22,583 (36.5)	19,008 (33.1)
전체 총계		58,525	73,344	74,116	전체 총계	43,341	61,879	57,492

* 2020년 MTI 3단위 기준 수출입 상위 5개 품목의 교역액 및 비중

1)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서버 투자 확대 및 SSD 전환 가속화에 따른 SSD 수출 증가, 재택근무 등을 위한 노트북 수요에 기인

2)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서버·PC용 수요 호조, 상반기 부진했던 모바일 수요도 하반기에는 회복세 시현 등 전반적으로 수요 확대

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락(△33.6%)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및 이동제한 조치로 항공유 및 수송유 중심의 글로벌 수요 감소로 對美 수출 급감

4) 길어지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로 인한 수요 감소 및 중저가 제품군 확대로 인한 국내생산 비중이 높은 '플래그십(최상위) 라인업' 출하량 감소로 수출 감소

5) 자동차 수요 부진의 연쇄 작용 및 코로나19 이후 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재고 누적에 기인

2020년 對美 수입은 575억불로 전년대비 △7.1% 감소하였다.

對美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반도체(제조용장비)·항공기 및 부품 등으로 반도체 제조용장비(44.6%)[6]·자동차(36.0%)[7]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원유(△40.0%)[8], 반도체(△7.0%) 등은 감소하였다. 2020년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12.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 주요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2019년) ① 중국(21.3), ② 미국(12.3), ③ 일본(9.5)
(2020년) ① 중국(23.3), ② 미국(12.3), ③ 일본(9.8)

[FTA 발효 후 對美 수입 동향]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對美 수입	433 (△2.8)	415 (△4.2)	453 (9.1)	440 (△2.8)	432 (△1.8)	507 (17.4)	589 (16.0)	619 (5.1)	575 (△7.1)
對세계 수입	5,196 (△0.9)	5,156 (△0.8)	5,255 (1.9)	4,365 (△16.9)	4,062 (△6.9)	4,785 (17.8)	5,352 (11.9)	5,033 (△6.0)	4,676 (△7.1)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과 미국의 상대국 시장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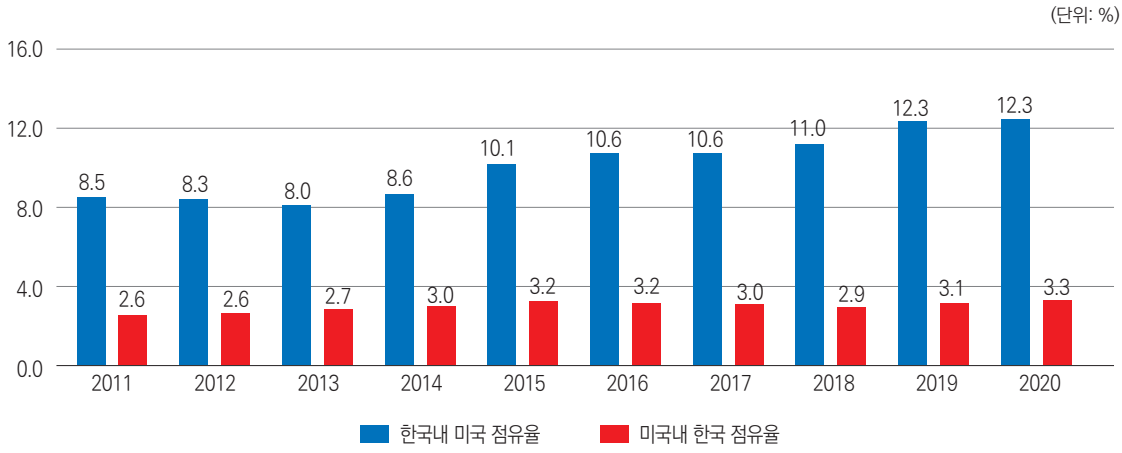

* 출처: US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국무역협회

6) 반도체 시황 개선 기대로 2019년 대비 2020년 반도체 설비투자 58.6% 증가(99 → 157억불)
7) 테슬라 모델3 등 전반적인 미국브랜드 판매호조와 GM 일부차량 수입 본격화
8) 국제유가의 하락((두바이유, $/B, %): (2019) 63.5 → (2020) 42.2(△33.6%)에 기인

2020년 對美 무역수지는 166억불 흑자로 수출은 증가(1.1%)한 반면 수입이 감소(△7.1%)하여 전년대비 흑자폭이 증가하였다.

특히, 2019년 양국간 서비스 교역은 493억불로 전년대비 5.1% 증가하였다.[9] 참고로 미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 교역국으로 2019년 對세계 서비스 교역(2,345억불)의 21.0%를 차지한다.

FTA 발효 후 8년간(2012 ~ 2019년) 평균은 상품 및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2011년 대비 3.4% 증가하였다. 또한, 한·미 FTA 발효전(2011년)과 비교시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교역 급증(245.9%)하였다.

2019년 對美 서비스 수출(수입 收入)은 180억불(전년대비 10.4% 증가)로 미국은 우리의 제2의 서비스 수출국이다. 2019년 서비스 수출 상위 국가는 ① 중국(203억불), ② 미국(180억불), ③ 일본(94억불)이다.

지식재산권 사용료(61.0%), 여행(24.1%), 기타 서비스(14.3%)의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운송은 △5.8% 감소하였다. 2019년 對美 서비스 수입(지급 支給)은 313억불로 2.3% 증가하였다.

對美 서비스 수입 비중이 높은 R&D·법률 등 기타 사업서비스(10.1%) 및 운송(1.6%)은 증가한 반면, 여행(△7.5%)·지재권사용료(△8.5%)는 감소하였다.

2019년 서비스 수지는 133억불 적자로 전년대비 적자 감소하였다. 對美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지재권 사용료·여행 수입 증가 등으로 FTA 발효 후 8년간(2012 ~ 2019년) 평균 수지는 2011년 대비 13.2% 증가하였다.

[對美 무역수지 동향]

(단위: 억불 /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對美 수지	250	258	233	179	138	114	166

[FTA 발효 후 對美 서비스 교역 동향]

(단위: 억불, % / 한국은행)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역	450	496	472	465	436	431	462	469	493
수출	166	185	181	178	148	146	149	163	180
수입	284	310	291	287	288	285	313	306	313
수지	△118	△125	△110	△109	△140	△140	△163	△143	△133

9) 2020년도 서비스 교역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2021.6월 중순 발표 예정

2020년(3분기 누적) 한국의 對美 투자는 송금기준 95.6억불로 전년동기대비(103.5억불) △7.6% 감소(신고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12.5% 감소)하였다.

FTA 발효 후 9년간(2012 ~ 2020.3Q 누적) 對美 투자는 892.6억불로, 발효 전(2003 ~ 2011년 누적, 289.9억불) 대비 약 3.1배(307.9%) 증가하였다.

2020년 미국의 對韓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53.0억불로 전년대비(68.5억불) △22.6% 감소하였다. (도착금액은 10.3억불로 전년대비 26.4% 감소)

코로나19發 글로벌 경기침체[10]로 2016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반전하였다.

FTA 발효 후 9년간(2012 ~ 2020년 누적) 투자유치액은 429억불로, 발효 전(2003 ~ 2011년 누적, 198.3억불) 대비 2.2배(116.3%) 증가하였다.

[한국의 對美 투자 추이]

(단위: 억불,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Q	2003 ~ 2011 누적	2012 ~ 2020. 3Q 누적	발효 전 대비
송금	59.4	58.7	59.6	70.5	136.7	152.3	112.0	147.8	95.6	289.9	892.6	307.9
신고	70.2	59.4	94.6	105.5	179.3	137.7	127.4	184.0	121.9	424.4	1,079.9	254.5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미국의 對韓 투자 추이]

(단위: 억불,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03 ~ 2011 누적	2012 ~ 2020 누적	발효 전 대비
신고	36.7	35.3	36.1	54.8	38.7	47.1	58.8	68.5	53.0	198.3	429.0	116.3
송금	12.3	16.0	18.1	23.6	15.1	12.5	38.3	14.0	10.3	101.9	160.2	57.2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INSC)

10) 한국의 對세계 투자유치 추이(억불, 신고기준): (2019) 233 (2020) 206(△11.5%)

최근 미국의 對韓투자는 운송용기계 등 전통산업에서 반도체·클라우드·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020년 미국의 주요 對韓 투자 사례]

◇ (반도체 소재) 일본 수출규제품목인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내생산

◇ (클라우드) 아태지역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증설

◇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수요증가에 따른 스마트 첨단물류시스템 시설 조성

붙임 1 한·미 양국간 교역 현황 및 FTA 활용률

■ 한·미 연도별 교역

[한·미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역	對미국	103,564 (1.7)	115,568 (11.6)	113,856 (△1.5)	109,678 (△3.7)	119,359 (8.8)	131,588 (10.2)	135,223 (2.8)	131,608 (△2.7)
	對세계	1,075,218 (0.7)	1,098,180 (2.1)	963,256 (△12.3)	901,619 (△6.4)	1,052,172 (16.7)	1,140,062 (8.4)	1,045,576 (△8.3)	980,131 (△6.3)
수출	對미국	62,052 (6.0)	70,285 (13.3)	69,832 (△0.6)	66,462 (△4.8)	68,610 (3.2)	72,720 (6.0)	73,344 (0.9)	74,116 (1.1)
	對세계	559,632 (2.1)	572,665 (2.3)	526,757 (△8.0)	495,426 (△5.9)	573,694 (15.8)	604,860 (5.4)	542,233 (△10.4)	512,498 (△5.5)
수입	對미국	41,512 (△4.2)	45,283 (9.1)	44,024 (△2.8)	43,216 (△1.8)	50,749 (17.4)	58,868 (16.0)	61,879 (5.1)	57,492 (△7.1)
	對세계	515,586 (△0.8)	525,515 (1.9)	436,499 (△16.9)	406,193 (△6.9)	478,478 (17.8)	535,202 (11.9)	503,343 (△6.0)	467,633 (△7.1)
수지	對미국	20,540	25,002	25,808	23,246	17,861	13,852	11,465	16,624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출처: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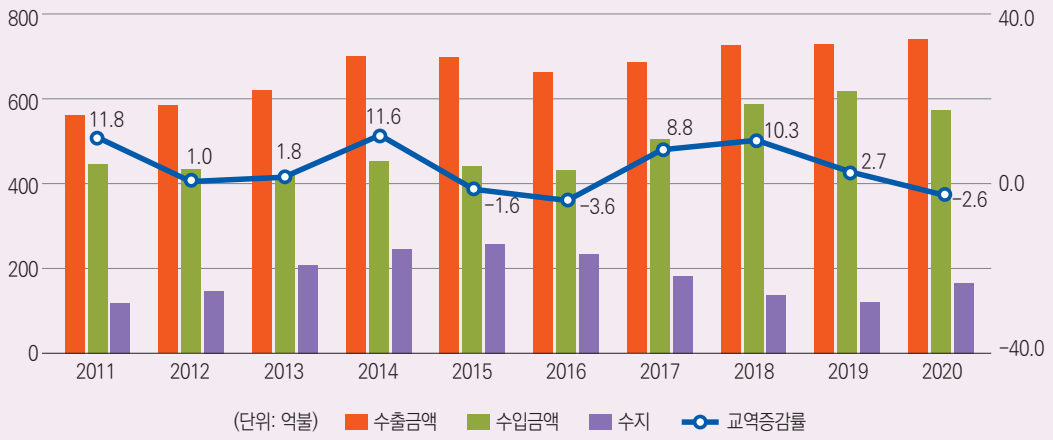

■ 한·미 FTA 활용률

[한·미 FTA 수출 · 수입활용률 현황]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 · 미 FTA	수출	79.1	75.6	86.1	86.0	85.2	84.4
	수입	67.5	70.7	70.6	70.2	68.1	76.7
전체 FTA	수출	71.9	63.8	70	73.5	74.9	74.8
	수입	70.2	69.6	74	75.3	76.6	81.5

*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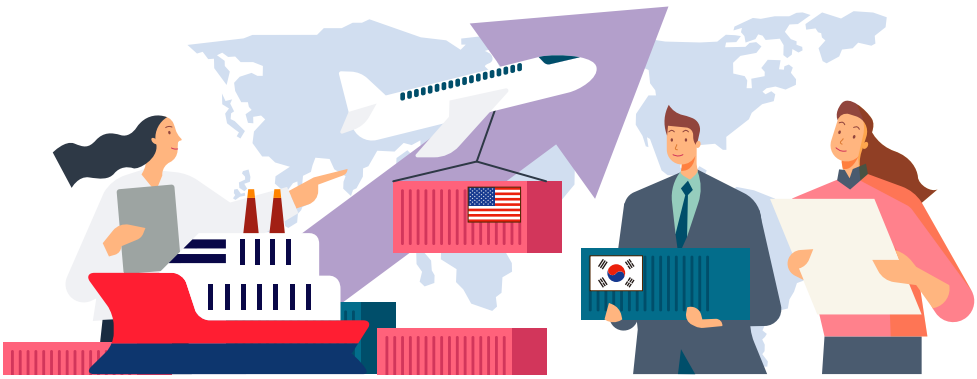

붙임 2 FTA 발효 후 對美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입 동향

■ 對美 상위 10대 수출품목 동향

(단위: 백만불,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동차	10,574 (20.8)	12,284 (16.2)	14,720 (19.8)	17,560 (19.3)	15,649 (△10.9)	14,651 (△6.4)	13,635 (△6.9)	15,743 (15.5)	15,758 (0.1)
반도체	2,611 (△4.2)	2,912 (11.5)	2,886 (△0.9)	3,312 (14.8)	3,352 (1.2)	3,377 (0.7)	6,436 (90.6)	5,951 (△7.5)	7,457 (25.3)
자동차부품	5,961 (14.5)	6,587 (10.5)	7,057 (7.1)	6,948 (△1.5)	6,751 (△2.8)	5,665 (△16.1)	5,967 (5.3)	6,211 (4.1)	5,494 (△11.5)
컴퓨터	1,523 (2.8)	1,441 (△5.4)	1,299 (△9.9)	1,373 (5.7)	1,638 (19.4)	2,381 (45.3)	2,366 (△0.6)	2,129 (△10.0)	4,347 (104.2)
무선통신기기	5,710 (△38.2)	7,555 (32.3)	8,300 (9.9)	7,328 (△11.7)	7,496 (2.3)	6,192 (△17.4)	5,811 (△6.2)	4,151 (△28.6)	3,054 (△26.4)
석유제품	2,896 (11.9)	3,507 (21.1)	3,064 (△12.6)	2,829 (△7.7)	2,401 (△15.1)	3,114 (29.7)	3,603 (15.7)	4,348 (20.7)	2,325 (△46.5)
플라스틱제품	774 (3.6)	868 (12.1)	975 (12.3)	979 (0.4)	1,082 (10.6)	1,234 (14.1)	1,410 (14.3)	1,622 (15.0)	1,638 (1.0)
원동기 및 펌프	1,056 (9.9)	1,045 (△1.0)	1,365 (30.6)	1,306 (△4.4)	1,287 (△1.4)	1,343 (4.4)	1,680 (25.0)	1,853 (10.3)	1,624 (△12.3)
냉장고	1,046 (4.1)	1,104 (5.5)	1,063 (△3.7)	1,097 (3.2)	1,103 (0.5)	1,071 (△2.8)	973 (△9.2)	1,220 (25.4)	1,607 (31.7)
고무제품	1,798 (8.6)	1,516 (△15.7)	1,523 (0.4)	1,637 (7.5)	1,668 (1.9)	1,555 (△6.7)	1,521 (△2.2)	1,506 (△1.0)	1,324 (△12.1)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 對美 상위 10대 수입품목 동향

(단위: 백만불,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원유	0 (△68.6)	0 (△94.6)	153 (13,989,474.6)	152 (△1.0)	126 (△16.7)	725 (474.2)	4,496 (520.2)	8,980 (99.7)	5,390 (△40.0)
반도체 제조용 장비	2,711 (△1.8)	1,957 (△27.8)	2,531 (29.3)	2,584 (2.1)	2,730 (5.7)	5,987 (119.3)	4,825 (△19.4)	3,202 (△33.6)	4,629 (44.6)
반도체	4,478 (10.7)	4,017 (△10.3)	3,991 (△0.7)	3,915 (△1.9)	3,668 (△6.3)	3,955 (7.8)	3,731 (△5.6)	3,711 (△0.6)	3,450 (△7.0)
LPG	98 (10,590.6)	85 (△13.3)	334 (293.9)	739 (121.5)	1,220 (65.2)	1,903 (55.9)	2,860 (50.3)	3,162 (10.6)	2,930 (△7.3)
항공기 및 부품	3,144 (10.9)	2,703 (△14.0)	1,962 (△27.4)	3,259 (66.1)	3,805 (16.7)	2,750 (△27.7)	3,115 (13.3)	3,528 (13.3)	2,609 (△26.0)
자동차	712 (89.3)	832 (16.8)	973 (16.9)	1,264 (30.0)	1,736 (37.3)	1,685 (△2.9)	1,834 (8.9)	1,916 (4.4)	2,605 (36.0)
육류	1,043 (△21.1)	997 (△4.4)	1,299 (30.3)	1,302 (0.3)	1,466 (12.5)	1,764 (20.4)	2,318 (31.4)	2,468 (6.5)	2,367 (△4.1)
천연 가스	52 (△17.8)	0 (△99.9)	0 (△54.0)	0 (97.2)	11 (17,894.6)	806 (7,372.8)	2,250 (179.2)	2,180 (△3.1)	2,095 (△3.9)
농약 및 의약품	840 (21.8)	975 (16.1)	1,134 (16.3)	1,116 (△1.6)	1,238 (11.0)	1,177 (△5.0)	1,339 (13.8)	1,522 (13.6)	1,635 (7.4)
식물성 물질	1,821 (△15.4)	815 (△55.3)	1,926 (136.3)	1,309 (△32.0)	1,380 (5.4)	1,581 (14.6)	2,194 (38.8)	1,454 (△33.7)	1,627 (12.0)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3.15.)

붙임 3 한·미 FTA 발효 후 농축산물 교역 동향

■ 발효 후 9년간 교역 동향

• 한·미 FTA 발효 후(2012~2020년 평균)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2007~2011년 평균) 대비 81.9% 증가, 수입액은 29.7% 증가

■ 2020년 對美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 (수출) 2020년 對美 농축산물 수출액은 12.1억 불로 전년대비 38.0% 증가

- 과일·채소 수출은 김치(55.8%), 기타채소(66.0%), 마늘(169.6%), 채소종자(6.7%)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18.9% 증가

- 가공식품 수출은 궐련(142.6%), 혼합조제식료품(19.5%), 라면(53.7%), 기타 음료(5.1%)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44.5% 증가

• (수입) 2020년 對美 농축산물 수입액은 88.6억 불로 전년대비 1.0% 감소

- 곡물 수입은 옥수수(10.2%)의 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두(△32.8%)와 쌀(△3.3%)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2.6% 감소

- 축산물 수입은 치즈(2.5%)의 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0.6%)와 돼지고기(△13.8%)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3.2% 감소

- 가공식품 수입은 기타코코아조제품(△16.3%)의 수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합조제식료품(10.0%), 대두유(21.9%)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6.0% 증가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

구 분	발효 전 평균* (2007 ~ 2011)		2012		2014		2016		2018		2020		발효 후 평균* (2012 ~ 2020)		증감률 (발효 후/ 발효 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① 농산물	363	4,196	441	4,340	529	5,065	632	4,349	674	5,849	1,037	5,401	636	4,804	75	14.5
- 곡물	8	2,812	9	2,375	9	2,760	10	1,878	9	2,672	15	1,965	10	2,114	31.3	△24.8
- 과일·채소	58	336	67	593	74	610	81	628	100	751	141	640	91	646	55.9	92.1

구 분	발효 전 평균* (2007 ~ 2011)		2012		2014		2016		2018		2020		발효 후 평균* (2012 ~ 2020)		증감률 (발효 후/ 발효 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 가공식품	297	1,048	365	1,371	446	1,695	542	1,842	565	2,426	880	2,797	535	2,044	79.9	95
② 축산물	22	956	27	1,411	36	1,878	35	1,824	42	2,736	66	2,853	41	2,118	89.5	121.6
③ 임산물	17	784	16	793	28	918	48	717	86	788	103	605	54	779	222.7	△0.7
전 체	402	5,936	485	6,543	593	7,861	716	6,891	802	9,373	1,206	8,860	731	7,701	81.9	29.7

*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의 5개년 산술평균값, 발효 후 평균은 2012~2020년의 9개년 산술평균값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식품 관련 2,925개 HSK 코드 기준)

붙임 4 한·미 FTA 발효 후 수산물 교역 동향

■ 발효 후 9년간 교역 동향

• 對美 수산물 수출은 FTA 발효 후 평균 252백만불로 발효 전 대비 88.9% 증가, 對美 수입은 FTA 발효 후 평균 239백만불로 74.0% 증가

■ 2020년 對美 수산물 수출입 동향

• (수출) 2020년 對美 수산물 수출은 314백만불로 전년 대비 5.7% 증가

- 주요 수출 품목인 김·기타어류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이빨고기·굴은 감소*

* 김: (2019) 113백만불 → (2020) 138(22.4%) / 이빨고기: (2019) 31백만불 → (2020) 25(△19.8%)

• (수입) 2020년 對美 수산물 수입은 229백만불로 전년 대비 15.3% 감소

- 어류 수입은 전년 대비 5.0% 감소, 주요 수입 품목인 가자미의 경우 국내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수입이 전년 대비 28.3% 감소

* 가자미 생산량: (2019) 2.0만 톤 → (2020.11.) 2.3만 톤(15.8%)

- 기타 수입은 냉동 명란 등의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50.4% 감소하였으며, 갑각류 수입도 바닷가재 등의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34.6% 감소

* 냉동 명란: (2019) 11백만불 → (2020) 9(△17.8%) / 활 바닷가재: (2019) 14백만불 → (2020) 9(△32.0%)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

구분	발효 전 평균* (2007 ~ 2011)		2012		2015		2019		2020		발효 후 평균* (2012 ~ 2020)		증감률 (발효 후/발효 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 어류	58	103	83	138	91	170	106	182	101	173	100	168	71.2	62.1
- 해조류	32	0	61	0	81	0	123	0	151	0	94	0	199.2	70.9
- 갑각류	7	4	11	3	12	43	19	22	10	15	12	27	70.8	536.0
- 기타	3	24	3	29	5	27	7	55	7	27	5	35	86.9	43.9
- 패류	19	2	8	3	21	2	29	5	29	9	22	4	16.4	70.9
- 연체동물	12	0	22	1	19	0	9	0	11	1	15	0	21.2	5.1
- 기타 수생동물	1	2	1	2	1	3	1	4	1	3	1	3	17.0	55.2
- 소금	2	1	2	1	2	1	4	3	4	3	3	2	61.2	178.8
전체	133	137	191	177	232	247	297	271	314	229	252	239	88.9	74.0

* 발효 전 평균은 2007~2011년의 5개년 평균값, 발효 후 평균은 2012~2020년의 9개년 평균값

**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美·中 1단계 무역합의 1년 경과와 그 성과는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정한 중국의 대미국 수입 이행률 저조, 사실상 이행 실패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20년 1월 15일 서로 깊어가는 무역 갈등을 타계하기 위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추가 수입하는 조건으로 1단계 무역 합의안에 공식 서명했다.

1년이 경과한 현재 중국의 무역 합의안 이행 현황과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시작된 무역전쟁은 2020년 1월 15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며 공식 휴전에 들어갔다.

1단계 무역 합의안의 핵심 의제는 1) 무역수지 조정, 2) 환율 조정, 3)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4)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로,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 잡고자 하는게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무역수지 조정과 관련해 중국은 2017년 수입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2020년에 767억 달러, 2021년에 1,233억 달러로 2021년 12월까지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를 미국으로부터 '추가' 수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품목과 품목별 추가 수입액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미국은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예정됐던 15%의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기로 하고 1,12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에 2017년 수입액 1643억 달러에 767억 달러가 추가된 총 2,410억 달러, 2021년에는 1,643억 달러에 1,233억 달러가 추가된 총 2,876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미국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2019년(1,232억 달러)과 비교해 볼 때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나야 하므로 중국의 이행 가능성에 대하여 합의 초반부터 각계의 의문이 제기되어 온 상황이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공산품의 경우 중국은 2017년을 기준으로 2020년에 329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약속했는바 이는 2020년 목표치가 연간 1,112억 달러(중국 수입)와 994억 달러(미국 수출)임을 의미한다.

2020년 12월까지 중국의 공산품 수입은 665억 달러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570억 달러에 불과했다. 합의 첫 해 중국의 공산품 구매는 목표치의 57%(미국 수출) 즉 60%(중국 수입)에 그쳤다.

농산품의 경우 중국은 2017년을 기준으로 2020년에 125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약속했는바,

이는 2020년 목표치가 연간 366억 달러(중국 수입)와 334억 달러(미국 수출)임을 의미한다.

2020년 12월까지 중국의 농산물의 수입은 235억 달러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36억 달러에 불과했다. 합의 첫 해 중국의 농산물 구매는 목표치의 70%(미국 수출) 또는 64%(중국 수입)에 그쳤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중국은 2017년을 기준으로 2020년 185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약속했는바, 이는 2020년 목표치가 연간 253억 달러(중국 수입)와 261억 달러(미국 수출)임을 의미한다.

2020년 12월까지 중국의 에너지 부문 수입은 98억 달러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국 에너지 부문 수출액은 97억 달러에 불과했다.

합의 첫 해 중국의 에너지 부문 구매는 목표치의 37%(미국 수출) 또는 39%(중국 수입)에 그쳤다.

CNBC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합의된 양의 미국 상품을 구매하는데 '실패'했다고 표현하면서 애초부터 이행이 어려운 공약이었다며 일부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전략 국제연구센터의 스콧 케네디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관련된 많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1단계 무역 합의에 관여했던 트럼프 행정부 미국 무역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 거래를 고수하고 관세를 레버리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는 1단계 무역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중국에 대한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 동맹국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미·중이 서로 단순하게 구매 목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해당 무역 합의의 실효성이 없고 중국이 미국 수출업체에 차별적 보복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민간이 아닌 국영기업만 구매량을 늘려 약속을 이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을 타계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양국의 무역 양상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

자료: USTR, US Census Bureau, PIIE, CNBC, 한국은행, KITA,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

베트남, RCEP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날개를 달다

RCEP, EU-베트남 FTA로 15개 협정 체결, 14개 협정 발효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속에서 베트남은 강력한 정부 통제를 기반으로 2020년 총 2,815억 달러에 해당하는 6.5%의 수출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주변 국가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한 상황에 빗대어 보면 아시아의 떠오르는 별이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20년에 베트남은 3대 교역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연합(EU)과 FTA를 발효한데 이어, 2020년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에 발빠르게 대비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과의 FTA를 체결 후 발효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5개가 참여한 RCEP이 지난해 11월 공식 서명했으며, RCEP이 발효되는 경우 베트남의 경제 영토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GDP, 인구를 보유한 RCEP

지난해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국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인구 기준 23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0%에 달하고 GDP는 26조 달러로 전 세계 GDP 대비 26.9%를 차지한다.

또한 무역 규모는 9조2000억 달러로 교역 대비 비중 24.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한·중·일이 동시에 참여한 최초의 무역협정인 동시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자 FTA가 체결돼 있지 않았던 일본과 최초의 FTA를 체결할 수 있게 됐다.

RCEP은 기존 협정과 비교할 때 관세의 경우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경쟁, 정부조달 등 최신 규범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의무규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RCEP 협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상품무역	농수산물공산물의 관세철폐 기본원칙 및 수준 등 규정 베트남 수입관세 철폐율 89.6% 아세안 국가 對베트남 관세 철폐율 85.9% 기타 국가 對베트남 관세 철폐율 92%

구분	주요 내용
서비스무역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포함 ASEAN의 문화콘텐츠 분야 및 유통분야 개방 금융서비스 양허 방식 및 주요 원칙 통신서비스의 접근, 이용 및 공급자 의무 등 규정 전문직 부여, 자격, 등록 등 인정 요건 규정
원산지 규정	개별 FTA가 아닌 역내 단일 원산지기준 마련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 간소화 누적 원산지 규정 통관 시 수출, 수입, 반송 절차 규정
전자상거래	디지털 제품의 적용범위, 관세 부과 정도 등 규정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보장 및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미 부과 명시
투자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이행 요건 부과 금지 등 보호 규정 송금 자유화 보장 등 외국인 투자 및 보호 관련 의무 규정
지식재산권	상표 선점을 위한 악의적 출원에 대한 거절 및 등록 취소 출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제품의 세부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보장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위한 지원 규정

베트남, RCEP으로 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

베트남은 도이머이 이후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더불어 FTA 네트워크 확대로 아세안 지역의 FTA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베 FTA를 포함해 총 15개 FTA를 체결했으며, EU 27개국을 포함한 약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 완료했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주목받는 베트남은 2019년 1월 CPTPP와 2020년 EV FTA를 발효했다.

이에 더불어 2021년 공식 서명한 RCEP까지 발효되는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RCEP 발효 후 자국 수입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의 92%까지 철폐할 예정이며, 반대로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아세안 국가로 수출 시 관세의 85.9%, 기타 국가 수출 시는 89.6% 철폐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은 RCEP 각 체결국가와 각각 FTA를 체결하고 있던 것이 RCEP으로 인해 단일 원산지 규정 및 원재료의 원산지 누적이 용이해졌다.

원재료를 RCEP 체결국가들로 공급받아 베트남에서 제조 가공하는 기계·전자, 의류·섬유 기업은 원재료의 원산지 누적을 통해서 'Made in 베트남' 제품 생산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메가 FTA 활용 전략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FTA를 글로벌 공급망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 또는 단독 국가의 지위로 FTA를 체결하는 등 총 15개 FTA를 체결하기 때문에 전략적 검토를 통한 FTA 활용이 필요하다.

1) 수출국가 체결 FTA 확인

가장 먼저 수출국가에 따라 체결 FTA를 확인하고 FTA 특혜관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우리 기업이 베트남 생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한국과 베트남은 ① 한-베 FTA(VK FTA) ② 한-아세안 FTA(AK FTA) ③ RCEP 중 어떤 FTA를 활용하는 것이 수입자가 가장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국가의 FTA 특혜세율은 HS Code별, 수입국가별로 상이하고 또한 연도별로 단계적 철폐될 수 있어 해당 국가의 관세청 또는 협정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관세청 FTA 포털에서 발효된 모든 FTA별 수입 특혜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자는 수입세율 기준으로 선택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 여성용 수영복(6211.

[2021년 한국 수입 관세 예시]

제품	HS Code	기본관세	VK FTA	AK FTA	RCEP
건조과일	0813.40-9000	45%	13.5%	36%	42%
로봇청소기	8508.19-2000	8%	0%	0%	7.5%
수영복	6211.12-1000	13%	0%	0%	0%
의자	9401.71-9000	8%	0%	0%	0%

주: RCEP 2021년 발효 가정

12-1000)을 수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① 한-베 FTA(VK FTA) ② 한-아세안 FTA (AK FTA) ③ RCEP 중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해 충족 가능한 FTA를 선택해야 한다.

2) 원자재 수입 활용 FTA 선택

앞서 수출국가에서 사용할 FTA가 정해졌다면, 원자재 수입 시에도 수출국 사용 FTA와 유기적으로 FTA를 선택해야 한다.

수입 시 단순히 특혜 세율이 낮은 FTA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원산지 누적'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은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용 수입 원자재의 면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진출 기업은 원산지 누적만을 이유로 FTA를 선택할 수도 있다.

현재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등의 사유로 글로벌 생산기지(GVC)로 베트남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부자재 및 중간재의 국내 자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주요 원재료를 한·중·일 3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RCEP 발효 시 한·중·일 수입 원자재의 원산지 누적을 적용하는 경우 베트남으로 GVC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는 호재로 볼 수 있다.

실제 진출기업 H사는 수출 원산지 누적을 이유로 수입 시 적용 FTA를 변경한 바 있다. 해당 기업은 태국에서 원재료 수입 시 아세안 FTA (ATIGA)를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도로 수출되는 완제품의 원산지 누적을 위해 태국에서 수입 시 아세안 FTA가 아닌, 아세안-인도 FTA(AI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것을 택했다. 이는 특혜 세율은 0%로 동일하더라도 원산지 누적을 통해 완제품을 'Made in 베트남'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

3) 원산지 판정

수출자는 원산지 판정 시 협정에서 인정한 충분가공 공정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원산지 누적을 인정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양한 국가로부터 만들어진 원재료가 사용돼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이 새로운 상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나 가공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즉 FTA 협정문에 명시된 불인정 공정 이상을 수행하는지 각 제품의 제조공정도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결정 시 다른 당사국에서 발생한 재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하거나 다른 당사국에서 수행된 가공공정이나 창출된 부가가치를 자국에서

[베트남 수입 시 특혜 관세율 예시]

제품	HS CODE	기본관세	ATIGA	AI FTA	RCEP
TV 부분품	8529.90.91	3%	0%	0%	0%

수행하거나 창출되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협정별 누적기준 조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뜻의 누적(Cumulation)은 원산지 결정과 관련해 다른 당사국에서 창출된 요소를 수출국에서 창출된 것과 합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수출 시 사용할 협정의 다른 당사국에서 구매한 원재료가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원산지 누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를 활용해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구비한 태국산 원재료는 원산지 누적이 가능하다.

많은 진출 기업이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 시 ASEAN FTA(Form D)를 사용하는데, 만약 누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동일 FTA 원산지증명서만 누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베트남- EU FTA(EV FTA)에서는 한-EU FTA를 적용한 한국산 원단에 대해서 특별하게 원산지 누적(교차 누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한국에서 수입한 원단에 대해서 원산지 누적을 위해서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4) 원산지증명서 발행

수출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원산지증명서 홈페이지(http://www.ecosys.gov.vn)에서 발행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자 또는 그 대행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전자 신청하고 관련 원산지 입증서류를 현장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 그 양식이 상이하고 발행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는 수취 불가하고 반드시 신청기관으로부터 원본 회수만 가능하다.

자료: 각 FTA 협정문,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ISSUE IN ISSUE | EU 주요국 경제전망

프랑스에서 2021년에 바뀌는 것들

플라스틱 사용 규제, 탄소세 인상 등 친환경 규제 강화

올해도 프랑스의 1월 1일은 새롭게 적용되는 많은 제도 및 규제와 함께 시작됐다. 유럽과 영국은 브렉시트 체제로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교류장벽을 세웠다. EU는 플라스틱과 내연기관 차에 대한 규제를 심화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로 변화하는 것

영국의 EU단일시장 탈퇴가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양측은 상품 무역에 있어서 무관세, 무쿼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기존에 없던 통관 및 검역절차가 생겼다.

영국과 무역교류를 하는 유럽기업들은 유럽 외 국가와의 교역에서와 같이 통관절차의무를 이행 해야 한다. 또한,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과 관련해서는 위생지침, 검역절차도 거쳐야 한다.

인적 교류도 보다 복잡하게 됐다. 2021년 9월 30일까지 프랑스인들은 국내 신분증만으로 영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여권지참이 의무화된다.

또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비자 발급이 의무화된다. EU 회원국 국민들에게 가능했던 무료 의료서비스와 휴대전화 무료 로밍 혜택도 사라졌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

프랑스 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 플라스틱 제품의 일상적 사용을 모두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2021년부터 프랑스 국내에서 플라스틱 용기 판매가 금지된다. 플라스틱 빨대, 1회용 용기, 1회용 컵 등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재고방출을 위해 모든 유통업자에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또한, 1.5kg 미만의 과일과 채소 판매 시 플라스틱 포장의 사용가능기한은 1년 연장됐다.

자동차 탄소세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입에 적용되는 탄소세가 인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국제 표준 자동차 연비측정 시스템인 WLTP 시스템을 도입해 이전보다 엄격한 측정테스트로 배출

가스를 측정했고 CO_2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해왔다.

2020년까지 138g/km였던 탄소세 부과 최소 배출량을 2021년부터는 133g/km로 변경, 기준치를 높였고 최고부과금액을 기존의 2만유로에서 3만 유로(218g/km)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SUV 등 중형차를 규제하기 위해 자동차의 무게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안은 오랜 논의 끝에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약 1800kg 이상의 차량에 kg당 10유로의 탄소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랑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기업들 대상으로 대대적인 연대기금 지원책을 펼쳐왔다.

봉쇄조치로 인한 영업중단 기업 및 호텔·식당·카페·관광 등 코로나19 직접피해기업과 식품·와인·주류 등 간접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달 최대 1만 유로까지 지원했다.

또한, 직접·간접 피해업종에 속하지 않더라도 종업원 50인 이하의 모든 기업 중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 한 달 1500유로 한도 내에서 매출 손실분을 지원했다.

프랑스 재경부 장관은 2021년 1월부터 연대기금의 수혜업종을 제한하되,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수혜업종에 대한 지원책은 작년과 같지만 행정조치로 영업이 중단됐거나 코로나19의 직접 피해가 큰 업종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우선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모든 기업에 지원하던 월 1500유로 지원금제도가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부터는 영업정지(식당, 카페 등) 혹은 피해기업(호텔 등) 중 전년 동월 매출 1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한해 고정비용의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 프랑스 환경부, LegiPermi, 일간지 Le monde, Le Figaro, Les echos,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이탈리아 2021년 경제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에서 소폭 회복 전망

2020년도 이탈리아 경제는 상반기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약 2개월간 비필수산업 조업금지와 이동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이탈리아 GDP는 1분기 -5.5%의 역성장에 이어 2분기에도 -13.0%를 보이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3분기에 조업 정상화에 힘입어 15.9%로 바로 급격한 회복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11월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4분기는 다시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신뢰지수에도 영향을 미쳐 2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기업신뢰지수는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4분기에 이어 2021년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2021년 경제전망

유로존과 이탈리아의 경제심리지수(Economic Sentiment Indicator)는 2020년 4~5월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후 좀처럼 예년의 모습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유로존보다 하락의 폭이 더 크고 회복의 속도가 더뎌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1년도 이탈리아 경제를 전망한 기관별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드나 그 폭은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청 자료 기준 2020년 GDP는 -8.9%로 급감한 이후 2021년도 4.0%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하락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이탈리아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U 발표자료에 따르면 유로 존의 GDP는 2020년 -7.8%에서 2021년 4.2%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럽 주요국 중 독일은 -5.6%에서 3.5%, 프랑스는 -9.4%에서 5.8%를 전망해 이탈리아 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부 경제 전망

2020년 이탈리아 가계소비는 -10.0%로 큰 감소폭을 보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가중 및 일자리 불안, 소비감소 등 실물경기의 충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4.5%의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 감소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소비심리가 정상화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소폭이나 다시 상승세로 전환돼 디플레이션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로존의 경제 회복 및 이탈리아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2020년 0.0%에 머물렀던 인플레이션이 2021년에는 0.6%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장기간의 조업 금지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며, 설비투자가 중지 혹은 연기돼 2020년도 -10.1%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 지속된 이탈리아 '산업 4.0' 정책 시행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의 연장에 따라 2021년에는 6.2% 증가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1년도 일자리와 실업률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2020년도에는 정부의 '해고금지 및 일시적 휴직 지원' 정책으로 실업률을 9.4%로 유지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자리가 -10.0%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해고가 현실화될 경우 2021년도 실업률은 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외 2020년도 이탈리아의 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수출은 -16.4%, 수입은 -14.0%로 인근 유럽국가와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코로나19 경제 여파로 인해 수출시장 축소가 불가피했고 내수도 -8.0%를 기록하며 수입이 감소했다.

이러한 수출입의 급감에도 경상수지는 GDP 대비 3%의 흑자를 유지했다. 2021년도에는 수출입 모두 10%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경상수지의 흑자 폭은 다소 증가해 GDP 대비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 이탈리아 통계청(ISTAT),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 일간지 Il Sole 24 Ore,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ISSUE IN ISSUE | 2021년 FTA 활용지원 사업

한눈에 알아보는 『2021년 FTA 활용지원 사업』

8개 정부부처·16개 유관기관, 총 42개 FTA 지원사업 (6,527억원) 통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1일, 8개 정부부처 및 16개 유관기관의 「2021년도 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

■ (정부부처 : 8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 (유관기관 : 16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 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통합 공고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각 기관의 FTA활용지원 사업 예산은 약 6,527억원**로서, 이는 작년 대비 약 15% 증가한 규모이다.

* (2019년) 39개, 5,124억원 → (2020년) 40개, 5,652억원 → (2021년) 42개, 6,527억원

주요 지원 내용은 ① FTA 활용촉진, ② FTA 해외시장진출, ③ 산업경쟁력 강화, ④ 한·중 FTA 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 42개 사업으로서 국내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① FTA 활용촉진 : 11개, 128억원
② FTA 해외시장진출 : 18개, 4,234억원
③ 산업경쟁력 강화 : 9개, 1,765억원
④ 한중 FTA 특화사업 : 4개, 399억원

① (FTA 활용촉진)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② (FTA 해외시장 진출) 국내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③ (산업경쟁력 강화)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기업 등에 무역조정·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 자금 조달 또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한·중 FTA 특화사업)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상담 등 별도의 애로해소 지원을 추진한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FTA 지원 사업을 통합·안내함으로써 FTA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보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 지원사업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 공고와 더불어 사업별 지원내용과 예산규모, 신청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향후 책자로도 제작하여 FTA 활용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2.1)

한-영 FTA 유의사항

한-영 FTA가 2021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한-영 FTA 인증수출자의 경우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TOURS
부릉
그럼 혹시 한-영 FTA 발효 시 프랑스, 독일 등 EU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영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다른 EU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는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오호...
참고로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선언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관련 법령에 2019년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흠~ 제가 영국 버스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대체하고 2035년부터는 전기 및 수소 신차만 구매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헉!
TOURS
그럼 그때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부릉

FTA TRADE REPORT

FTA EXPERTS

한-영 FTA 관련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

정영욱 | 원스탑관세법인 관세사

RCEP 협정의 주요 내용과 체결 의의

오수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한-영 FTA 관련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

정영욱
원스탑관세법인 관세사

1991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유럽공동체(EC) 12개국의 수뇌들이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 모여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유럽중앙은행의 설립, 통화의 단일화, 공동외교와 공동방위 체제의 구축 등에 합의하였고, 마침내 1993년 11월 1일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연합(EU: The European Union)이 설립되었으며, 그 후 꾸준히 유럽 내 신규 회원국들을 받아들이면서 2019년에는 유럽연합의 규모도 2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EU의 재정이 악화되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졌으며, 2015년 시리아 및 북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유입됨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종교-고용 등 다방면에서 큰 충격과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은 2016년 6월 23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하였고, 2020년 1월 31일에 유럽연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탈퇴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에 브렉시트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이 종료됨으로써 유럽연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브렉시트(BREXIT)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영국과 유럽연합 간 그리고 각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지각변동은 아주 흥미로운 세계 토픽 중의 하나이지만, 이 글에서는 그러한 논의 보다는 브렉시트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기업들 간의 무역거래시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11년 7월 1일 이래로 한-EU FTA를 이용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아온 양국의 수출입기업들이 2021년 1월 1일부터 한-영 FTA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협정의 당사자 영역 관련

한-영 FTA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국의 영역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국은 경우에 따라 잉글랜드(England),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GB)), 유나이티드 킹덤(United Kingdom(UK))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기 때문이다.

한-영 FTA에 대한 영문 공식 명칭은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f The Other Part」 이다.

따라서, 한-영 FTA에서 말하는 영국은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 스코틀랜드(Scotland)를 하나로 묶어 통칭하는 Great Britain(GB)에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를 합친 영역인 United Kingdom(UK)를 의미한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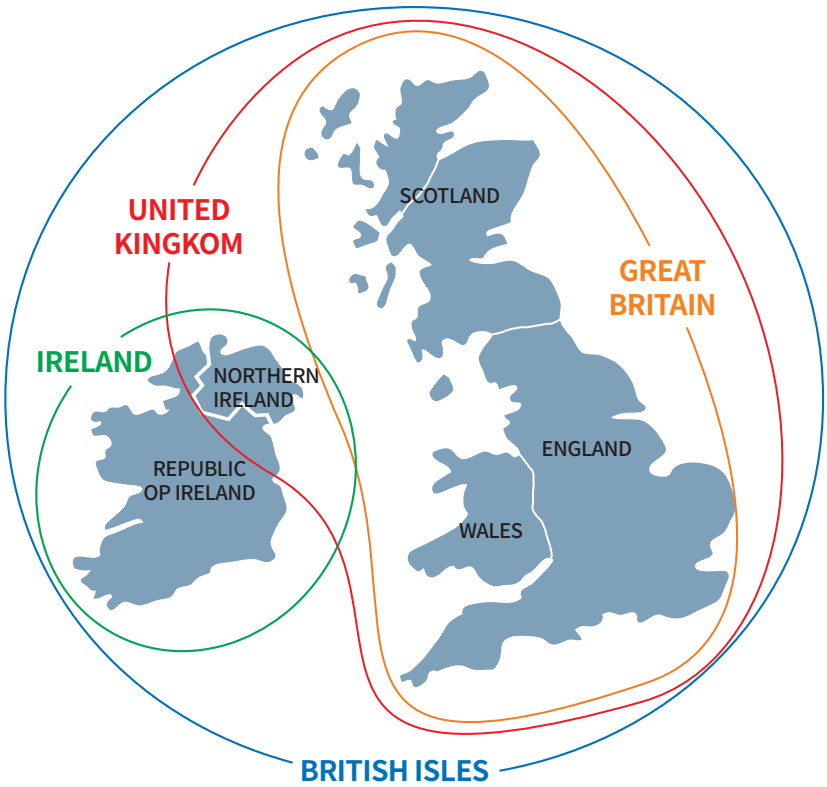

[그림 1]

■ 협정의 발효시점 관련

한-영 FTA의 발효시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다. 첫째, EU, 영국, 우리나라 간 시차로 인하여 FTA 협정의 발효시점에 다소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에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영국은 유럽연합의 법적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브렉시트 전환기간은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의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벨기에 브뤼셀 기준 2020년 12월 31일 오후 12시(자정)」는 「영국 그리니치 기준으로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가 되고 「우리나라 서울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한-영 FTA의 발효시점은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이다.

둘째, 한-영 FTA의 발효일 이전에 생산되어 본 협정의 발효일에 양 당사국 간을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본 협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한-영 FTA 원산지의정서 제33조에 의하면, 이러한 상품들이 본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합치되고, 협정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본 규정 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면, 본 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한-영 FTA의 발효시점인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 이전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영국산 물품들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한-영 FTA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에 우리 관세청이 발표한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 이후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건부터 한-영 FTA가 적용 가능하며, 동 시간 이전에 수입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한-EU FTA가 적용 가능하다.

■ 원산지기준 관련

영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누렸던 한-EU FTA의 혜택을 브렉시트 이후에도 그대로 향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영 FTA의 원산지기준은 한-EU FTA의 원산지기준과 쌍둥이처럼 똑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만, 누적기준, 직접운송기준 및 인증수출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상 또는 실무상 차이점이 있다.

1. 누적기준

원칙적으로 양자간 특혜무역협정에서는 협정의 양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진 가공에 대해서만 최종 제품의 원산지 판정시 역내산 재료 또는 역내가공으로서 그 누적(accumulation)을 인정해 준다.

그런데, 한-영 FTA 원산지의정서 제3조에 의하면, 본 협정의 발효부터 3년 동안에는 협정의 다른 쪽 당사국(즉, 한국 또는 영국)뿐 아니라 EU(세우타 및 멜리야 제외)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EU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도 역내산 재료 또는 역내가공으로 누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관계의 계속성이나 물품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EU 내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여전히 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 가공을 해야 하는 양국의 기업들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EU 누적 허용 제도를 이용하여 브렉시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FTA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EU 누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은 EU산 재료의 공급자로부터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직접운송기준

한-영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의하면,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본 협정의 발효 후 3년간 유효)'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환적 또는 일시보관을 이유로 다른 영역(제3국) 을 경유하는 단일 탁송화물에 대해서는 제3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하여 반출되지 아니하고 하역-재선적-제품상태보존을 위한 공정 외의 다른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운송을 인정하고 있다.

당해 규정에서 특이한 점은 EU와 다른 영역(제3국)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EU 경유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제3국 경유와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우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2020년 12월 30일에 우리 관세청에서 발표한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 안내」에 따르면, EU를 경유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제3국을 경유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다음과 같은 직접운송 인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 협정의 직접운송 규정에 대한 양 당사국의 실무자 간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수입자들은 우리 관세청의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① 물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해당 경유국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② 경유하는 EU 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될 수 있음

③ 수입국 세관의 요구 시 상기 ①, ② 요건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출처 :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 안내 (관세청, 2020년 12월 30일)

한편, 영국산 제품이라도 운송서류상 선적국 (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에는 영국과 해당 EU 회원국간의 운송경로 등을 입증해야 한다.

3. 원산지인증수출자

한-영 FTA에서의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규정은 한-EU FTA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영 FTA에서도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원산지상품의 전체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및 발행할 수 있는데, 만약 거래통화가 유로화가 아니라 파운드화라면 어떤 기준으로 파운드화를 유로화로 환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관세청에서는 FTA포털에 당해 환산기준을 별도 게시한다.

둘째, 한-EU FTA 관련 인증수출자격을 보유한 양국의 기업들이 한-영 FTA 관련해서도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한국기업들은 반드시 인증신청을 해서 새로운 인증서를 받아야 하지만, 영국기업들은 새로운 인증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증서에 한-미 FTA, 한-EU FTA, 한-영 FTA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는 인증서에 터키, 이스라엘, 베트남, 한국식으로 당해 인증서가 적용될 수 있는 국가들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EU FTA가 적용될 당시 영국세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에 한국이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신규 인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셋째, 영국산 물품의 경우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되는 원산지 국가의 표기로서 더 이상 EU 또는 European Union이 인정되지 않으며 England, Scotland, Wales,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UK, GB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 CE 인증 관련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럽시장에서 유통될 때는 CE 인증마크(European Conformity의 불어표기인 Conformité Europée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유럽연합의 법령이 더 이상 영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제도인 CE 인증제도를 영국 내에서 계속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편, CE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CE 인증을 대체할 영국의 인증인 UKCA 인증을 단기간 내에 획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인증전환 유예기간(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의료기기(2023년 6월까지)와 건축자재 등은 별도 가이던스에서 유예기간 규정하고 있음)을 부여하는 등 다음과 같이 지역별 또는 기간별로 서로 다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UK) 내 지역	제품 유형	허용되는 인증 마킹
Northern Ireland (NI)에 제품을 출시할 경우	제작된 제품이 EU적합성평가기구(EU NB)로부터 검증을 받은 경우	CE 마킹
	제작된 제품이 UK 기반을 둔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경우	CE+UKNI (UKNI 단독 부착 불가)
Great Britain (GB)에 제품을 출시할 경우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UKCA 또는 CE 마킹
	2022년 1월 1일부터 ~	UKCA 마킹 (동봉된 문서 또는 패키징에 부착 가능, 제품에 마크 부착 의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출처 : 브렉시트 대응 정부(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향후 계획 (한국바이오협회, 2021년 1월 4일)

그 동안 CE 인증 대상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해 온 우리나라 기업들은 영국의 새로운 인증제도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영 FTA에서의 영국의 영역, 협정의 발효시점 및 원산지기준(누적, 직접운송, 인증수출자)에서의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여 한-영 FTA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CEP 협정의 주요 내용과 체결 의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로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RCEP은 역내 자유무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무역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남방지역에서 신규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I. 서론

지난 2020년 11월 15일 RCEP 정상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하고 정식 서명을 하였다. RCEP은 우리 나라가 참여한 최초의 메가 FTA로, RCEP 참여국의 경제 규모는 전세계 생산, 무역규모 및 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

다른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그 규모를 비교해보면, 11개국이 참여한 CPTPP의 경제 규모는 전세계 생산의 약 13%, 무역규모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RCEP은 가히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고 할 수 있다.

II. 협상 배경

동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해 왔으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 논의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이 각각 ASEAN+3(한·중·일), ASEAN +6(한·중·일·호·뉴·인도) 형태의 무역협정을 제안하여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논의 중에 2011년 ASEAN이 ASEAN+6 체제인 RCEP을 제안하여 RCEP 협상은 ASEAN 주도로 진행 되었다.

중국이 제안하였던 ASEAN+3 형태의 EAFTA 협상이 좌절됨에 따라 중국은 RCEP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미-중 대립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며 타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인도는 RCEP 출범 시부터 협상에 참여하였지만 상품무역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로 2019년 정상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하여, 정식서명에는 15개국만이 참여하였다.

III. RCEP 협정문의 내용

RCEP 협상은 많은 국가가 참여한 만큼 협상 개시에서 서명에 이르기까지 8년 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RCEP 협정문이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협정인 점도 있지만, 상품 양허에 있어 공통양허 또는 개별양허, 서비스 양허에서 열거주의, 포괄주의 등 모달리티에 대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까닭도 있다.

결과적으로 상품 양허 방식에 있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공통양허 형태로, 그 외 국가들은 국가별로 차이를 두는 개별양허 형태를 택하고 있다. 서비스 개방 방식으로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열거주의(positive list)를, 그 외 국가들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열거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발효 3년 이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2년 이내)에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개시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였다.

RCEP 협정문은 총 2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품, 서비스 교역 뿐 아니라 투자, SPS, TBT를 비롯하여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최신무역규범과 중소기업, 협력 챕터 등을 담고 있다.

역내국간 시장 개방은 20년에 걸쳐 약 92% 수준의 관세를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ASEAN과는 91.9~94.5% 시장을 개방하여 기존에 체결한 한-아세안 FTA를 소폭 개선하였고, 비교적 최근 협정을 마무리한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기체결 양허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번 RCEP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신규로 시장을 개방하였는데, 관세철폐율은 한일 간 상호 83%로 높은 수준은 아니나 자동차, 기계 관련 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등 산업계의 우려를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농산품에 대해서는 한국 46%, 일본 49%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공산품에 대해서는 한국 91.7%, 일본 94.1%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였다. 중국 또한 RCEP을 통해 일본과 최초로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관세철폐율은 품목수 기준 86% 수준이다.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도 기체결 FTA 수준을 유지하되 ASEAN은 문화콘텐츠, 유통, 물류 서비스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였고, 일본은 온라인게임, 쌀·담배·소금에 대한 도소매 및 중개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투자 챕터에서는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규정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발효 이후 협상 과제로 남겨 두었으며, RCEP 당사국들과 기존에 체결한 내용을 한-미 FTA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정부조달 챕터에서는 아세안 개별 당사국이 정부조달에 대한 규범을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기로 하여 투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RCEP은 신통상규범인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 챕터 또한 포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챕터는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무역 원활화 조항과 컴퓨터 설비의 위치, 데이터 국경 간 이전 관련 조항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증진 조항을 포함하여 최신 통상규범을 다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 챕터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의 통일은 메가 FTA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으로 손꼽히는 바, RCEP 원산지 규정에서는 그동안 체결한 양자 FTA의 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역내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 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한다.

특히 RCEP 에서는 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s) 40% 기준을 채택하였으며,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역내가치비율(RVC) 기준, 세번변경(CTC) 기준, 특정 제조나 가공공정, 또는 이들 조합 중에서 선택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의 수출자가 어떤 규정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선택기준) 이는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모든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 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RCEP에서의 이러한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의 간소화는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가치사슬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된다.

Ⅳ. 전망과 시사점

RCEP은 통상적인 비준 절차를 고려하면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 경에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CEP의 발효를 위해서는 아세안 서명국 중 6개국 이상의 국가와 비(非)아세안 서명국 중 3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완료 60일 후 비준을 마친 국가 간에 협정이 발효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로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RCEP은 역내 자유무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무역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남방지역에서 신규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RCEP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첫 무역협정이므로, 이로 인한 교역 증대와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통한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역가치사슬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RCEP 참여로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을 공고히 하고 이를 향후 다른 메가 FTA 참여의 디딤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FTA ANALYSIS

한-영 FTA 쉽게 활용하기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원

파나마의 통상 및 통관환경

이주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한-영 FTA 쉽게 활용하기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2021년 영국 중앙은행에서는 2021년 연평균 GDP를 7.25%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기준 영국은 우리나라와의 주요 수출국 중 21위를 기록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영국과 교역중 이거나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를 발판삼아 FTA를 통해 재도약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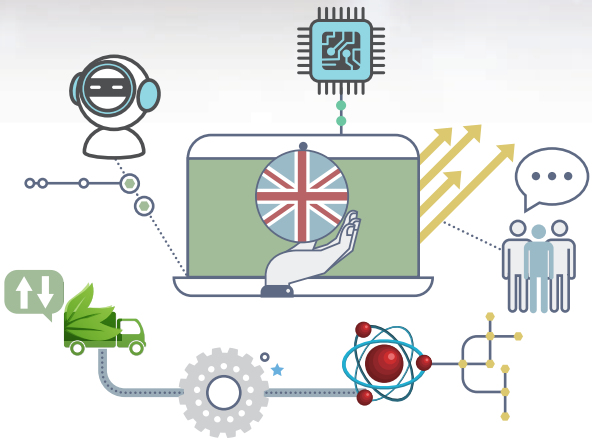

한-영 FTA가 2021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한-영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한-영 양국 간의 통상 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에서 혁신의 파트너로 세계 첨단유망 산업을 주도하고 산업·혁신기술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영국은 추후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유망 5대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양국의 공동펀딩 R&D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양국 혁신기업 간 기술 협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부터 한국 및 영국이 각각 매년 30억원, 200만 파운드를 펀딩하여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R&D를 지원하는 사업[담당기관: (韓)산업기술진흥원, (英)혁신청]

1. 한-영 FTA 체결일지

한-영 FTA는 2016년 12월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를 계기로 양국 통상장관 간 합의로 한-영 무역작업반*이 발족되었다.

*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

2017년 2월에 제1차 한-영 무역작업반이 개최된 이후로 2017년 12월 제 2차 한-영 무역작업반이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1차와 2차 한-영 무역작업반은 브렉시트 관련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양국교역에 공백이 없도록 우리나라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후 2018년 11월에는 한-영 FTA 공청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2019년 2월에는 한-영 무역작업반 회기간 협의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양국 간 수차례의 거듭된 양국의 협의 끝에 마침내 2019년 10월 한-영 FTA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1월 1일 한-영 FTA가 발효되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21년	2021.01.01.	한-영 FTA 발효	2017년	2017. 12.12 ~ 13	제2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 (런던)
2019년	2019.08.22.	한-영 FTA 정식 서명(런던)			
	2019.06.10	한-영 FTA 원칙적 타결 선언(서울)			
	2019.05.29~30	제7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런던)			
	2019.05.15	제6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서울)		2017. 02.24	제1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 (서울)
	2019.04.01~02	제5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런던)			
	2019.02.19~20	한-영 무역작업반 회기간 협의 개최(서울)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8년	2018.11.21	한-영 FTA 공청회 개최(서울)	2016년	2016.12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 계기 양국 통상장관 간 합의로 한-영 무역작업반* 발족 *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
	2018.09.20	제3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서울)			

자료: FTA KOREA(http://www.fta.go.kr)

무엇보다 한-영 FTA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17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영국이 브렉시트를 탈퇴했음에도 조속하게 한-영 FTA를 체결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안정성 있게 이어나가게 되었다.

2. 한-영 FTA 주요 내용 및 특징

1) 한-영 FTA 협정문 구성

한-영 FTA 협정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협정문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www.fta.go.kr)에서 국문과 영문버전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서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	무역구제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제10장	지식재산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4장	분쟁해결

구분	주요내용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자료: 한-영 FTA 협정문

이중 양국의 관세철폐에 대한 사항은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관세철폐에 관한 사항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의정서 중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를 참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영 FTA는 양국 간 상품 및 무역 자유화 달성, 투자 및 경쟁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지속가능 개발, 교역 장벽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문에서 참조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법령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맞춰 개정 또는 대체된 대한민국과 영국의 법령에 대한 언급으로 보고 있다. (한-영 FTA 협정문 제1.3조)

참고로 이번에 발효한 한-영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필요한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완제품의 HS 6단위와 구성품에 대한 HS 6단위가 담겨있는 BOM을 정리하여 기존에 활용한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세율정보를 한 장의 시트에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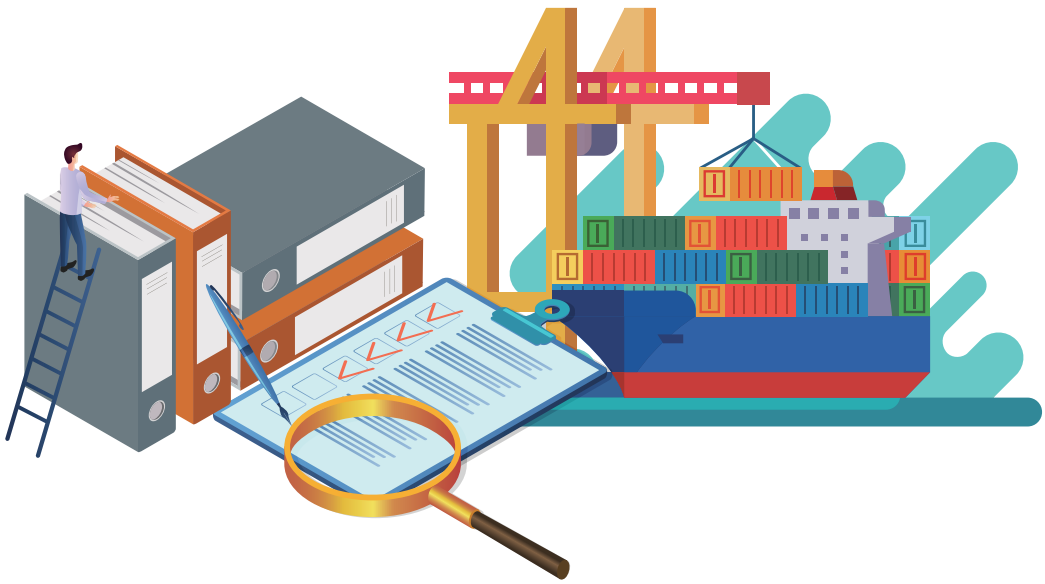

2) 한-영 FTA 주요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한-영 FTA 주요품목 중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은 자동차는 완성차에 한해서 역외산 부품비율 45% 이하이며, 자동차 부품은 역외산 부품비율 50%이하 또는 세 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모터사이클, 트레일러 등 기타자동차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비율을 50%에 합의하였다. 영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인접국(일본, 중국 등)에 비해 영국 시장에서 우리 업계가 유리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다.

[한-영 FTA 즉시철폐 대상 주요 공산품]

한국 양허	영국 양허
승용차, 하이브리드카,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선박용부품, 직물제의류, 칼라TV, 냉장고, 선박, 타이어, 섬유기계, 컴퓨터부품, 항공기부품, 계측기, 기타정밀화학제품 등	승용차, 화물자동차, 하이브리드카, 타이어, 자동차부품, 스웨터, 기타신발, 순모직물, 편직물, 폴리에스테르직물, 칼라TV, 라디오, 영상기록재생용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자료: 한-영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9.8)

3. 한-영 FTA 수출 유망품목

순번	HS코드 (6단위)	품 명		2019년		
				영국 수입 순위	특혜대상 금액	FTA 활용률
1	392310		상자 · 케이스 ·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52위	6	2%
2	851632		그 밖의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40위	8	5%
3	841490		기체펌프·팬·후드의 부분품	14위	34	8.5%
4	851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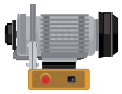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34위	11	12%
5	330790		기타 화장용품	41위	8	26%
6	7411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관	29위	17	34%
7	8708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 부속품	13위	46	38%

순번	HS코드 (6단위)	품 명		2019년		
				영국 수입 순위	특혜대상 금액	FTA 활용률
8	270750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흑갈색계 액상의 방향족 탄화수소(Aromatic hydrocarbon)의 혼합물(250℃에서 ASTM D 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 이상)	35위	11	56%
9	850760		리튬이온 배터리	10위	57	54%
10	842121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	62위	5	59.9%

자료: 영국 수출 리튬이온 배터리, 자동차 휠 등 주목하라.관세청 보도자료(2020.12.9.)
그림: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영국)

한-영 FTA의 수출 유망품목은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유사한 물품, 그 밖의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기체펌프·팬·후드의 부분품,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기타 화장용품 등이다.

해당물품은 우리나라의 영국 수출물품(2019년) 기준으로 특혜대상금액이 5백만불 이상인 품목이며, FTA 활용률이 60% 이하인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한-영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상기 품목을 참고하여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품목의 세부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상기에 언급한 수출유망품목 중 하나인 화장품을 영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영국 RP(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영국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시장에 제품을 신규로 출시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국 정부의 업데이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

• The category and name of the cosmetic product	화장품 카테고리 및 화장품 이름
• The name of the responsible person	책임자 이름
• Where the Product Information File (PIF) is kept	제품정보 보관 주소
• Details of a named contact for urgent enquiries	긴급상황 시 담당자 연락처
• Details of any nanomaterials the cosmetic product contains	화장품에 포함된 나노소재
• Details of any 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CMR) substances the cosmetic product contains	화장품에 함유된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독성 물질(CMR)의 세부 사항
• The chemical details of substances	물질의 화학적 세부사항
• A summary of the ingredients	원재료의 요약
• An image of the product's label	제품의 라벨 이미지
• A photograph of the cosmetic product packaging	화장품 포장 사진

자료: https://www.gov.uk/guidance/submit-a-cosmetic-product-notification#history

4. 결론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2021년 영국 중앙은행에서는 2021년 연평균 GDP를 7.25%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영국은 우리나라와의 주요 수출국 중 2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규모로 보면 영국과 우리나라의 교역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영국과 교역중이거나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를 발판삼아 FTA를 통해 재도약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제로를 목표로 삼아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영국의 탄소 배출 규제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부품 개발, 전기자동차 개발 등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 등에 좀 더 중심축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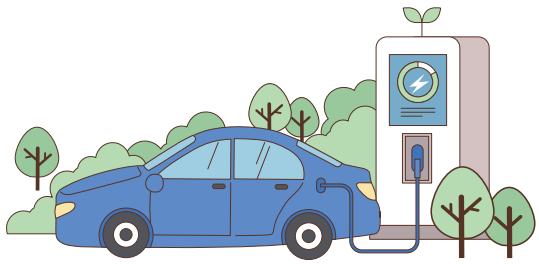

[참고자료] 사례로 알아보는 영국의 무역사기 [1)]

■ 증가하는 무역사기

ㅇ 무역사기 현황

-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상품이나 사업 아이디어·정체성 절도,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화물 범죄 등과 같은 조직범죄(Organised crime)로 인한 피해라고 설명함. 이외에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고용 사기 등이 있음.
- NCA(National Crime Agenc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영국과 웨일즈 기준 340만 건 이상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NCA는 해당 수치가 실제로 보고된 사기사건 중 20%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어 실제 발생한 사기사건 수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분석
- 사기 피해자는 공공부문은 물론 취약계층부터 주요 기업,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2017년 연례 사기 지표(2017 Annual Fraud Indicator)'에 따르면 영국이 매년 사기로 인해 약 1900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고 있음.
- 이중 민간 부문은 약 1400억 파운드, 공공부문은 400억 파운드 이상, 개인은 약 70억 파운드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분석

ㅇ KOTRA 런던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의심 사례

- 파악되는 대부분의 사례가 대출사기 또는 무역사기로 이뤄지며, 최근 그 숫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례1(대출사기)

> 영국 기업에서 한국 기업에 300만 달러를 대출해주기로 함. 영국 기업이 대출금액을 지불하기 전, International Monetary Clearance, Non-Residential Tax Clearance, Tax Clearance 명목으로 한국 기업에 총 7000파운드(한화 약 1000만 원) 가량을 요구함. 7000파운드 입금 이후 영국기업에서 다시 SWIFT Transmission Fee로 1만 5000달러를 요구함. 또한 해당 금액이 모두 지불되기 전까지 300만 달러는 영국의 금융감독원(FCA)으로부터 보류될 것이라고 설명함. 이 후 한국 기업에서 무역사기가 의심돼 KOTRA 런던 무역관으로 접촉함.
>
> KOTRA 런던 무역관에서 조사 결과 해당 영국 기업은 설립이 1년 미만인 기업으로 재정상태 및 신용도 파악이 어려웠음. 영국 금융감독원에 확인 결과 해당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돼있지 않은 기업이며, 금융감독원은 독립규제기관으로서 은행이나 소비자에 금융과 관련한 서비스(지급금액을 보류, 홀딩 등)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달함. 해당 영국 기업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기로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함. 뿐만 아니라 무역관 투자담당자에 의하면 투자 및 대출 프로세스 관련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일전에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당 건은 무역사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사료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음.

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27/globalBbsDataView.do?setIdx=256&dataIdx=185373&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2&row=10

– 사례2(무역사기)

한국의 A사는 영국 의류 도매 업체와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인보이스를 전달받아 영국 로이드(Lloyds) 은행으로 24만 파운드(한화 약 3억6000만 원) 가량을 입금함. 약속한 날짜까지 상품 패킹리스트를 전달하기로 했으나 이틀 뒤부터 연락이 두절됨.

KOTRA 런던 무역관에서 조사결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호명의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비슷한 상호명의 기업 역시 2015년 폐업신고가 돼있는 상태로 파악됨.

– 사례3(무역사기)

한국의 B사는 전시회에서 직접 만나 거래를 진행하게 된 영국 바이어와 결제조건을 45days from B/L(Bill of Lading) date로 체결하고 선적 후 OBL(Original bill of lading)을 넘겼음. 약속한 결제일이 지나도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 바이어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결제하겠다는 대답 이후 연락이 두절됨.(이미 화물 반출은 된 상태)

이미 사기가 발생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해결이 쉽지 않음.

■ 무역사기 신고

ㅇ 영국 금융감독원(FCA,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사기사건 발생 시 아래 Action Fraud 홈페이지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홈페이지: www.actionfraud.police.uk/

– 전화번호: +44 300 123 2040(한국어 통역 서비스 가능)

– 문자 전화: +44 300 123 2050

– 운영시간: 월–금, 08:00~21:00

–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한국어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 www.actionfraud.police.uk/korean

ㅇ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방법도 존재함. 관련 문의 KOTRA 런던 무역관 mina.park@kotra.co.uk로 연락바람.

■ 거래 전 유의사항

ㅇ Companies House를 통한 신용조회

- 영국 정부의 공식 기업등록소 사이트 Companies House에서 모든 등록된 기업의 설립연도, 주소지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재무제표도 확인가능
- 사이트 링크 및 사용방법

  - 링크: https://www.gov.uk/get-information-about-a-company
  - 사용방법: Start now 클릭 → 기업이름 또는 기업 번호를 이용해 검색 → 회사명 클릭 → Filing history 클릭
  - 만약 기업번호인 Company number를 알고 있다면 아래 영국 정부의 공식 기업등록소 사이트 Companies House에 들어가 기업의 설립연도, 주소지 등 기본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종종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명(Trading name)과 상호 등록명(Registered company name)이 다른 경우도 존재하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기업번호를 이용해 검색할 것을 추천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service/importer03.d
-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용등급평가 정보, 수출보험이용 정보, 신용조사보고서 원본 및 요약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음.

ㅇ 금융 서비스업(Financial services)과 관련될 경우 기업의 FCA 등록 여부 조회

- FCA는 금융 서비스업 관련 기업으로부터 투자,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기업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
- FCA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Warning List'를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www.fca.org.uk/scamsmart/warning-list

ㅇ 영국 현지 무역사기 분쟁해결 전문변호사 첨언

- 두 사업체 간의 거래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좋을 경우를 주의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사(Due diligence)를 실행할 것을 추천
- 대금결제 방법을 포함해 자금이 어떻게 인출되는지, 결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그러할 자격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송금 전 은행 계좌 명세서와 거래 상대의 계좌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
- 손상 또는 도난당한 품목·상품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보험을 고려할 것을 추천

■ 시사점

ㅇ 거래 예정 기업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서(기업등록문서, 계약서, 송장, 홈페이지 주소, VAT번호 등)를 꼼꼼하게 확인

- 계약서(Contract), 송장(Invoice)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문서에 미흡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함.
- 계약자명, 문서 내용과 같이 단순 정보를 확인해야하는 것도 있지만 문서자체가 어설프게 편집돼 있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예: 전자서명, 회사로고 등)

ㅇ 사기로 잃은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민사 법원을 통해 사기범을 찾으려고 할 경우, 범법 행위의 증거, 예를 들어 허위, 허위 진술, 기만, 계약 위반, 태만, 신탁 의무 위반, 신뢰 위반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함.

· 여기서의 범법이란 자금 수령 또는 부정 축재와 같은 음모를 의미함.

- 즉, 사기 사실에 대한 주장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

* 증거 예시
- 사기 거래자 은행계좌로의 자금이체를 자세히 설명하는 은행명세서
- 거래를 위해 돈이 이체된 사기범 은행계좌의 세부사항
- 사기 행각(이메일, 편지 또는 잘못을 증명하는 문서)을 보여주는 증거
- 자금/물품 손실이 유발되게 된 사기범과의 통화기록
- 갈취 당한 상품 및 거래 당시 주문 받은 상품의 목적지를 포함한 상품 및 자산에 대한 상세설명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NCA(National Crime Agency), Action Fraud, FCA(금융감독원)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파나마의 통상 및 통관환경[1)]

이주연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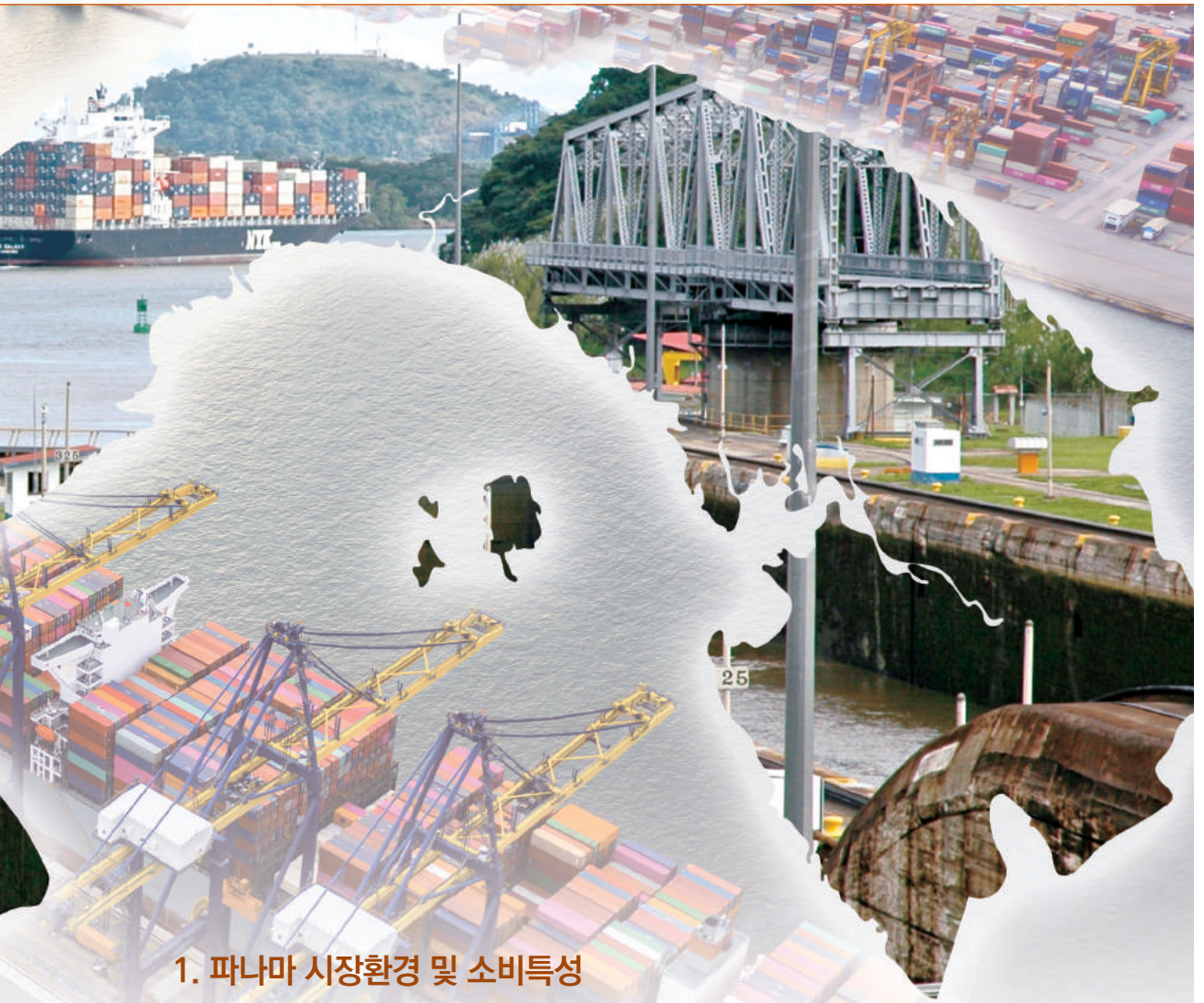

1. 파나마 시장환경 및 소비특성

지난 3월 1일, 파나마의 국내 발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드디어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되었다.[2] 한-중미 FTA의 가장 마지막 발효국인 파나마는 금번 우리와 FTA를 체결한 중미 5개국 중 구매력이 가장 큰 국가인 동시에 빈부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

세계은행(WB)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미 5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파나마(14,950달러), 코스타리카(11,700달러), 엘살바도르(4,000달러), 온두라스(2,390달러), 니카라과(1,890달러) 순으로 파나마의 1인당 GNI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신규 협정 체결국 FTA 활용절차(제도) 및 통관편람 e-book 제작, 중미편(국제원산지정보원, 2020)』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힘

2) 그간 한-중미 FTA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온두라스(2019.10), 코스타리카('19.11), 엘살바도르(2020.1) 4개국과 부분 발효된 상태였음

3) 해당 GNI는 세계은행의 최근 3년 평균 환율을 적용한 아틀라스 방식, 달러 기준으로 산출된 값임

한편,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와 관련해서는 파나마가 브라질, 온두라스에 이어 세계 3위의 불평등 국가로 기록된 바 있다(WB, 2018).

따라서 파나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타겟 고객군을 상류층과 중산층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이에 맞는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파나마의 상류층은 소비성향이 매우 높고 고급품 위주의 구매패턴을 지니며, 중산층의 경우 가격 중심의 구매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파나마는 전통적으로 미국식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미국 문화·제품·규격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는 주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제품이 주도하는 남미 시장의 특성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 다변화의 영향으로 한국산이나 일본산 제품이 파나마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으며, 생활용품이나 소비재의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이 가격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며 그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파나마 시장 진출 시, 대체로 가격은 중국산 제품과 유사하나 품질은 미국·유럽산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파나마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그린슈머(Greensumer)'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파나마 정부에서도 친환경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파나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친환경 및 유기농 관련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4)]

4) KOTRA 국가·지역정보(파나마)

2. 파나마 통관제도

파나마의 전반적인 통관 업무는 파나마 관세청(AUTORIDAD NACIONAL DE ADUANAS)에서 담당하고 있다.[5)]

파나마 관세청의 주요 업무는 무역 촉진 및 효율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국경 간 상품·인력·운송수단의 출입 및 이동의 통제, 수출입 모니터링·검사, 관세 위반 방지·조사·제재 등이다.

[파나마 관세청 주요 정보]

자료 : 파나마 관세청(https://www.ana.gob.pa/)

5) 파나마 관세청(https://www.ana.gob.pa/)

[파나마 관세청 세부정보]

항목	내용
주소	Avenida Ascanio Villalaz, Panamá,
전화번호	+507 506-6400
이메일	soporte.siga@ana.gob.pa / grupo_procesos@ana.gob.pa
홈페이지	https://www.ana.gob.pa/
주요 역할	국경 간 상품·인력·운송수단의 출입과 이동의 통제, 수출입 모니터링 및 검사, 관세 위반 방지·조사·제재 등
목표	무역 촉진 및 효율적인 세금징수를 통한 국가의 안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모

3. 파나마 수입통관 및 구비서류

파나마에서 수입통관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수입신고서,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상업송장, 선하증권(B/L) 등이 있다.

이들은 파나마 관세당국 요청 시 제출하여 수입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통관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잘 구비해야 한다.

[파나마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 목록]

구분	서류 및 내용
A	수입신고서(Entry form)
B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on de Liquidacion) - 통관사가 작성하여 관세총국(Direccion General de Aduanas)에 제출
C	상업송장(Invoice) - 선적지에서 B/L 발급 및 선적 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주한 파나마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가 제출되면 인보이스 금액의 1%(최소 10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함. 영사 확인료는 단계별로 다르나,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100달러 이하이면 무료이고, 10만 달러 이상은 75달러임

구분	서류 및 내용
C	– 상업송장(Invoice)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판매자의 주소, 파나마 내의 바이어와 수탁자, 운송선박명, 선적항구, 하역항구, 목적지, 쉬핑 마크 및 번호, 포장형태 및 수량, Net Legal 및 Gross 중량, 부피, 제품명세, 단위가격 및 총 금액, 가격조건인 'CIF PANAMA'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내용
D	선적서류(B/L), 포장명세서
E	수입업자 납세증명서 –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F	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 –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산정한 관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서

자료 : Tradenavi, KOTRA 해외시장뉴스

파나마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파나마에 도착하면 도착지 관할세관에 수입신고서(Entry form),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on de Liquidacion) 등과 함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는 통관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별도의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및 제세를 모두 납부한 후에야 세관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파나마 국영은행 등을 통해 해당 물품에 부과된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한 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인 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파나마 관세는 일반적으로 종가세 방식으로 산정되며 일부 품목에 한해 종량세나 혼합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관세 이외에 부과되는 기타 제세로는 소비세(ITBMS), 특별소비세(ISC) 등이 있다.

파나마에서 일반적인 수입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세관 영업일 기준으로 약 4~5일 정도가 소요되며 수입자는 아무 통관대행사에 통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일반 수입 통관이 아닌 파나마 국제 박람회와 관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식 통관대행사(Auturoy Aurauz, S.A.)에만 맡기도록 규정되어 있다.

4. 파나마 관세

우리와 FTA를 체결한 중미 5개국 중 파나마를 제외한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4개국은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fican Common Market) 회원국[6]으로 중미공동관세를 공통 기본 관세체제로 채택,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파나마의 경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 기본 관세율(General Duty Rate)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여 운영 중이다.

파나마의 기본 관세율은 1999년 WTO 가입에 따라 대폭 인하되었으며 현재는 쌀, 유제품, 자동차 3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0~10%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파나마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해당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 등 일정 특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 관세율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정확한 파나마 기본 관세율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파나마 관세청 웹사이트(www.ana.gob.pa)에 게시된 파나마 수입 관세율표(ARANCEL DE IMPORTACION DE LA REPUBLICA DE PANAMA)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ARANCEL DE IMPORTACIÓN
DE LA
REPÚBLICA DE PANAMÁ

EN TÉRMINOS DE LA NOMENCLATURA DEL
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SAC)

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REPUBLICA DE PANAMA

COMISIÓN ARANCELARIA

VERSIÓN QUINTA ENMIENDA
CONFORME A LA LEY 26 DE 17 DE ABRIL DE 2013

15 de octubr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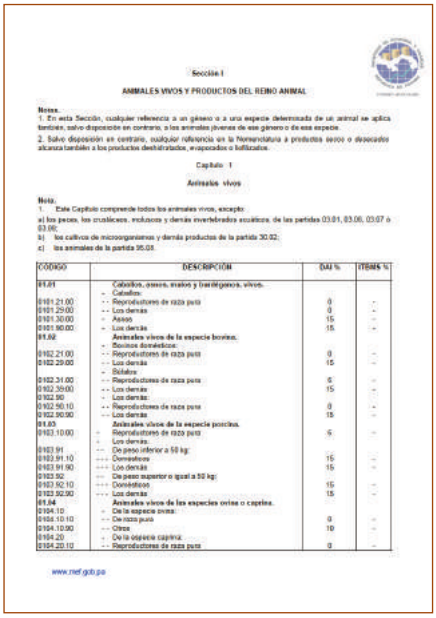
Sección I

ANIMALES VIVOS Y PRODUCTOS DEL REINO ANIMAL

Notas.

1. En esta Sección, cualquier referencia a un género o a una especie determinada de un animal se aplica también, salvo disposición en contrario, a los animales jóvenes de ese género o de esa especie.

2. Salvo disposición en contrario, cualquier referencia en la Nomenclatura a productos secos o desecados alcanza también a los productos deshidratados, evaporados o liofilizados.

Capítulo 1

Animales vivos

Nota.

1. Este Capítulo comprende todos los animales vivos, excepto:

a) los peces, los crustáceos, moluscos y demás invertebrados acuáticos, de las partidas 03.01, 03.06, 03.07 ó 03.08;

b) los cultivos de microorganismos y demás productos de la partida 30.02;

c) los animales de la partida 95.08.

CÓDIGO	DESCRIPCIÓN	DAI %	ITBMS %
01.01	Caballos, asnos, mulos y burdéganos, vivos.		
	- Caballos:		
0101.21.00	-- Reproductores de raza pura	0	-
0101.29.00	-- Los demás	0	-
0101.30.00	- Asnos	15	-
0101.90.00	- Los demás	15	-
01.02	Animales vivos de la especie bovina.		
	- Bovinos domésticos:		
0102.21.00	-- Reproductores de raza pura	0	-
0102.29.00	-- Los demás	15	-
	- Búfalos:		
0102.31.00	-- Reproductores de raza pura	0	-
0102.39.00	-- Los demás	15	-
0102.90	- Los demás:		
0102.90.10	-- Reproductores de raza pura	0	-
0102.90.90	-- Los demás	15	-
01.03	Animales vivos de la especie porcina.		
0103.10.00	- Reproductores de raza pura	0	-
	- Los demás:		
0103.91	-- De peso inferior a 50 kg:		
0103.91.10	--- Domésticos	15	-
0103.91.90	--- Los demás	15	-
0103.92	-- De peso superior o igual a 50 kg:		
0103.92.10	--- Domésticos	15	-
0103.92.90	--- Los demás	15	-
01.04	Animales vivos de las especies ovina o caprina.		
0104.10	- De la especie ovina:		
0104.10.10	-- De raza pura	0	-
0104.10.90	-- Otros	10	-
0104.20	- De la especie caprina:		
0104.20.10	-- Reproductores de raza pura	0	-

www.mef.gob.pa

자료: 파나마 관세청 홈페이지(www.ana.gob.pa)

6)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회원국 :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총 5개국)

현재 파나마의 품목분류체계는 HS코드 10단위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파나마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기본 관세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파나마 기준 HS코드 10단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의 품목분류체계는 HS코드 12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파나마 품목별 기본관세 확인 방법]

HS CODE	Description	General
0101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Horses	
0101.21-0000	Pure-bred breeding animals	0%

자료 : Tradenavi

[참고] 파나마 국가 개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국기		종교	가톨릭 84%, 개신교 15%
면적	75,517km²	기후	열대우림
수도	파나마시티	국체	공화국
인구	389만명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민족	메스티소 60%, 흑인 13%, 백인 11%, 기타 15%	화폐	미국달러, (파나마 발보아)
언어	스페인어(공식), 영어	GDP	668억불

자료 : 각국 주대한민국영사관, 인구(World bank, 2019), GDP(World bank; IMF 2019), 한국수출입액(K-sta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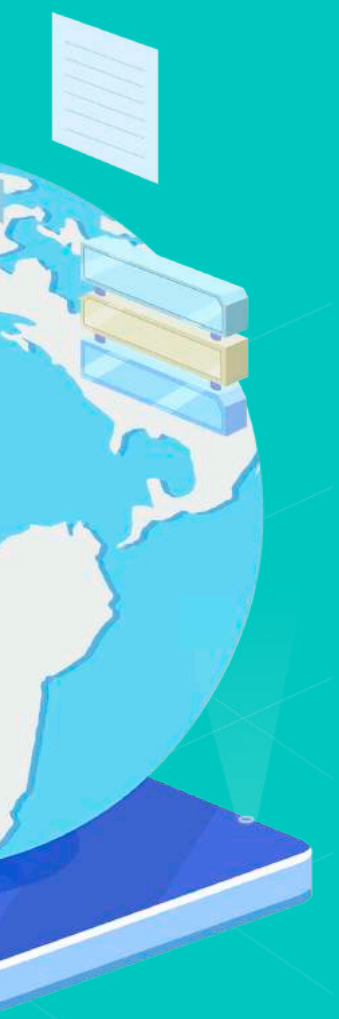

FTA 품목분류

관세율표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 품목분류와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오수교 | KPMG 관세법인 관세사

관세율표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 품목분류와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오수교
KPMG 관세법인 관세사

필자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을 마지막으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2015년 9월부터 KPMG 관세법인에서 품목분류와 FTA 전문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다.

1.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하는 물품

1) 조건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1]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은 우선 조제(preparation)하여야 한다. 조제에 관하여 관세율표나 HS 해설서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인삼 추출물(제1302호)과 포도당(제1702호)의 혼합물과 같이 둘 이상의 다른 식료품(또는 식품 첨가제)을 혼합한 것 또는 본래 식료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화학적 특성이 변화된 식료품(예: 로즈힙을 압축 여과 농축한 주스, 검은 뽕나무 잎을 발효 건조 덖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식료품의 저장성이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냉장·냉동·염장·건조·훈제와 같은 가공은 제2106호의 조제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육류나 어류의 조제 식료품(제1601호~제1605호), 곡물이나 곡물가루의 조제 식료품(제1901호~제1905호), 식용 채소나 과실의 조제 식료품(제2001호부터 제2009호까지) 등은 제2106호로 분류할 수 없다.

끝으로 식용에 가능한 상태(condition)를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부패나 변질 또는 오염 등으로 식용할 수 없으면 용도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동물 사료용(제2309호), 비료용(제3101호), 음식물 쓰레기(제3825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형

HS 해설서에서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하는 유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로는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조리·용해나 물이나 밀크로 끓이는 등의 가공을 한 후에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다.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에는 로열젤리로 강화한 천연 꿀, 식이 보조제(food supplement), 인공감미료로 만든 껌(gum) 등이 해당한다.

물에 끓여 식용하는 조제품에는 인삼차(인삼추출물과 포도당이 혼합된 것)를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그룹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하는 수출입 물품 중에서 식이 보조제(food supplement)가 거래 비중도 높고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 기준의 적용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으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관세율표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는 소호 제2106.10호(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와 제2106.90호(기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소호 제2106.10호는 거래 대상 물품도 적고, 특별히 쟁점이 될 부분도 없어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고 제2106.90호(기타)에 해당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2. 식이 보조제(food supplement)[2]의 분류 기준

HS 해설서 제2106호에서 "식이 보조제란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제3003호나 제30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한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HS 해설서 제2106호의 기본재료와 첨가제인 활성 성분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종류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본재료에는 곡물의 가루나 전분 또는 포도당이나 설탕과 같은 물질이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활성 성분에는 유산균·홍삼 추출물·레시틴·옥타코사놀·글루코사민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물론 이러한 식이 보조제의 섭취 목적은 활성 성분에서 얻을 수 있는 약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물은 기본재료가 중량이나 부피 기준으로 볼 때 활성성분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기본재료는 활성 성분의 섭취나 가공을 쉽게 하거나 또는 운반체(carrier)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활성성분을 섭취되는 양이 소량인 점을 고려할 때에 기본재료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이 식이 보조제를 분류할 경우에 특히 활성 성분의 종류와 약리적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물론,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과의 구분도 중요하므로 약사법의 제반 규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식이보조제는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강화식품, 보건식품 등 다양하게 호칭하나 이들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글에서 식이보조제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게 한 개념으로 한다.

3. 제2106호에서 제외하는 물품

식이보조제를 포함한 조제 식료품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106호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섭취나 포장이 쉽도록 캡슐에 넣은 경우도 이와 같다. 특히 아래 제외하는 물품 중에서 (1), (3), (5), (7)항은 세율과 FTA 적용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류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채소류 혼합물

서로 다른 종(種)의 건조 채소류 혼합물이 직접 음료용 향미료나 음료 제조용 추출물 제조용이라도 제0712호로 분류한다. 가루 상태인 경우도 이와 같다.

(2) 향신료 혼합물

서로 다른 종(種)의 향신료끼리의 혼합물이나 향신료와 채소류나 약용식물 등과의 혼합물로 향신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면 직접 음료용 향미료나 음료 제조용 추출물 제조용이라도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로 분류한다.

(3) 육이나 어류 등의 조제품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은 제1601호부터 제1605호로 분류한다.

(3) 의약품

의약품은 제3003호나 제3004호로 분류하며, 이와 관하여는 아래 4항을 참조하면 된다.

(4) 효소 조제품

제3507호로 분류한다.

(5) 밀크 조제품

밀크를 기본 성분으로 한 조제품은 제1901호로 분류한다.

(6) 효모 조제품

제2102호로 분류한다.

(7) 주류

음료 형태의 주류에 비타민이나 철 화합물을 첨가하여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것은 제2205호나 제2206호부터 제2208호로 분류한다.

4. 의약품(제3004호)과 식이 보조제의 구분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고, 식이 보조제는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의 유지를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타민류나 무기염을 함유한 식이보조제는 특정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한다는 표시가 없다면 의약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의약물을 함유하는 유사한 식료품과 음료라도 이들 물질이 단지 식이요법상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그 물품의 에너지 부여나 영양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그 맛을 개량하기 위하여 첨가한 것이면 그 물품이 본래의 음식물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한에서는 식이 보조제로 취급한다.

다만, 식이보조제의 성격의 물품이라도 입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맥을 통하여 공급하는 형식의 물품은 의약품으로 취급한다.

품목분류에서는 위의 사항이 두 물품의 구분 기준이 되나, 실제 의약품이나 식이보조제(건강기능식품)로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보건당국에서 각각 그에 적합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2106호의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제2106호의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 2단위 류(chapter)나 4단위 호(heading) 변경 기준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표 1] 주요 FTA협정의 제2106.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구분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1	한-미 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6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2	한-EU FTA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3	한-아세안 2017 FTA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4	한-호주 FTA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제품은 제외한다)
5	한-캐나다 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의 물품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6	한-중 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	한-베트남 FT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한다)

※ 이 표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편의상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것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는 반드시 원문 확인이 필요

위 규정 적용의 이해를 돕고자 어느 조제 식료품의 BOM 명세표가 아래 표2와 같은 경우로 가정하여 위 7개의 FTA 적용 여부를 판정하면, 한-호주·한-캐나다·한-중 FTA·한-베트남 FTA는 적용이 가능하고, 한-EU와 한-아세안은 공장도가격이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반면에 한-미 FTA는 제21류에 속하는 ②과 ⑤의 원재료가 비원산지 재료이므로 특혜세율은 적용받을 수 없다.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의 FTA를 적용할 때 유념할 사항은 혼합된 구성 성분 중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어느 한 성분이라도 제2106호에 해당하면 원산지 물품에서 배제된다는 점이다. 특히 소량의 첨가제(예: 품질 보존제)가 그런 사례에 해당할 수도 있다.

[표 2] 조제 식료품 BOM 명세표

번호	원재료 품명	HS code	원산지 여부
①	Red ginseng powder	1211.20	yes
②	Green tea extract	2101.20	no
③	lactose	1702.19	no
④	L-theanine	2922.49	no
⑤	Dry inactive yeast	2102.20	no
⑥	Vitamin C	2936.27	no
⑦	Coating Agent(mixture)	2106.90	yes

6. 결론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이 잔여 호인 점을 고려할 때에 품목분류도 쉽지 않지만, 더 어려운 점은 수출자가 제공하는 BOM상의 모든 개별 원재료의 HS code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만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적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품목분류 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은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 통일되게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입국과 수출국에 따라 견해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수입국의 과세당국에서 최종결정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수출자가 제공하는 HS code의 적합성을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품목분류 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외통관애로

EU 관세행정 발전방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정재호 | 주벨기에 및 유럽연합 한국대사관 관세관

EU 관세행정 발전방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정재호
주벨기에 및 유럽연합
한국대사관 관세관

1. 도입

EU는 하나의 관세동맹을 기초로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단일시장으로서 2019년 기준 세계무역 비중은 15.3%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으로 발전해 왔으며, EU의 관세동맹은 EU 공동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EU 국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EU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이 중심에 27개 관세당국은 매일 약 85만건의 수출입신고를 처리하고, 매월 약 33백만유로(40백만 달러 상당) 상당 규모의 수출입통관 물류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 및 통제 책임이 있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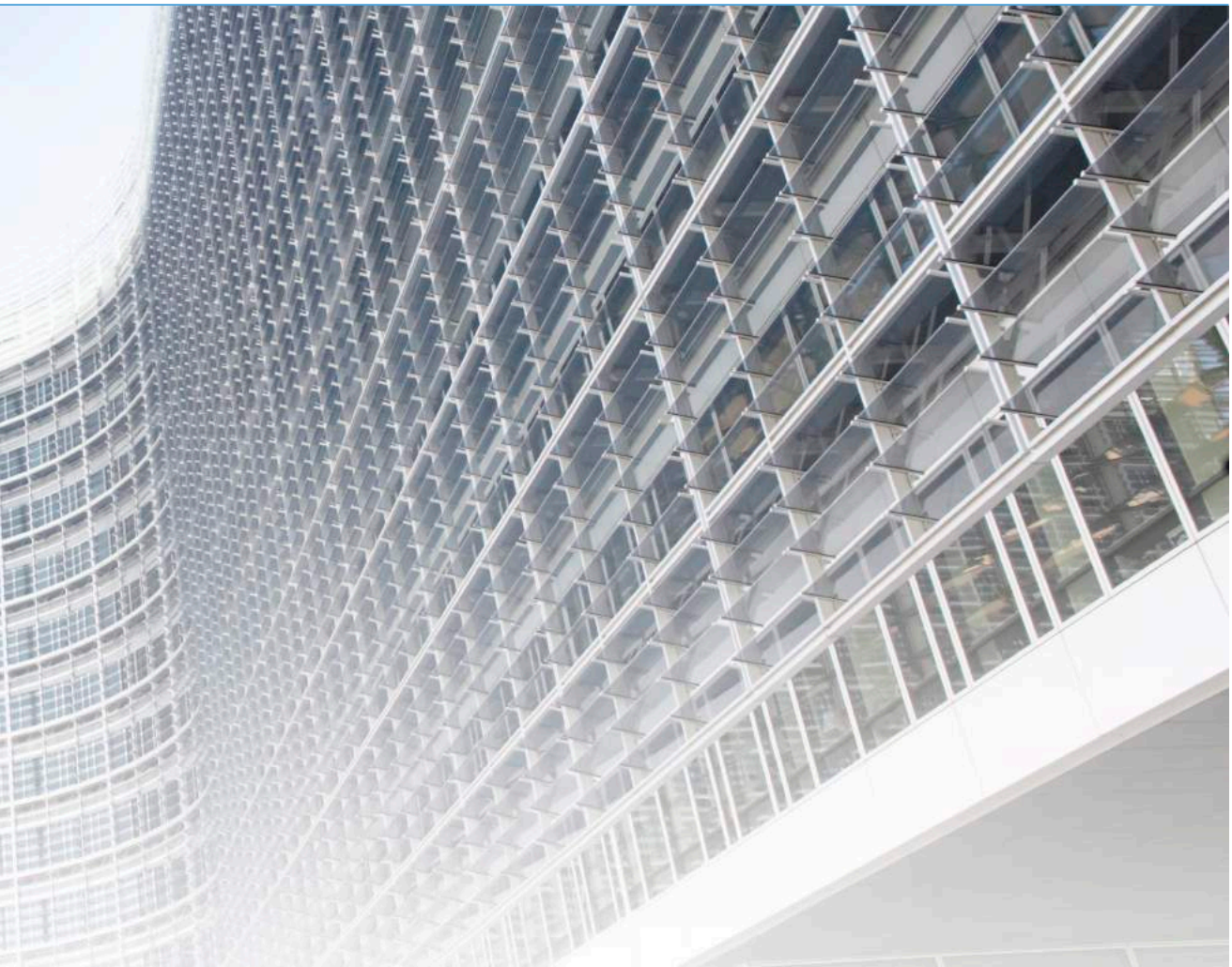

그러나 2016년 EU 공동관세법의 대대적 개정을 거쳐 통일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관세 및 수입부가세의 회피 증가, 위조 및 불량(unsafe) 물품의 밀수 증가, 27개 회원국간 관세통제의 불균형 및 취약국가로의 불법 반출입이 확대되고, 전자상거래 등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공동된 대응이 미흡하며,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탄력적 통관행정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EU 집행위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향후 4년간 EU 관세동맹을 보다 스마트하고 혁신적이며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통합된 관세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위험관리에 기반한 지능적인 무역공급망 감독을 통해 EU 사회·환경·경제를 보호하고, 통관행정 이해당사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관세행정의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한편, 27개 회원국이 하나의 관세동맹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위험관리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compliance) ▲단일 관세행정 4대 부문별로 총 17개 세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는바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훑어보고 우리가 함께 대응해 나갈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EU 관세행정 발전방향

1) 효과적 세관위험관리

① EU 공동분석역량(JAC) 강화

EU내 다양한 국경관리기관의 전자시스템이 구축되어 풍부한 관련 data가 생성되고 있으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이 미흡하여 위험관리에 취약성을 드러낸 바, 세관 및 비세관 출처의 수출입데이터의 수집·공유 및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개선된 수입통제 시스템(ICS2)의 3단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간	세부 행동계획
2021.12	ICS2의 수출입추세 분석툴 및 감시데이터 분석툴 구축
2023.12	감시데이터의 데이터셋(data set) 확대 위조상품(COPIS), 위조방지정보(AFIS), 부가세납부정보 시스템과 연계 우편, 특송(express), 항공화물 도착전정보 분석 시행
2024.12	해상, 도로, 항공운송업자 및 물류제공업자가 제공하는 사전적하 및 도착전 사전정보 분석 시행

② 위험관리전략 개편

또한, EU에서는 현행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보다 즉각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개편하여 무역관련 금융 및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프로세스 강화를 추진한다.

(2021 Q2) 재무위험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강화, 비금융리스크 및 전자상거래 대응을 포함한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새로운 위험관리전략(New Risk Management Strategy) 수립

2) 전자상거래 관리 강화

① 통관목적의 VAT 데이터 활용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업체의 VAT 과세정보에 대한 관세당국의 직접적 접근성을 확대하여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및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세관과 조세당국간 무역 사기예방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기대한다.

기간	세부 행동계획
2022.12	Eurofisc 조세정보허브*와 세관망 직접 연결시스템 개발
2024.1	VAT 납부정보 data에 대한 세관의 접근가능성을 평가하고, 2024년 1월까지 최종해결방안을 제안

* 'Eurofisc'는 EU회원국간 조세사기 정보의 처리·분석·후속조치를 위해 구축된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②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전자상거래업자의 역할 및 의무 재검토

2021년 7월부터 수입원스톱샵(IOS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는 플랫폼내에서 세무당국에 특정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부여되는바, 전자상거래 통관목적으로 동 플랫폼에서 관세당국에 신고의무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간	세부 행동계획
2021.12	전자상거래가 관세징수 및 EU사업자의 공평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3.Q1	플랫폼내 관세당국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UCC) 개정 마련

3) 법규준수 강화 및 촉진

① AEO 프로그램 강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 공인경제운영자(AEO) 프로그램에 대해 세관 위험관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AEO업체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철저한 이행과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021.Q3) 회원국들에게 철저한 이행 및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제안 및 AEO 지침의 업데이트 추진

② EU 싱글윈도우(S/W) 환경 개발 및 구축

보다 강력한 통제와 무역촉진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관, 보건, 환경, 식품안전 등 여러 목적의 국경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연계하고, 싱글윈도우 환경내에서 정보의 협업적 처리, 공유, 교환 및 강화된 위험평가를 통해 보다 빠른 통관절차를 수행한다.

(2020.Q4) EU 세관싱글윈도우(S/W) 환경 구축 입법안 제시

참고로,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 28일 동 행동계획의 첫번째 조치로서 EU 싱글윈도우 입법 제안서(Proposal for EU Single Window Environment for Customs)를 제출하고, 서로 다른 당국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능률화하여 여러 포털을 통해 문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단일 창구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국경통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관련 구체적 사항은 EU 관세총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201028_commission_proposal_single_window.pdf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general-information-customs/electronic-customs/eu-single-window-environment-for-customs_en

③ 공동관세법(UCC)에 대한 평가

2016년부터 현대화된 공동관세법(UCC)에 따라 완전한 서류없는 전자통관(paperless)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는바, 특히 코비드-19와 같은 위기상황 및 전자상거래와 같인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 환경에서 동 시스템이 현대화·간소화에 적합하는지 또는 탄력적 대처가 가능한지 중간평가(Interim evaluation)를 실시하고 공동관세법의 개정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UCC 전자통관 17개 시스템 중 현재 9개 시스템이 정상 구축 가동 중이며, 2025년 말까지 모든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UCC Work Program)

(2021.Q4) 공동관세법(UCC)에 대한 중간보고서 작성

④ 세관제재에 대한 공통체계 구축

하나의 관세영역으로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통된 제재를 목적으로 각 회원국의 개별제재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통된 제재기준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간	세부 행동계획
2021.Q4	국가별 제재기준에 관한 지침 마련
2022.12	불이행 제재와 관련 법률제안의 필요성 검토

⑤ 관세사기(customs fraud) 대응 규정 재검토

EU 회원국내 협력 및 정보교환 규정(EC No.515/9718)은 EU영역에서의 관세사기 예방의 주요 법적 수단이 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새로운 사기형태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재검토하여 새로운 관세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1.Q1) 사기에 대한 대응여부 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정개정 필요성 재평가

⑥ 위조 및 안전취약 수입물품에 대한 대응

최근 Covid-19위기에서 불법제조·위조된 안전취약 보호장비 등의 반입으로 통관감시의 필요성이 재부각되었고, 2021년 시행되는 시장감시와 준수에 관한 규정(EU 2019/1020)에 맞춰 위조 및 안전취약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개입 및 효과적 협력을 강화한다.

(2021-2025) 통관행정 관련 시장감시 이행입법 마련(2021) 및 EU차원의 관세와 시장감시 시스템 간* 연계프로그램 개발(~2025)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for pan-European Market Surveillance (ICSMS) and the EU Single Window environment for customs.

⑦ 특혜무역협정 원산지규정 모니터링

특혜무역 증가로 시장접근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원산지규정을 위반한 우회적인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EU의 수출입 무역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혜원산지 이행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규칙의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등 특혜협정 체결국과 원산지 위반과 관련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1~)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특혜원산지 규정 및 절차 모니터링 확대, 원산지규정 및 절차 위반시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EU 이익 보호

⑧ 주요 교역상대국(특히 중국)과 관세 관련 국제협력 강화

EU에서는 주요 교역상대국과 관세문제 및 다자간 협력차원에서 상호행정지원 개선 및 강화를 추진하되, 쌍방 교역규모 및 전자상거래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감안하여 중국 및 여타 교역상대국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하고자 한다.

* EU는 중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세관문서의 전자적 교환 촉진, 온라인 판매제품 안전에 관한 이행, 위험관리 및 공급망 보안 지원, 관세정보 교환, AEO 상호인정 다양한 분야 협력을 추진

기간	세부 행동계획
2020.12	중국과 관세협력 전략프레임워크(2021-2024) 합의 예정
2021.12	국제협력 및 관세분야 상호행정협력체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 착수 및 개선안 제안

4) 단일 관세행정(Customs working as one)

① 세관, 보안당국, 국경관리기관과의 협력 등

EU의 외부국경과 내부보안 측면에서 관세정보 시스템과 기타 정보시스템간 격차 해소 및 상호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회원국의 보안·국경관리·세관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권고한 보안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 쉥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및 Europol 데이터와 3단계 수입통제시스템(ICS2)과의 연계를 검토중이다.

(2021.12) 3단계 ICS2 최종 구축시점(2024년) 까지 모든 데이터 연계 완료를 목표로 쉥겐정보 시스템과 Europol 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개발 타당성 연구 완료

② 관세동맹 성과평가

관세정책 성과평가를 위한 연간 및 분기별 성가지표 제출이 회원국의 자발적 의사(voluntary basis)로만 진행되어 평가품질이 저하됨에 따라 주요 성과지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동맹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2021.12) 관세정책결정의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자발적 보고방식의 문제점 및 법적 프레임 워크의 필요성 평가

③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세관감시장비 구축

EU는 2021-2027 다년간재정계획(MFF)내 관세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여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간 동등한 수준으로 세관감시망 구축을 추진한다.

* 2021-2027 MFF 관세예산은 최첨단 세관감시장비(X선, 스캐너, 휴대용 장치, 번호판 자동 인식 등) 구입 예산을 반영하여 230% 이상 증액된 950백만유로가 편성됨

(2021~) 2021년부터 회원국간 통일된 세관감시망 구축 추진

④ MFF 2021-2027내 관세프로그램 협력매커니즘 강화

MFF내 관세프로그램을 통해 관세동맹의 기능 및 현대화를 지원하고 내부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회원국 세관당국간 협력을 촉진한다.

(2021~2028) EU 집행위 차원에서 EU 회원국에 대한 공통교육 및 세관전문교육 등 인적역량을 강화를 포함한 관세행정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⑤ 관세동맹의 효율적 관리방안

현재 직면하고 있는 Covid-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그간의 EU 집행위 입법조치, 세관당국과 무역업자를 위한 세관절차 해석지침과 함께 공동관세법의 통관절차가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를 실시한 결과, 현행 법령의 개선 필요성, 미래대비에 대한 상시 연구의 필요성, 신속대응 매커니즘 등 관세동맹하에서의 최선책을 탐구하는 검토그룹(reflecting group) 설립이 요구되며, 보다 개선된 조직의 필요성과 기관의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간	세부 행동계획
2021.Q1	미래연구/위기관리 이해관계자 검토그룹 출범
2022~2023	관세협력영역을 포괄하는 기관 설립에 대한 찬반 등 영향평가 실시

3. 맺음말

EU는 지난 2016년 공동관세법(UCC) 개정을 통해 EU내 통일된 관세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회원국별 재정지출 차이 및 지원미흡, 행정격차 등으로 세관전산화 기본계획(Work Program)이 지연*되어 하나의 관세동맹으로서의 관세행정 수행에 미흡하였음을 평가하고, 향후 일관성 있고 강력한 관세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상기 행동계획들을 마련하였다.

* 2016년 추진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계획(Work Program)은 당초 2020년말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회원국간 협력 부족 등으로 2025년까지로 순연

이번 조치들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세관 및 비세관 출처의 데이터 관리, 공유 및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U 외부국경에서의 회원국의 단일한 관세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U역내의 안전과 이익 확보를 위해 세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회원국의 공통된 세관절차 집행을 위한 EU 집행위의 강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 행동계획은 향후 4년간의 EU의 관세행정 발전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서 특히 EU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의 단계적 구축에 따라 통관절차의 개선 및 변화가 예상되며, EU내 통일된 통관시스템 운영으로 그동안 EU 각 회원국간 차별적인 통관관행이 완화되고, 더 빠르고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개선 효과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절차의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EU와의 불법무역 관련 정보협력 확대, AEO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이행 강화, FTA 원산지검증 등 위반여부 감독 강화 등 양자간 관세협력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과 EU 양자간 무역 확대 및 원활한 관세협력을 위해 관련 규정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점검도 필요하다.

끝으로, EU는 한단계 높은 수준의 관세동맹을 지향하며, 관세동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국경 통제기관 설립여부 검토 등 상시적 미래 대비와 보다 나은 통일된 관세행정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며,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거대 관세동맹의 선두주자인 EU의 관세행정 변화를 유의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FTA 100% 활용하기

한-EU FTA 활용하기

EU 4대 경제대국 스페인의 시장 잠재력

정기훈 | 주스페인대사관 경제 담당 실무관

한-EU FTA 활용하기

EU 4대 경제대국 스페인의 시장 잠재력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서유럽 국가이다.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하나이다.

스페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 16.7만 명에서 2019년 62.9만 명(스페인 통계청 발표)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용한 한국인 수는 2018년 5,665명(갈리시아 관광청 발표)으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정기훈
주스페인대사관 경제 담당 실무관

스페인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듯 '꽃보다 할배', '윤식당2', '스페인 하숙' 등 다양한 예능 프로들이 스페인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로 양국간의 인적 교류가 잠시 위축되었으나, 코로나19가 극복되는 순간 이전보다 더 활기찬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스페인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당당히 EU 4대 경제대국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와의 경제적 교류는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고려했을 때 다소 아쉬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스페인의 유명 관광지와 문화는 이제 국내에도 제법 소개되었지만 스페인 경제와 시장 사정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과연 스페인 경제는 어떠한 특징과 무역 파트너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번 기회를 통해 스페인 경제와 시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서두

서비스와 내수 중심의 스페인 경제, 고용지표가 경기 판단의 바로미터

스페인은 인구 규모 및 경제력 측면에서 한국과 가장 유사한 국가로 손꼽힌다. 2020년말 스페인통계청(INE) 발표 기준 스페인 전체 인구는 4,700만명이며 세계은행 집계 기준 2019년 스페인의 전체 GDP는 $1조 3,934억 달러였다.

전 세계 GDP순위에서 한국과 스페인은 나란히 12위, 13위에 올랐다. 양국의 경제규모는 비슷하지만 GDP를 구성하는 산업구조는 상이하다.

스페인은 전체 GDP 내 서비스업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에 비해 제조업 기반은 약하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은 무역수지 적자를 서비스 수지 흑자로 메우는 형태의 경상수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핵심 제조업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있다.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스페인은 2019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 순위 9위(유럽 2위)에 올라 있는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 9개 브랜드의 17개 제조 공장을 유치하여 운영 중이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전체 재화 수출의 15%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수출품목으로 국내 생산량의 80% 가량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에 있어 내수의 기여도가 절대적인 내수중심 국가이다. 2010년 이후 유로존 경제위기 회복과정에서 유로화 가치 하락, 내부 구조조정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등으로 수출이 크게 신장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의 근원은 내수시장에 있다.

고용 회복에 따른 소비 활성화가 전형적인 스페인 경제성장 패턴이었다. 따라서, 수출 지표를 경기의 바로미터로 삼는 우리와는 달리 스페인의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실업인구, 사회보장가입인구 등의 고용관련 지표들을 먼저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스페인 최근 경제상황 및 전망
디지털 아젠다 2025, 장기탄소중립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스페인 경제는 2014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이후 견고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으며 다시 무너졌다.

스페인통계청(INE)이 발표한 2020년 경제성장률은 -11.0%로 EU평균 -6.4%보다 훨씬 높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전체 GDP의 12% 가량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전반적인 기업 구조가 영세하다 보니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2020년 스페인 방문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수입은 전년 대비 80% 가까이 감소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긴급 경제지원으로 공공지출이 크게 늘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공공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0년 10월까지 스페인의 GDP대비 재정적자는 7.1%로 10개월 만에 무려 4.2%p 상승했고 2020년말 현재 공공부채는 117.1%로 19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부실한 재정구조로 당분간 스페인 경제는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약점을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2020.5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를 발표하며 총 7,500억 유로의 EU경제회복기금을 마련하였는데 이 가운데 1,400억 유로가 스페인에 할당 되었다.

1,400억 유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20억 유로는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이다.(단, EU는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스페인에 각종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각 국가별 지원규모는 지난 과거 및 향후 경제 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는데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함께 동 부양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로 평가된다.

어찌 보면 스페인에게는 경제기반을 다시 세우고 반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스페인 정부는 EU의 지원을 활용하여 친환경·디지털 경제 중심의 경제회복을 구상하고 있다.

자연히 향후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제조 등의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지원이 예상된다. 우리의 '코리안 뉴딜'과 정책적 방향성이 같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스페인 정부는 디지털 아젠다 2025[1], 장기탄소중립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등 다양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1)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기 부양, 산업생산성 제고 및 최첨단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10대 핵심 전략인 Connectivity 개선, 5G망 확대,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개선, 사이버보안 강화, 공공기관의 디지털화, 기업의 디지털화, 핵심 산업의 생산구조 디지털화, 유럽의 영상콘텐츠 플랫폼으로 육성,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시민, 기업 관련 법적 디지털 환경 재정비를 발표

3. 한 – 스페인 교역현황

2019년 기준 스페인은 우리나라의 29위 교역국

스페인은 친EU 성향이 강한 국가로 대외 무역의 65% 이상을 EU 역내에서 해결하고 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스페인 교역규모는 54.2 억 달러로 (수출 27.7 억 달러, 수입 26.5 억 달러)로 스페인은 우리나라의 29 위 교역국이었다.(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적 경제 상황이었기에 2019년 자료를 언급한다.)

양국 교역은 2000 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다소 정체되었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살아났으며, 2012년 한-EU FTA 체결 이후 교역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양국의 주요 교역 품목은 아래와 같다.

[한-스페인 주요 교역 품목 (2010 - 2019)]

[단위:%]

순위	한국 수출 품목	비중	한국 수입 품목	비중
1	자동차·관련부품	32.8	식품	17.7
2	전자전기제품	14.6	광물성 연료(천연가스,원유 등)	13.2
3	석유화학	13.4	정밀화학(의약품, 화장품)	12.2
4	철강·금속	11.4	자동차·관련부품	10.4
5	기계류	7.6	광산물	7.5
6	섬유류	5.9	석유화학제품(비료 등)	6.3
7	기타	14.3	기타	32.7

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스페인 수출품목]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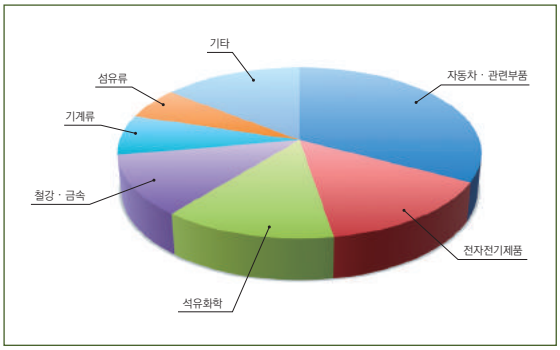

[한국-스페인 수입품목]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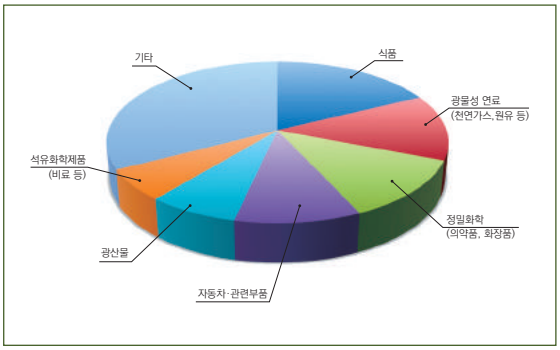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KITA)
주: 2010년-2019년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으로 대체로 스페인 내에서 한국 제품은 좋은 품질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서비스가 좋고, 납기일 준수 및 퀄리티 유지를 잘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4. 스페인 수출 유망 분야
제조업 중 플라스틱, 자동차, 화장품 등에 집중 필요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화학제품, 산업용 철강, 자동차, 공작기계 등의 제품들이 스페인 진출에 유망하다. 최근 친환경·디지털 경제 전환 기조에 따라 스페인 내 5G관련 장비, 전기차 관련 부품, 산업용 수소 차량 및 수소 관련 제품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자동차 제조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페인 정부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인프라를 친환경 자동차 제조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스페인 정부가 최근 폐쇄를 선언한 바르셀로나 닛산 공장의 새 주인으로 배터리 업계의 강자, LG에너지 솔루션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국내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한류 확산의 영향으로 국제적인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의 스페인 시장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스페인의 화장품 수입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아직 한국의 주요 화장품 수출 대상국이 아니지만 2017년 AMI, 2019년 JC People 등의 기업들이 스페인 최대 백화점 엘 코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és)에 차례로 입점하는 등 한국 제품들이 점차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한 스페인 업계 관계자는 스페인 시장진출을 원하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 유럽 내 수입 화장품 인증 제도가 까다롭기 때문에 수입 라이선스를 가진 로컬 중개상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홍보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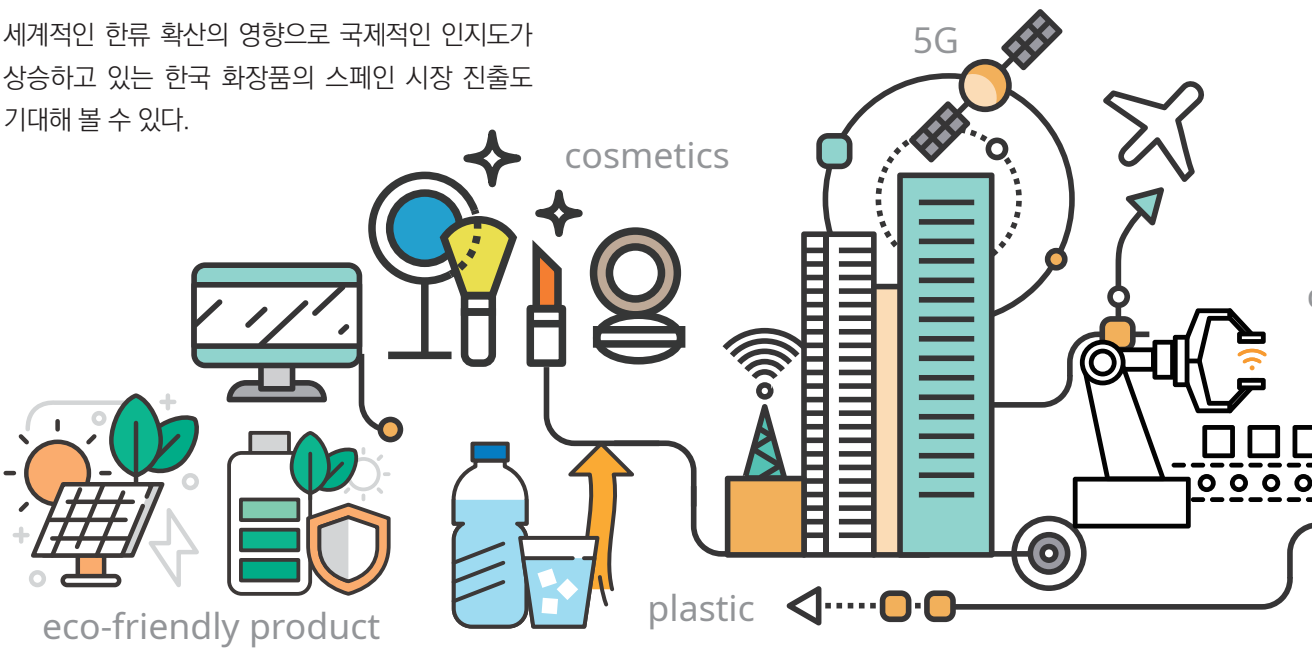

5. 스페인 소비 시장 특성
보수적 소비 태도, 탄탄한 실버 마켓 구매력, 가격 중시

4,700만 명에 달하는 자체 인구와 연 8,000만명 이상 들어오는 외래 관광객 수를 감안했을 때 스페인은 상당히 큰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일단 스페인 소비자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다.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으로 새로운 제품 수용에 신중한 반면, 한 번 신뢰를 가진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충성도를 자랑한다.

제품이 시장 내 자리잡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 베드 성격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구매관련 의사 결정 시간이 길고 온라인 쇼핑보다는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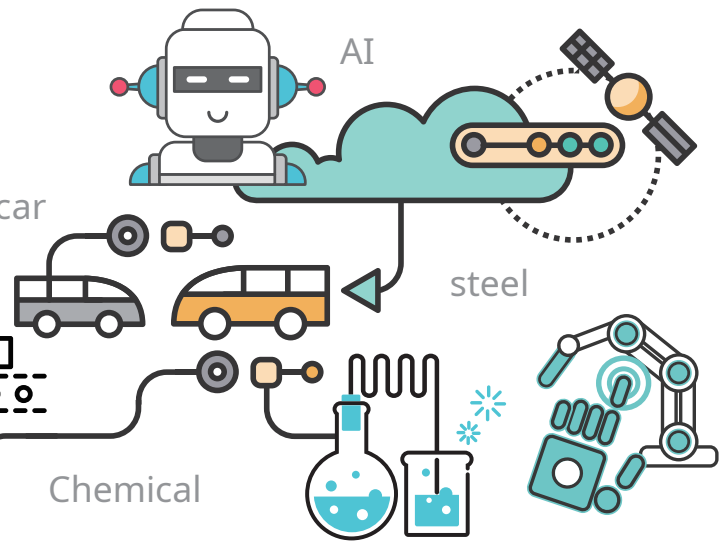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에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 않던 소비계층이 온라인 쇼핑을 경험하면서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유통 기업들도 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아마존(Amazon), 알리바바(Alibaba)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의 장악력이 높다. 스페인통계청(INE) 발표 기준 2019. 4분기 스페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967 유로로 2,000유로가 넘는 EU평균보다 낮은 수준 이다.

대기업이 많이 없어 전체적인 급여수준이 높지 않으며 고용주는 각각의 근로자에 대해 급여의 30% 이상 되는 금액을 사회보장세(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포함)로 납부해야 하기에 근로자가 높은 실수령액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스페인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높지 않으며 품질보다는 가격이 중요한 구매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나친 고품질을 추구하기 보다는 가성비가 높은 제품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노령 소비자 계층은 탄탄한 구매력을 자랑하며 내수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잘 발달된 국민연금제도가 이들 구매력의 원천인데 2019년 OECD 발표 기준 스페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83.4%로 EU평균 63.5%를 크게 상회하였다.

은퇴 이후에도 월급의 80%가량을 평생 받으니 안심하고 쓸 수 있다. 무상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의료비 부담도 없다. 2020년 7월 기준 스페인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은 19.6 % 에 달했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데다가 한국처럼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 내수시장 내 소비력을 갖춘 고령인구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이므로 실버 소비층을 겨냥한 제품들의 진출 전망은 밝다.

6. 스페인 시장 진출 방안
상호신뢰를 점진적으로 쌓아나가며 FTA 등의 제도 활용 필요

스페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수요조사, 업계 밸류체인, 유통구조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데 여러 제약들로 인해 직접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KOTRA 에서 제공하는 시장조사와 같은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스페인은 관광산업의 연계 산업인 전시·컨벤션 관광산업(MICE)도 발달해서 매년 각 산업별로 권위있는 국제 전시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주요 박람회에 참석하여 현지 시장상황을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페인 내 주요 전시행사 정보는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은 인맥과 관계가 중시되는 비즈니스 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두르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게 중요하다.

KOTRA 마드리드 무역관의 헤로니모 그라시안(Jerónimo Gracián) 투자유치 담당은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일수록 좋은 현지 유통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스페인은 각 지역별로 경제적 상황이 많이 다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타겟 지역의 사정에 밝은 지역업체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세부적인 제품 사양, 가격, 홍보 전략 등을 결정할 수 있고, 비용을 분담하여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즈니스가 일상화 됨에 따라 온라인 수출 플랫폼의 활용도 증대되고 있다. KOTRA에서 제공하는 Buy Korea 수출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등록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매칭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디지털화의 가속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이전보다 모든 프로세스들이 속도감 있고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쟁력 있는 한국제품의 노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한국과 스페인은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였다. 2019.10월 스페인의 펠리페 6세 국왕이 한국을 국빈방문 하면서 양국은 제4차 산업혁명, 친환경 에너지,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다짐하였다.

펠리페 6세 국왕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스페인 시장은 수출 강국 한국에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 EU-한국간에 체결된 FTA 덕분에 스페인과의 자유로운 교역 여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우리 기업들의 스페인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활발한 진출을 기대해 본다.

FTA 지도

2019년 vs. 2020년 수출입 증감품목
(FTA 체결국)

한눈에 보는 2019년-2020년
주요 산업별(MTI 3단위 기준) FTA 활용
수출입 비교

2019년 vs. 2020년 수출입 증감품목(FTA 체결국)

FTA 체결국 중 2019년 대비 2020년 가장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FTA 체결국 중 2019년 대비 2020년 가장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FTA 체결국 중 2019년 대비 2020년 가장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FTA 체결국 중 2019년 대비 2020년 가장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한눈에 보는 2019년-2020년 주요 산업별(MTI 3단위 기준) FTA 활용 수출입 비교

광산물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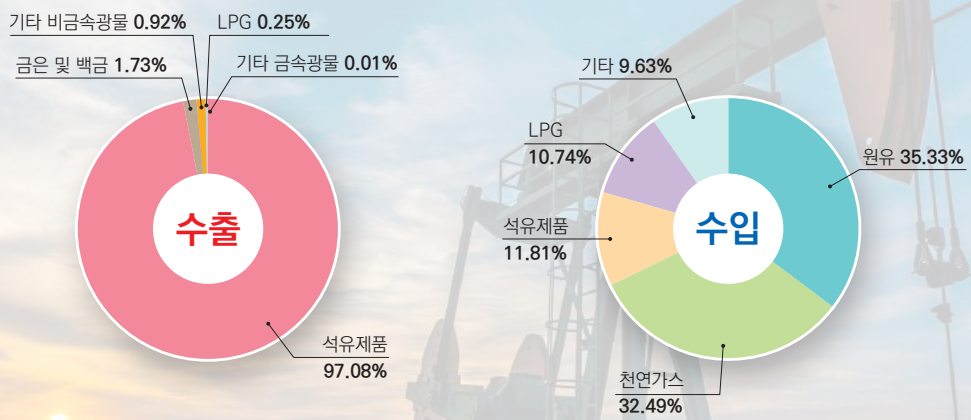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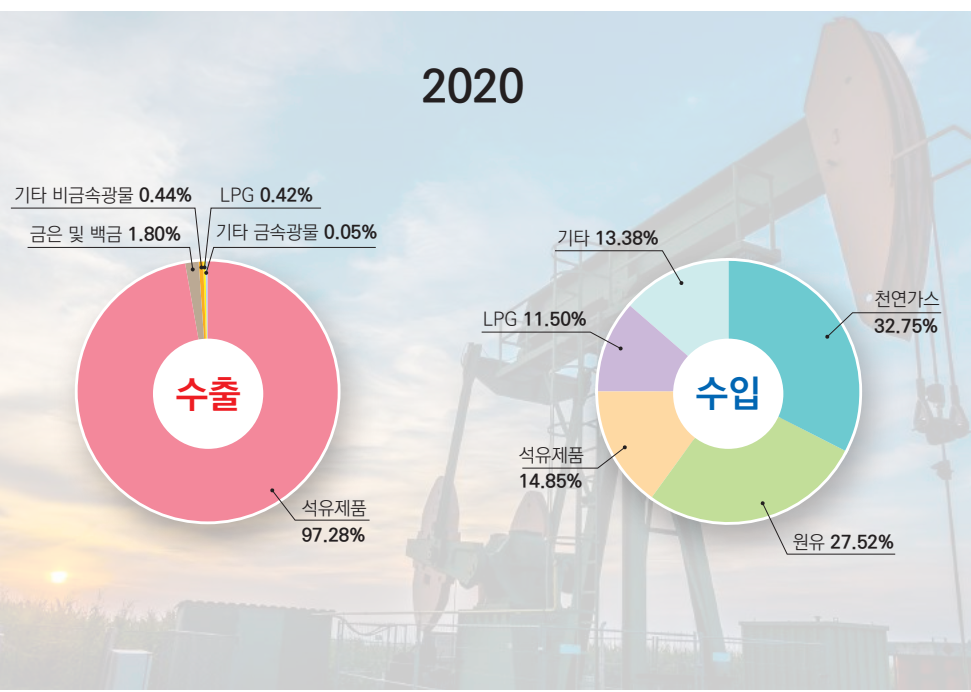

기계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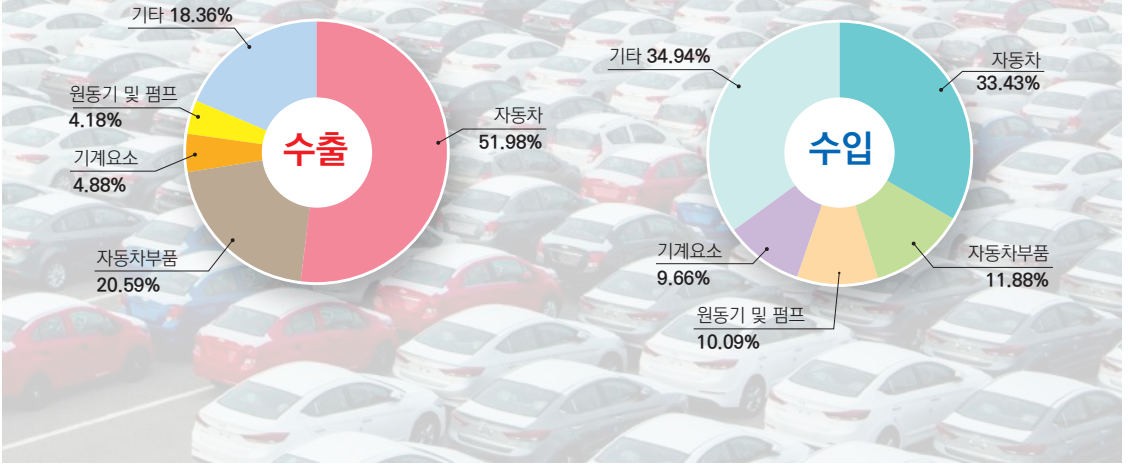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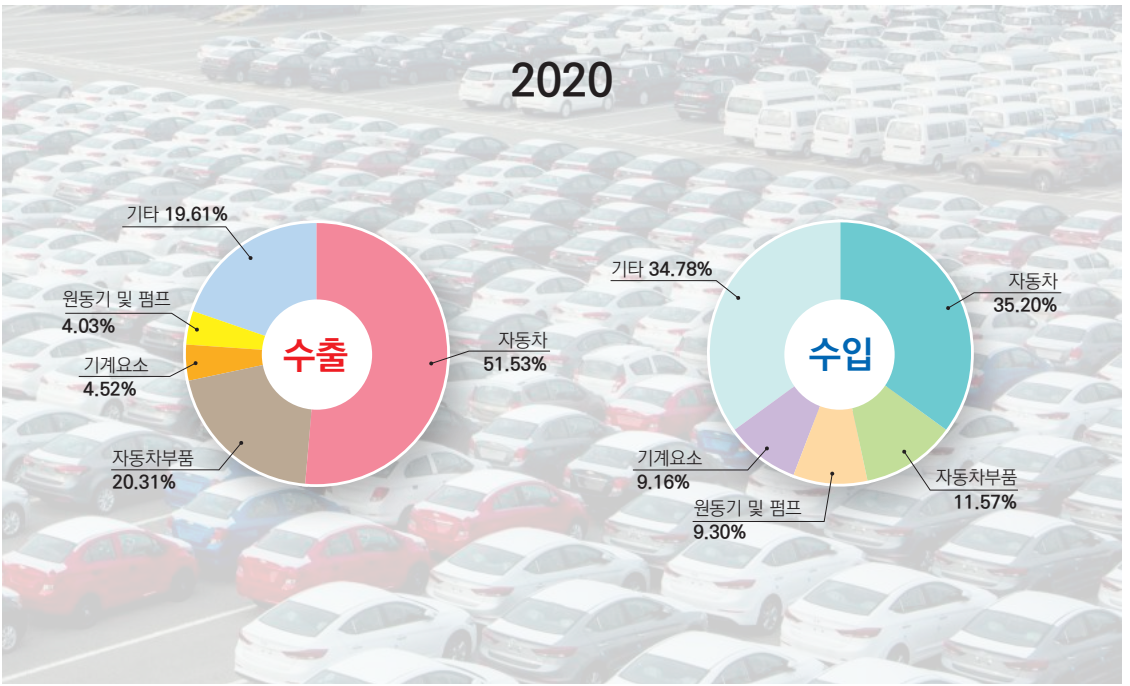

농림수산물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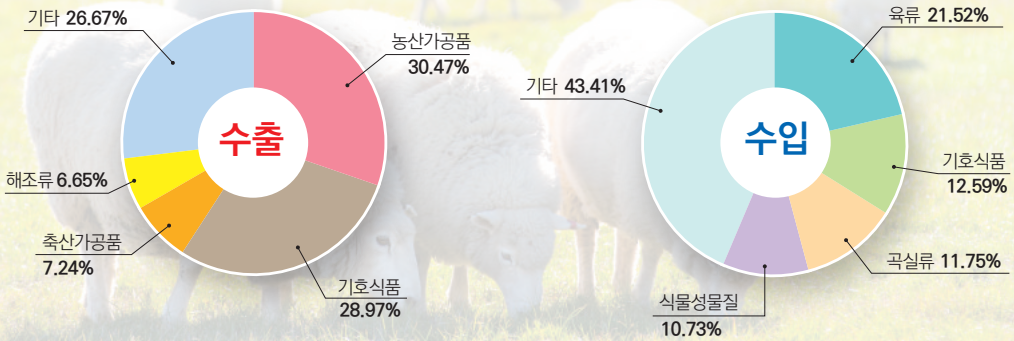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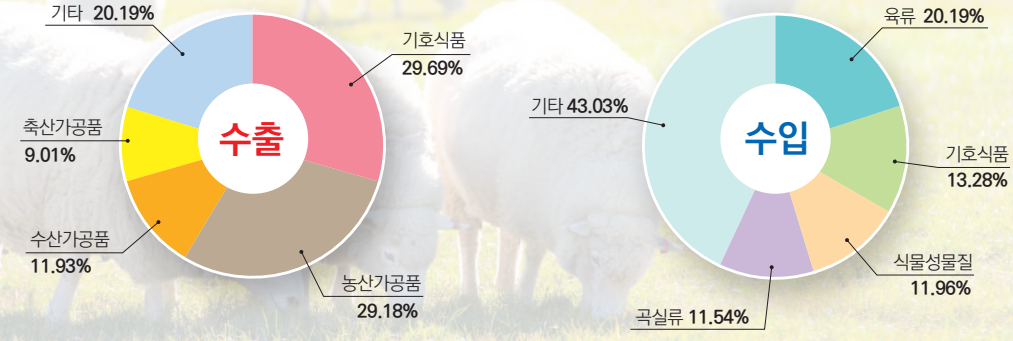

생활용품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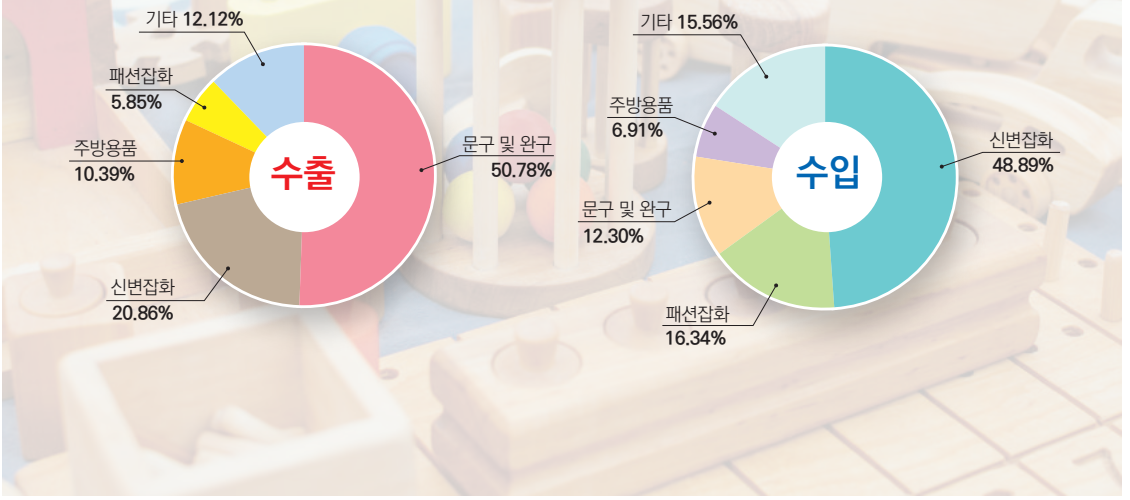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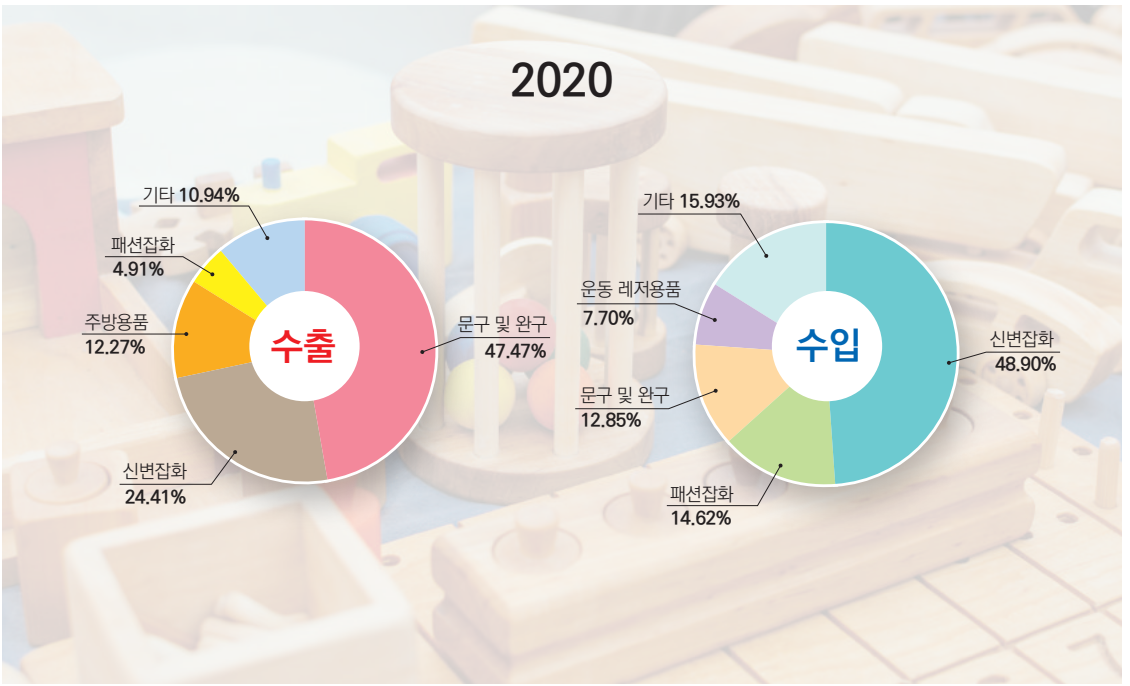

섬유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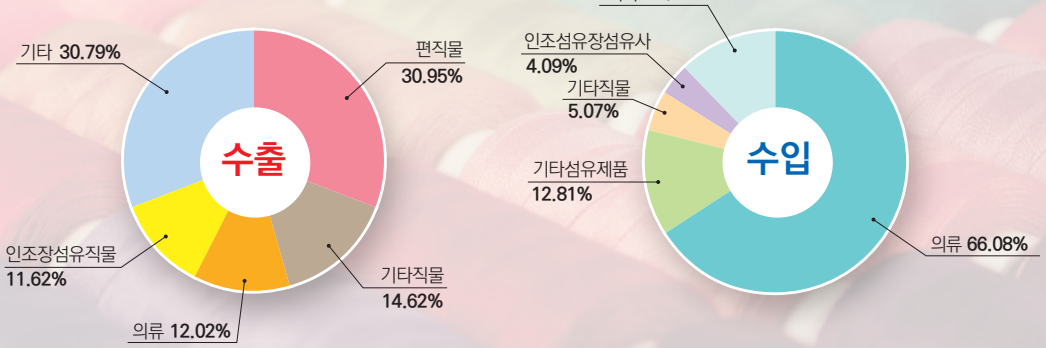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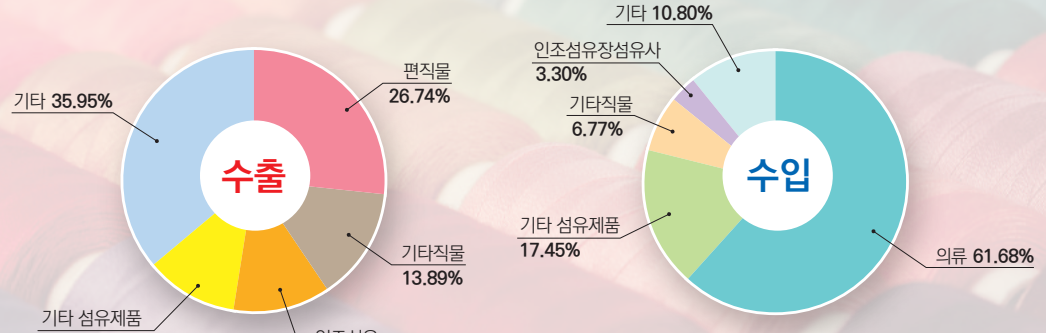

잡제품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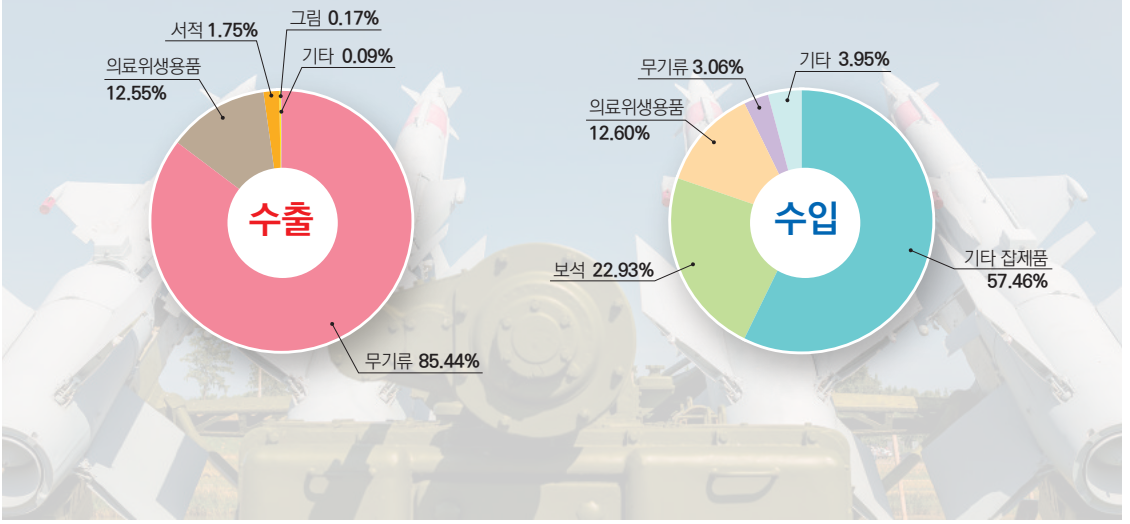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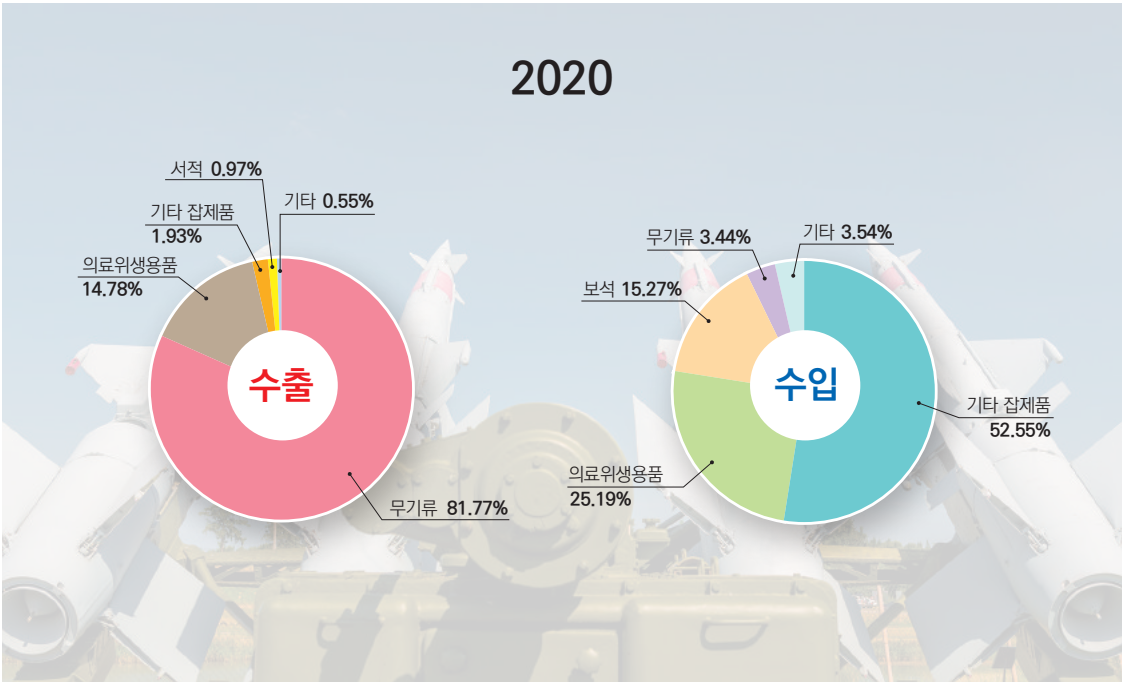

전기전자제품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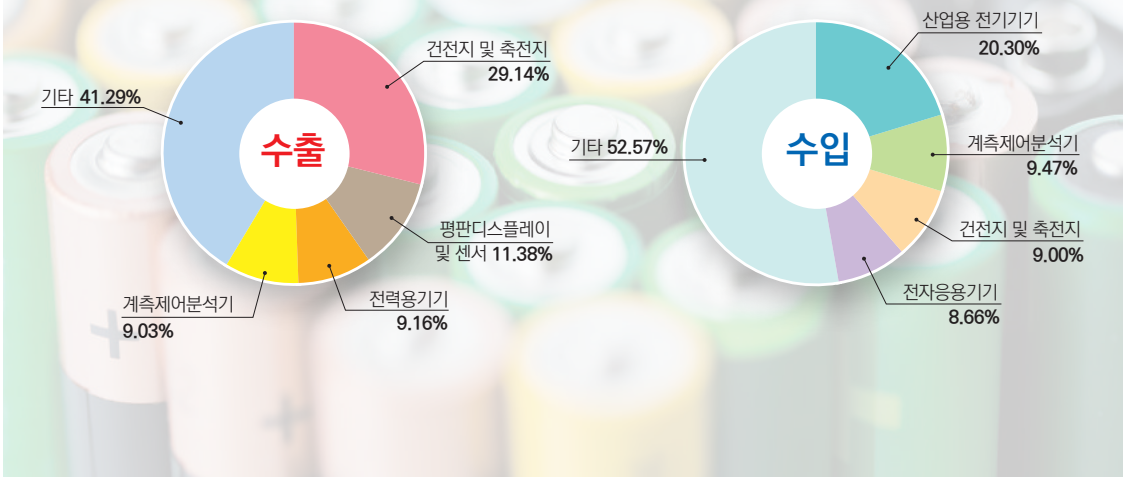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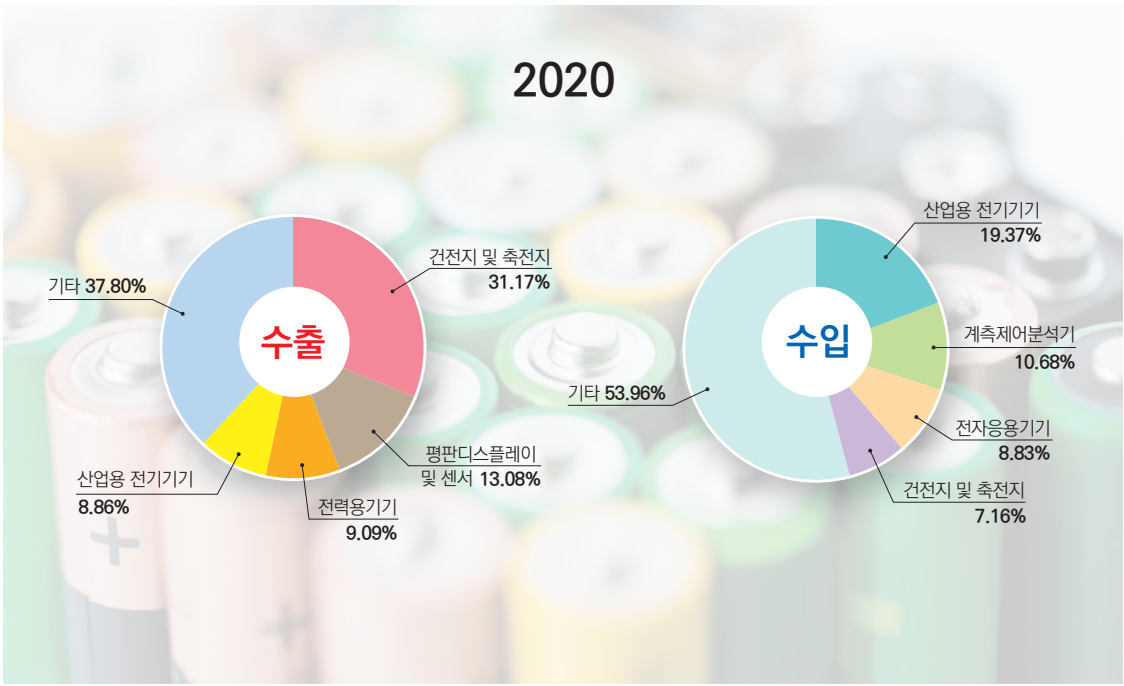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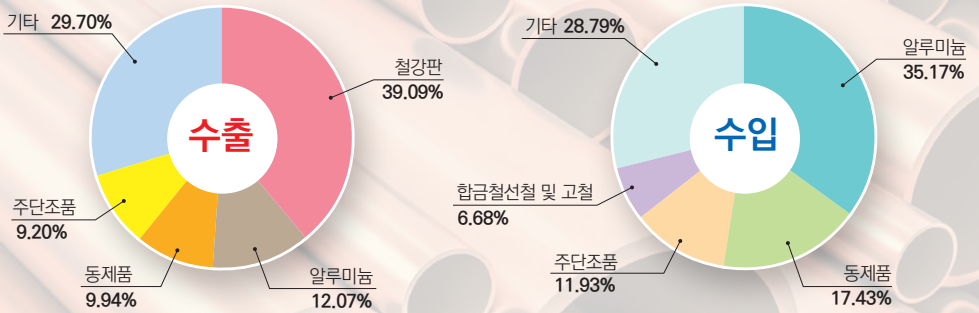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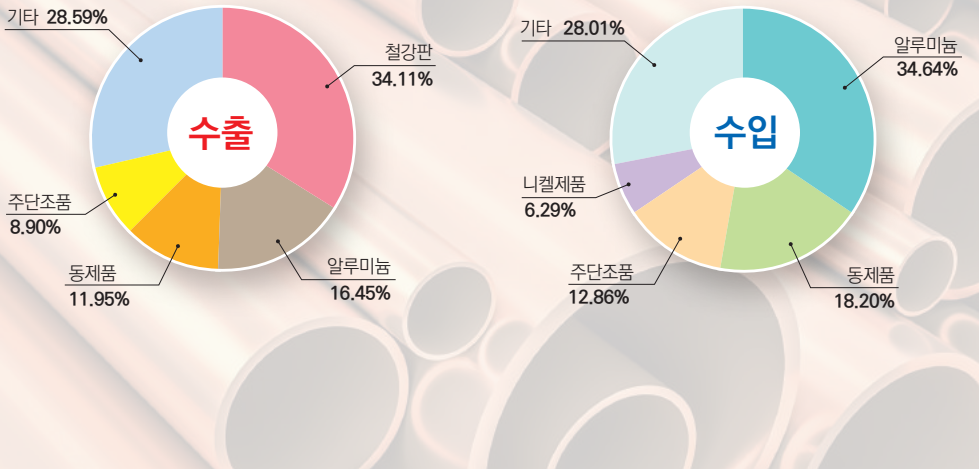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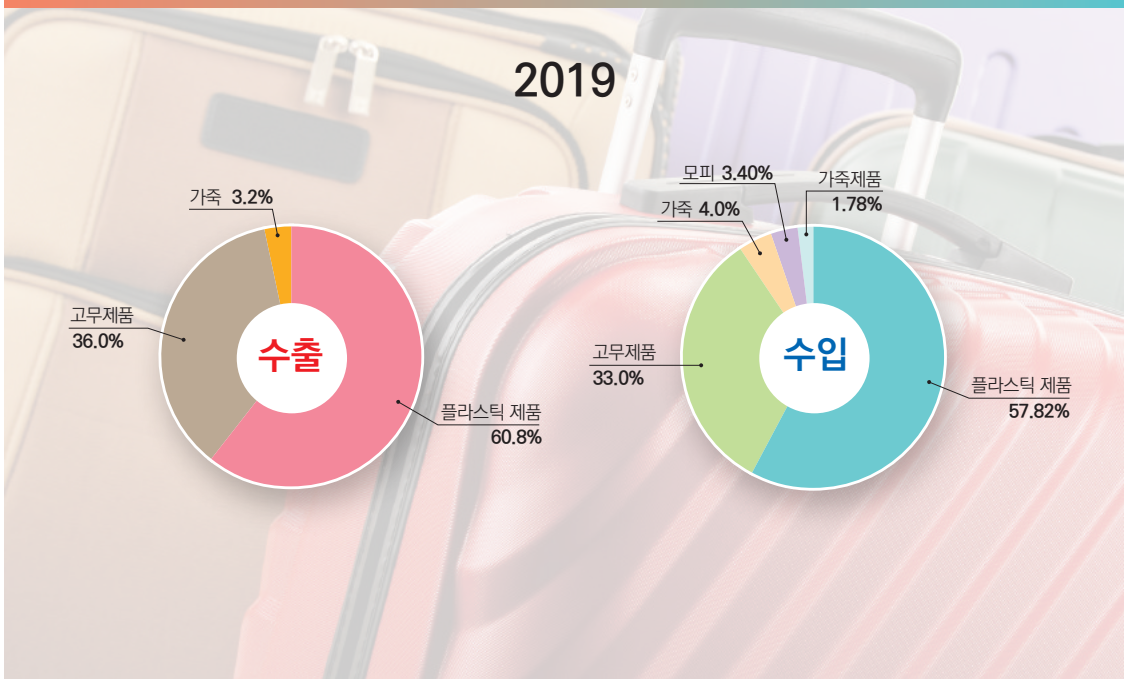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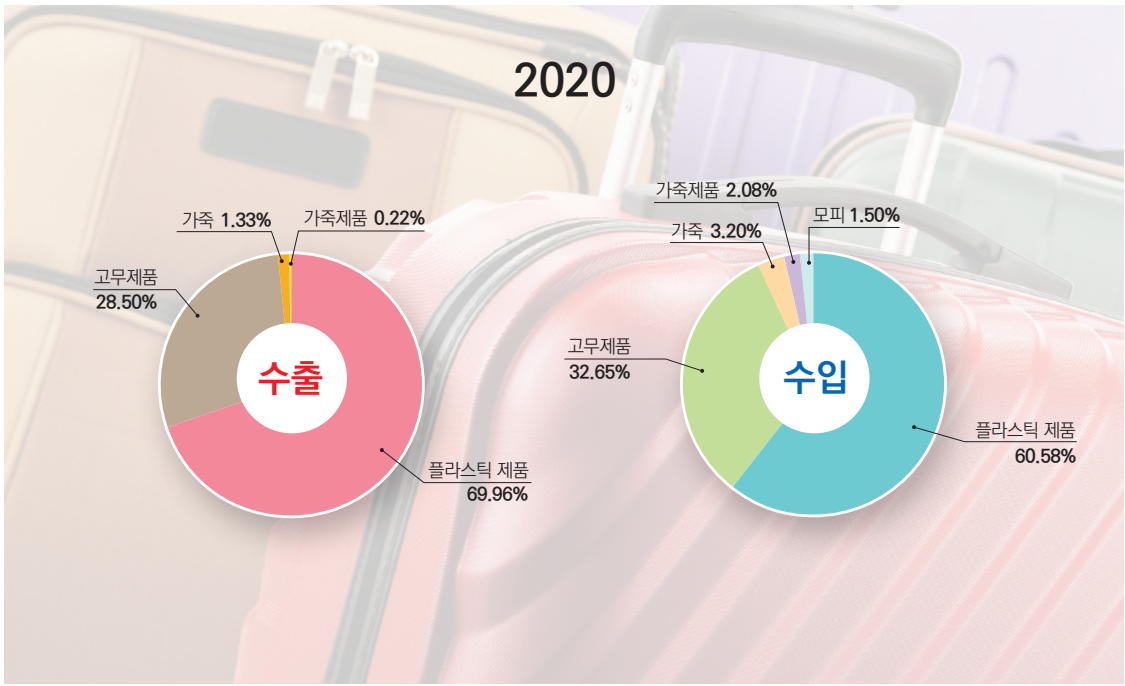

화학공업제품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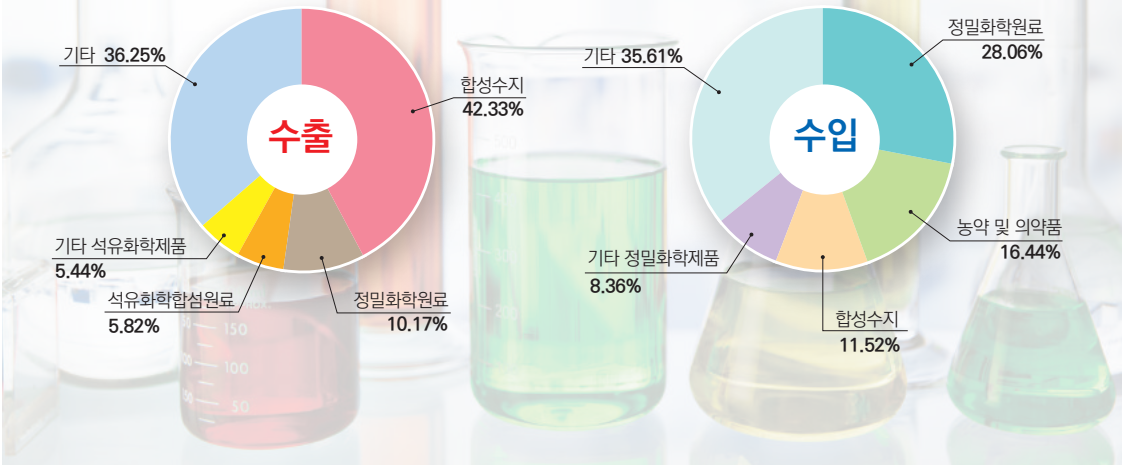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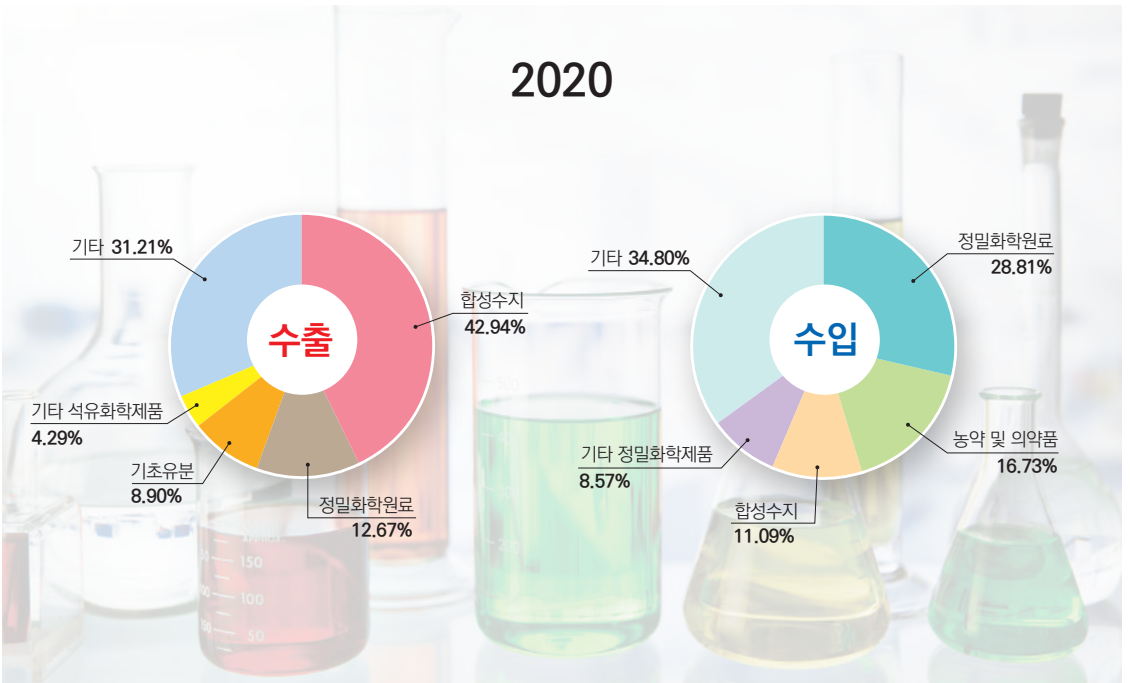

2021년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그리고 한국은 RCEP에도 서명하였다며
YesFTA
RCEP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야.
RCEP는 한국이 체결한 첫 메가 FTA이라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네.
2021년 2월에는 한국과 캄보디아 FTA를 타결했지.
한-캄보디아 FTA 타결선언
와우~ 역시 한국은 FTA 선진국이야!!
휘이익
하하하
캄보디아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 지역의 허브이며 성장 잠재력이 커서 아세안 시장으로의 접근이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잘 가~

PACIFIC OCEAN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철강(제72류)의 품목분류와 FTA 원산지결정기준

최지수 | 관세법인 더블유 관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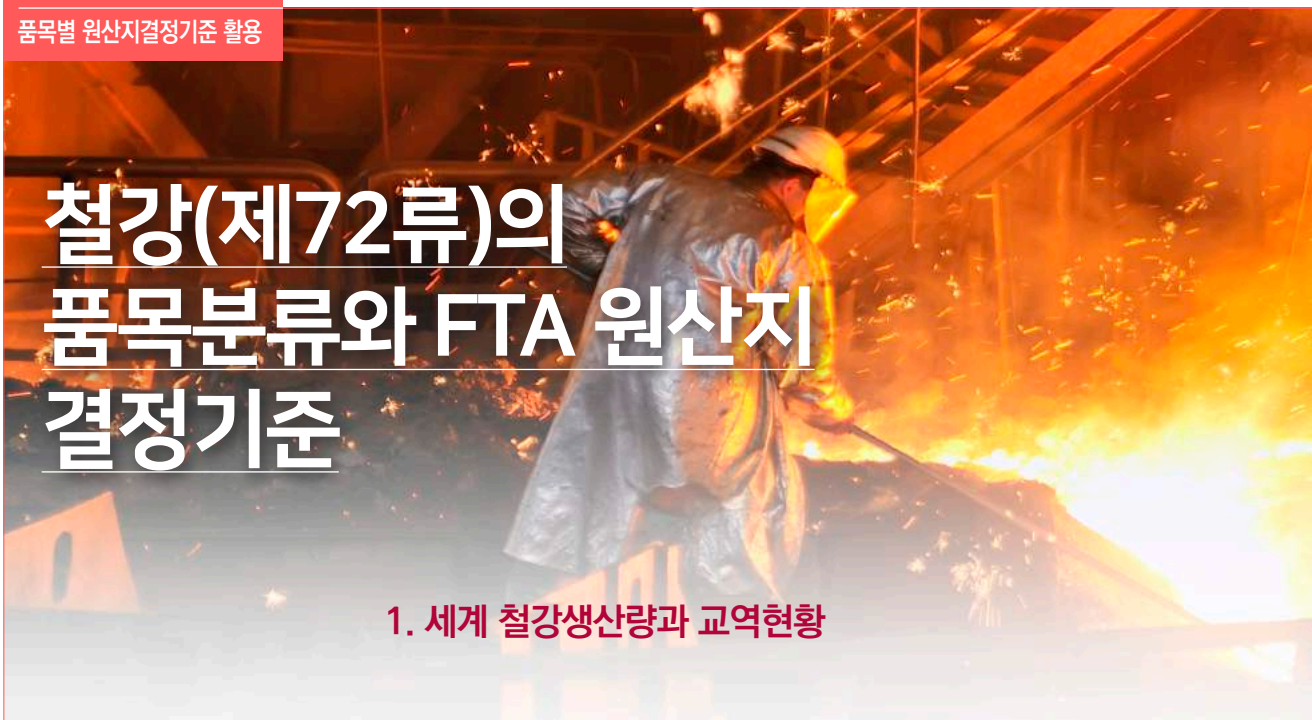

철강(제72류)의 품목분류와 FTA 원산지 결정기준

1. 세계 철강생산량과 교역현황

세계철강생산량은 18억69백만톤[1]으로 지역별생산량은 아시아(72%), 유럽(10%), 북미(6%), CIS(5%), 기타지역(7%) 순이고, 국가별생산량은 1위 중국(53%), 2위 인도(6.0%), 한국 (3.8%)은 6위이다. 철강생산방식은 철광석 용광로법(72%), 철스크랩 전기로법(27.7%), 기타(0.3%)이다.

국제교역에 있어 수출은 아시아(39%), 유럽(38%), CIS(11%), 북미(5%), 기타지역(7%)순이고, 국가별 순위는 1위 중국(14.5%), 2위 일본(7.5%), 한국(6.8%)은 3위이다. 수입은 유럽(35%), 아시아(31%), 북미(12%) 기타(22%) 순이고, 국가별 순위는 1위 미국, 한국은 5위로 수출입교역 규모는 세계 2위이다. 랭킹10위국가중 생산 6개국(72%), 수출 7개국(42%), 수입 9개국(37%)과 FTA협정을 맺고 있다.

철강은 구조물(건물, 교량등 52%), 기계장비(16%), 자동차(12%), 철강제품(10%), 전기전자제품(5%), 기타(5%)에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철강소비량는 세계5위이고, 1인당 철강소비량이 세계1위[2]로서 생산, 수출, 수입, 소비에서 철기시대 이후 철강산업문화의 르네상스시대를 누리고 있다.

최지수
관세법인 더블유 관세사

1) 2020년 세계 조강생산량은 18억 64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0.9% 줄었다. 참고로 1950년 189백만톤), 2004년 1,063백만톤이다. 국가별생산량의 순위는 2019년과 동일하다. 생산업체별(2019년)순위는 1위 ArcelorMittal(다국적) ,2위 China Baowu Group(중국) ,3위 Nippon Steel Corporation(일본),4위 HBIS Group(중국), 5위 POSCO(한국),현대철강은 15위이다.(출처: 세계철강협회)

2) 2019년 1인당 1,039kg으로 1위이고, 2위가 대만 760kg, 철강 1위 생산국인 중국은 633kg으로 4위이다.(출처: 세계철강협회)

〈표1〉 세계철강생산량과과 교역현황 [2019년]

순위	철강생산량(조강기준[3]) (단위 : 백만톤, 비율 %)		철강제품의 교역 상위국가 (중량기준, 단위 %)		국제교역 상위철강제품 (중량기준 share %)
	국가	생산량(비율)	수출국(share)	수입국(share)	
1	중국	996.3(53.3)	중국(14.5)	미국(6.2)	열연강판(18.4)
2	인도	111.2(6.0)	일본(7.5)	독일(5.3)	잉곳/반제품(14.2)
3	일본	99.3(5.3)	**한국(6.8)**	이태리(4.6)	아연도금강판(10.1)
4	미국	87.8(4.7)	러시아(6.7)	태국(3.8)	강관과 연결구(9.0)
5	러시아	71.9(3.9)	독일(5.5)	**한국(3.7)**	중후강판(7.8)
6	**한국**	**71.4(3.8)**	터키(4.5)	중국(3.5)	냉연강판(7.7)
7	독일	39.7(2.1)	이태리(4.1)	베트남(3.5)	선재(6.2)
8	터키	33.7(1.8)	벨지움(3.9)	프랑스(3.3)	형재(H빔)(5.0)
9	브라질	32.2(1.7)	우크라이나(3.6)	인도네시아(3.2)	철근(4.5)
10	이란	25.6(1.4)	프랑스(3.1)	멕시코(3.0)	도장강판(4.3)
전 체		1,868.8			

출처 : 세계철강협회(WSA)

3) 조강(粗鋼 : crude steel)은 가공하지 않은 선철, 잉곳, 반제품(반성품이라 함)을 말한다. 철강생산량은 조강기준으로 산출한다.

2. 한국의 철강 교역현황

철강과 철강제품의 수출은 323억불로 전체 수출의 6.0%이고, 수입은 226억불로 전체 수입의 4.5%이다.

FTA국가 수출은 224억불로 전체 철강수출의 69%, 수입은 140억불로 전체 철강수입의 62 %이다. 철강 수출 1위는 중국으로 14.1%, 수입 1위 역시 중국으로 34.4%를 점유하고 있다. 랭킹 5위 FTA협정국은 수출은 일본을 제외한 4개국(36.2%), 수입역시 일본을 제외한 4개국(44.4%)이다.

〈표2〉 철강과 철강제품의 교역현황

구 분		철강 교역량(억불, %)				철강 1위 국		
		수출	비율	수입	비율	수출(share%)		수입(share%)
전체	소재(72류)	231	71	157	69	1	중국(14.1)	중국(34.4)
	제품(73류)	92	29	70	31	2	일본(12.2)	일본(33.4)
	계	323	100	227	100	3	인도(10.4)	인니(4.6)
FTA	소재(72류)	163	73	85	61	4	베트남(6.5)	미국(3.2)
	제품(73류)	61	27	55	39	5	미국(5.2)	인도(2.1)
	계	224	100	140	100	합계(48.4)		합계(77.7)

〈표3〉 주요 철강 상품의 교역

순위	수 출(백만불)			수 입(백만불)		
	품명	금액(share%)	1위국(%)	품명	금액(share%)	1위국(share)
1	도장강판	6,096(25.6)	중국(12.4)	열연강판	2,756(17.6)	중국(30.6)
2	열연강판	5,360(23.2)	인도(15.8)	철스크랩	2,349(15.0)	일본(61.5)
3	스텐강판	2,570(11.1)	베트남(15.4)	스텐강판	1,768(11.3)	중국(39.7)

순위	수 출(백만불)			수 입(백만불)		
	품명	금액(share%)	1위국(%)	품명	금액(share%)	1위국(share)
4	냉연강판	2,339(10.1)	중국(24.0)	철합금	1,637(10.5)	중국(18.0)
5	전기강판	2,084(9.0)	중국(22.1)	도장강판	1,418(9.1)	중국(86.5)
6	철합금	869(3.8)	네델(31.6)	반제품	1,025(6.5)	일본(44.5)
합계		19,318(82.8)			10,953(70.0)	
전체		23,098		전체	15,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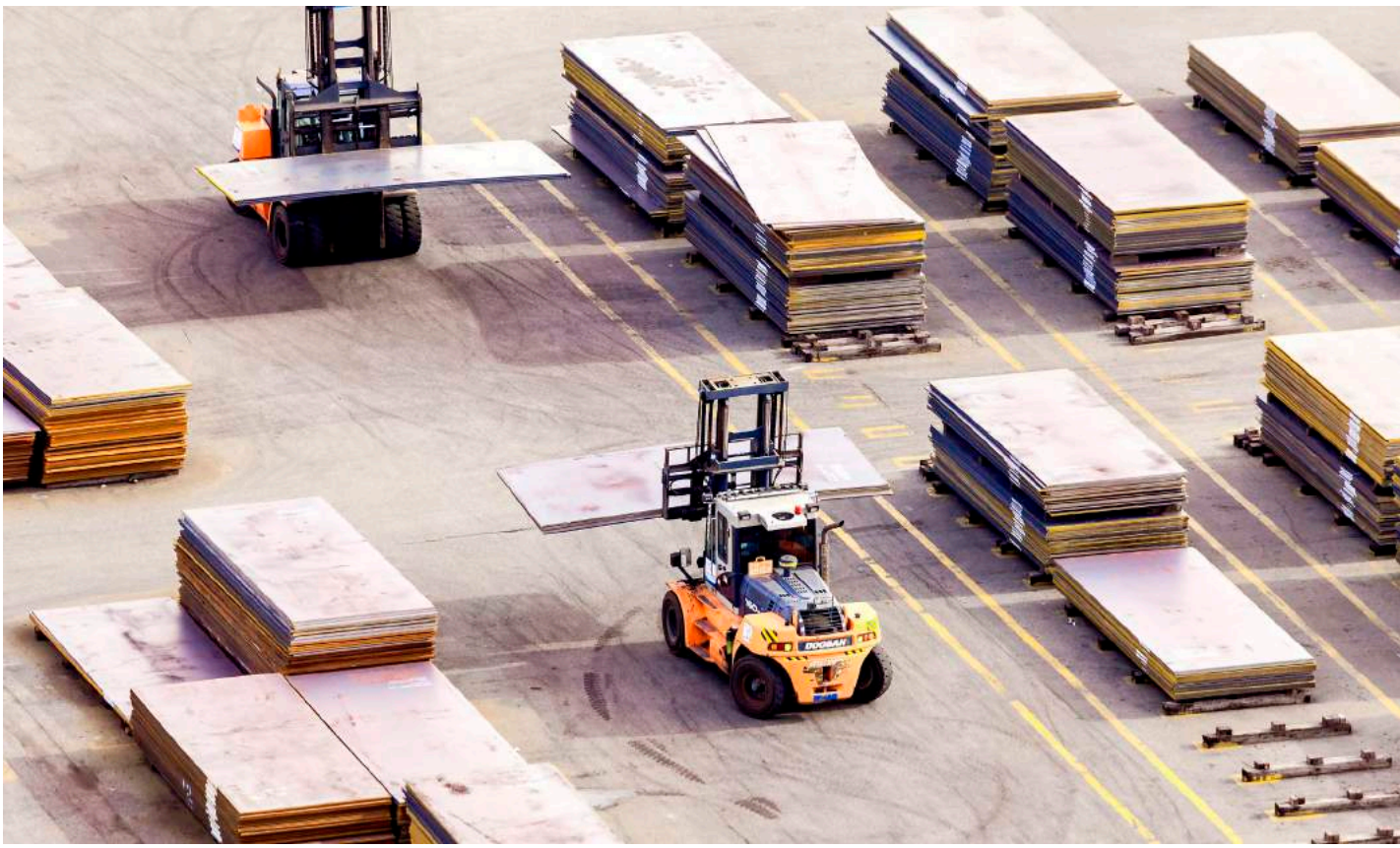

3. 철강의 정의와 분류

철강(鐵鋼)은 철(鐵: Iron)과 강(鋼: Steel)의 복합어로서 철(鐵:iron)은 금속원소의 하나로 순철을 의미하고, 지구지각의 5%로 존재하고, 탄소·규소·알루미늄 다음으로 많으며, 순철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철광석에 함유되어 있다.

강(鋼)은 성분에 따라 비합금강과 합금강(合金鋼)으로 분류하며, 비합금강은 보통강, 탄소강으로 부르고, 탄소의 함량에 따라 저탄소강, 고탄소강으로 구분하고, 합금강(Alloy steel)은 특별한 성질(내식, 내열, 내강 등)을 보강하기 위해 탄소강에 탄소 이외의 합금원소(크롬, 니켈, 몰리브덴, 코발트, 망간, 텅스텐, 바나듐, 구리, 티타늄, 규소 등)를 한가지나 두 가지 이상 첨가한 것을 말한다.

합금강 중 크롬 10.5% 이상 함유한 것을 스테인리스강[4]이라고 하고, 스테인리스강은 합금성분에 따라 크롬계(13Cr계: STS 400, 18Cr계 STS 430)와 크롬-니켈계(18Cr-8Ni계 STU 300, 16Cr-7Ni-1Al계: STS631)로 구분한다.

4) 스테인리스강은 불수-강(不銹鋼), 내식강(耐蝕鋼),이라도 부르고, 생활용어순화(문체부고시)로 '스덴', '스텡' 대신에 순화한 용어 '스테인리스', '안녹쇠'라 쓰라고 권장하고 있다.

〈표4〉 철강 소재의 종류와 분류

구 분			제품분류			HS 분류
원료철			선철(주강용, 주물용), 환원철, 고순도철, 철합금, 철스크랩(고철), 철강의 분말과 입상			제72류 (제1절)
철	순철(탄소 0.02%이하)		잉곳, 반제품, 철판, 철봉, 철선			제72류 (제2절)
강	비합금강 (탄소강) 탄소2% 이하	탄소강 저탄소강 (보통강) 고탄소강 (특수탄소강)	조강	잉곳		
				반제품 (강괴)	슬래브, 블룸(대형강편), 빌렛(소형강편), 시트바, 라운드바	
			강재	강판	열연코일, 열연시트, 후판, 냉연코일, 냉연강판, 산세강판	
					표면처리강판 : 칼라강판, 도금강판, 무늬강판	
				형강	H형강, L형강, 앵글, 채널 등	
				봉강	선재(Wire rod), 기타 봉(철근 등)	
				강선	강선, 피아노선 등	
				강관	무계목관/계목관(접합관)	제73류
	합금강 (특수강)	스테인리스강	조강	잉곳, 반제품(빌릿, 슬래브 등)		제72류 (3절)
			강재	스테인리스 강판, 형재, 봉재, 선		
		특수합금강	조강	잉곳, 반제품(빌릿, 슬래브 등)		제72류 (4절)
			강재	강판(전기강판, 기타), 형재, 봉재, 선		

4. 철강의 생산공정과 주요 생산품

1. 일관제강(용광로) 공장

일관제강(용광로)공장은 철광석(26류: 2601호)과 유연탄(27류:2701호)을 원료로 출발하여 제선(製銑)-제강(製鋼)-연주(連鑄)-압연(壓延)의 4개 공정을 걸쳐서 철강소재(72류)를 생산하는 종합제철소이다.

제선은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 쇳물을 뽑아낸다. 쇳물을 굳힌 것을 무쇠 또는 선철(7201호) 이라 한다. 쇠물을 제강로로 이송하여 불순물제거, 탄소함량(2%미만)조정하여 탄소강을 만들거나 합금원소를 첨가하여 합금강을 만들어 연속 주조기에서 성형하여 반제품(빌릿, 슬래브: 7207호)을 만든다. 대부분 압연공정으로 넘어가지만 일부는 반제품 상태로 국내 압연공장에 판매하거나 수출을 하기도 한다.

압연공정은 반제품(슬라브: 7207호)을 열간압연(Hot rolling)하여 열연코일(HR coil: 7208호)을 만들어 일부는 국내공급과 수출하고, 일부는 추가로 산세공정을 거쳐 산세열연코일(PO Coil:7208호)을 만들어 국내공급 및 수출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냉간압연(Cold rolling)하여 냉연코일(CR Coil: 7209호)을 만들어 국내공급 및 수출을 하거나, 추가로 냉연코일을 도금/도장하여 도금/도장강판(7210호)을 만들어 국내공급 및 수출을 한다.

또한 반제품(슬래브)를 압연하여 후판(厚板: plate: 7208호, 두께 6mm 이상)을 만들어 국내공급 및 수출을 한다. 반제품(빌릿:7207호)을 압연하여 선재(線材: Wire rod:7213호)를 만들어 국내 강선(7217호)을 만드는 공장에 공급하거나 수출을 한다.

일관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철강재(선철,잉곳, 반제품, 강판류, 선재)은 철광석 포워드(Ore forword)로서 세번변경기준(류변경 CC 26류 ⇒ 27류)기준은 물론 부가가치기준(RVC40)도 충족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제조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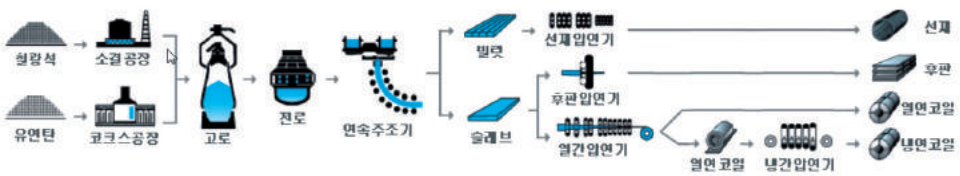
생산품	선철(7201호), 반제품(슬래브, 빌릿 : 7207호), 열연코일과 후판(7208호), 냉연코일(7209호), 도금강판(7210), 선재(7213호), 슬래그 (2618/2619호)
제조사	포스코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 현대제철(당진제철소)

출처: 한국철강협회

2. 전기로제강공장

전기로 제강공장은 고철이나 철스크랩(7204호)을 원료로 출발하여 제강(製鋼)-연주(連鑄)-압연(壓延)의 3개 공정을 통하여 철강소재(72류)를 생산하는 제강소이다. 제강공정에서 철스크랩을 전기로에서 용해, 정연(불순물 제거, 탄소함량 2% 이하 조정 및 합금성분 첨가)하여 강철(탄소강과 합금강)을 만들고, 연주공정에서 반제품[블룸·빌렛, 슬래브 등 7207호]을 만든다. 반제품은 대부분 바로 압연공정으로 넘어가지만 일정 부분은 국내 압연공장에 판매하거나 수출하기도 한다.

합금 반제품(슬라브)를 압연하여 스테인리스강판이나 전기강판을 만들어 국내에 공급하거나 수출한다. 반제품인 블룸, 빌릿을 압연하여 봉강, 형강, 선재 등을 만들어 국내에 철강제품 제조공장에 공급하거나 수출한다.

전기로공정에서 생산된 철강재은 철스크랩 포워드(Scrap forword)로서 세번변경기준(호변경 CTH) 기준을 충족하나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원료인 철스크랩(7204호)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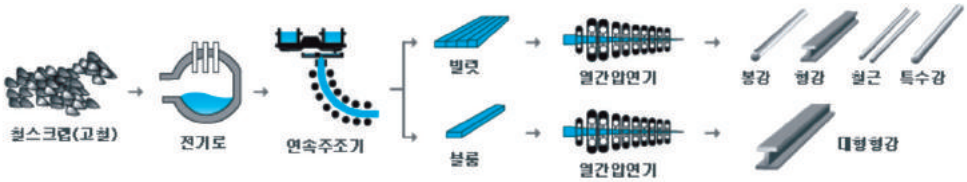
생산품	철강재(비합금강) : 반제품(블룸, 빌릿 : 제7207호), 봉강 (철근 등 7214호), 형강(H빔등 7216호), 합금강재 : 스테인리스강판(7219호), 규소전기강판(7225호) 등
제조사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특수형강 등

출처: 한국철강협회

3. 단독압연공장

(1) 국내외산 반제품(빌릿, 슬래브: 7207호)을 압연하여 형강(7216호)를 만들거나, 선재(Wire rod: 7213호)를 만드는 공장이다.

(2) 국내외산 열연코일(제7208호)을 냉간압연을 거쳐 냉연강판(7209호)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3) 국내외산 선재(Wire rod: 7213호)를 압연인발하여 철강선(steel wire 7217호)을 만드는 공장이다.

(4) 국내외 강판(열연/냉연 강판)을 둥글게 말아 용접하여 각종 접합강관(계목관)을 만드는 공장이다.

4. 표면가공업체

국내산 또는 외국산 열연산세강판(7208호) 또는 냉연강판(7209호)을 도금 또는 도장하여 도금도장강판(제7210호) 제조하는 공장이다.

5. 단순가공 업체

국내외산 광폭(600mm이상)의 열연코일(7208호), 냉연코일(7209호), 도금/도장코일(7210호)을 특정한 사이즈로 절단하여 폭 600mm미만으로 만든 철판(7211호나 7212호)을 공급하는 업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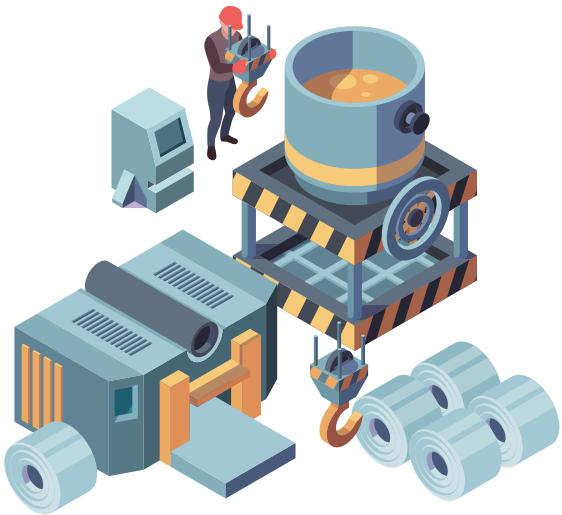

5. 철강의 관세품목분류 및 품목별 교역현황

철강과 철강제품은 제72류와 제73류로 나누어 분류하는데, 제72류에는 원재료(일차제품, 철강스크랩), 반제품(블룸, 빌릿, 슬래브등), 철강재(판재, 형재, 봉재, 선재)가 분류되고, 제73류에는 제72류의 철강재로 만든 각종 철강제품이 분류되는데, 다만 강관류는 제73류에 분류된다.

〈표5〉 제72류 철강의 관세품목분류

품 명			품목번호	교역(백만불)	
				수출	수입
철강(鐵鋼 : Iron and steel)			72류	23,098	15,678
제1절 철강의 원재료 (일차제품)	선 철	선철/합금순철	7201	17	70
	부원료	슈피겔철(경철)			
		합금철	7202	869	1,637

품 명						품목번호	교역(백만불)	
							수출	수입
제1절 철강의 원재료 (일차제품)			원 료		환원철과 순철	7203	0	122
					철강스크랩/재용해용잉곳	7204	197	2,349
			철강의 알갱이(입상)/가루(분말)			7205	48	182
제2절 철과 비합금강	탄소강 (보통강)	강괴	잉곳 등			7206	0	1
			반제품		블룸/빌릿/슬래브	7207	174	1,025
		강재	판재 (강판)	폭 600mm 이상	열연강판	7208	5,360	2,756
					냉연강판	7209	2,339	306
					도금/도장강판	7210	5,906	1,361
				폭 600mm 미만	열/냉연강판	7211	152	27
					도금/도장강판	7212	196	57
			봉재 (봉강)	열간압연봉	선재(코일)	7213	476	345
					기타(철근)	7214	205	429
				냉간압연 봉등				
				기타 봉		7215	42	63
			형재(형강)			7216	710	516
			강선			7217	360	176

품 명						품목번호	교역(백만불)	
							수출	수입
합금강(특수강)	제3절 스텐리스강	강괴	잉곳 등 일차제품, 반제품(블룸/빌릿, 슬래브 등)			7218	4	20
		강재	강판	600mm이상	열연/냉연	7219	2,278	1,707
				600mm미만	열연/냉연	7220	292	61
			봉재	열간압연봉	선재(코일)	7221	133	152
					기타 열연봉	7222	105	174
				기타 봉(냉간압연, 인발한 것)				
			형재					
			선			7223	208	79
	제4절 특수강	강괴	일차제품(잉곳 등), 반제품(블룸, 빌릿, 슬래브 등)			7224	5	88
		강재	판재	폭600mm이상	전기강판등	7225	1,972	811
				폭 600mm미만	전기강판등	7226	112	128
			봉	열간압연봉	선재(코일)	7227	158	342
					기타	7228	453	610
				기타 봉				
			형강/중공드릴봉					
			선			7229	329	84

통계출처: 관세청무역통계

6. 철강의 FTA협정국별 교역과 원산지기준

제72류(철강)의 품목별 FTA원산지기준은 세번변경기준[류변경(CC), 호변경(CTH), 소호변경 (CTSH)[5]] 부가가치기준(RVC, 공제법), 공정기준, 선택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아세안과 베트남은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부가가치기준(RVC40)중 선택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세변변경기준 중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철광석 포워드(Ore forword: CC)기준, 반제품 포워드(Semi Product forward)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FTA협정마다 조금씩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잘 확인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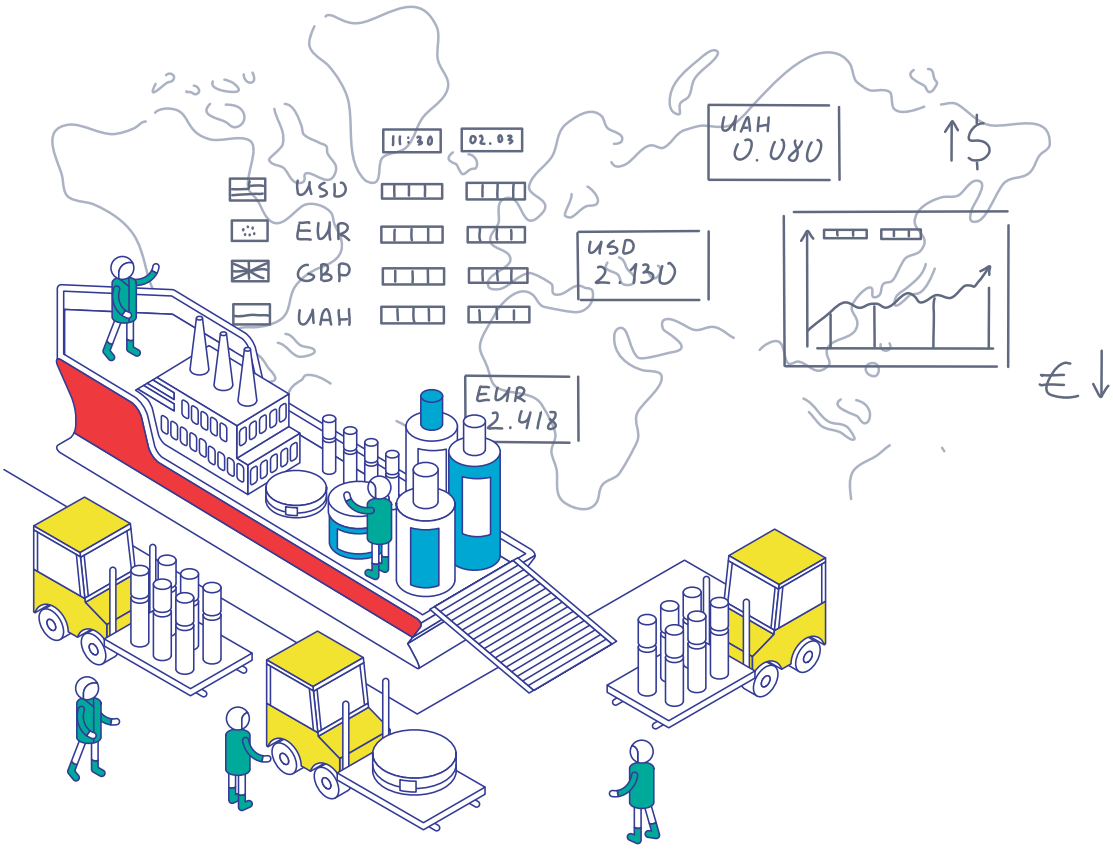

5)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Change of Chapter), 4단위 세번변경기준(CTC : 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표6〉 제72류(철강)의 교역현황과 원산지 기준

지 역		협정국	수출입(백만불)		품목별 원산지 기준
			수출	수입	
미주 지역	북미	미국	1,393.6	495.6	선철, 철합금, 직접환원철(7201-7203호)는 CC기준, 기타품목(7204-7229호)는 CTH기준으로 기준요건 충족을 완화하는 대신에 수출 쿼터량을 정함(수출제한 품목으로 한국철강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
		캐나다	277.9	40.2	전품목 CTH 기준 적용
	남미	칠레	23.4	0.2	7201호 CC, 7203-7229호는 CTH 적용
		페루	38.5	0	7201-7205호 CTH, 7206-7229호 CTSH 적용
		콜롬비아	72.7	3.4	스텐인리스강판(7219/7220호)은 선택기준(CTH or 공제법40%), 그 외 품목은 CTH 채택
	중미	중미국	115.6	13.7	전품목 CTH기준 적용
아주 지역	아세안	아세안[6]	3,231.6	1,120.0	냉연강판(7209)와 스테인리스강판(7220호, 단 7219호 제외)은 CTH기준, 기타품목은 공통기준(CTH이거나 RVC40기준)적용
	기타	중국	3,184.5	5,383.9	열간강판(7208호)와 냉간강판(7208호)는 철광석, 철스크랩으로 부터 생산, 그 외는 CTH적용 철스크랩(7204호)은 완전생산기준
		베트남	1,459.6	192.1	전품목 CTH(CTSH) 또는 RVC40 기준 선택
		싱가포르	102.8	4.5	전품목 CTH 기준 적용
		인도	2,347.4	329.5	전품목 CTH 기준 적용

6) 아세안국가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별도 협정체국가로 통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외함

지 역		협정국	수출입(백만불)		품목별 원산지 기준
			수출	수입	
유럽 지역	EU	EU	2,767.1	674.0	원료(일차제품)와 반제품는 CTH 기준 적용 철강재(판재, 형재, 봉재, 선)는 반제품 포워드기준 적용. EU와 영국은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쿼터량을 정함(수출 제한품목으로 한국철강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
	기타	영국	197.8	46.6	
		터키	817.6	13.6	
		EFTA	7.5	11.7	전품목 CTH 기준 적용
대양지역		호주	220.4	89.9	합금철(7202호: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코크롬, 페로텅스텐)는 CC기준, 철강재중 냉연강판, 도금도장강판은 반제품(7207호) 포워드, 스테인리스강판은 CTSH, 기타 품목은 CTH기준 적용
		뉴질랜드	85.7	36.7	일부 강봉 제외한 전품목 CTH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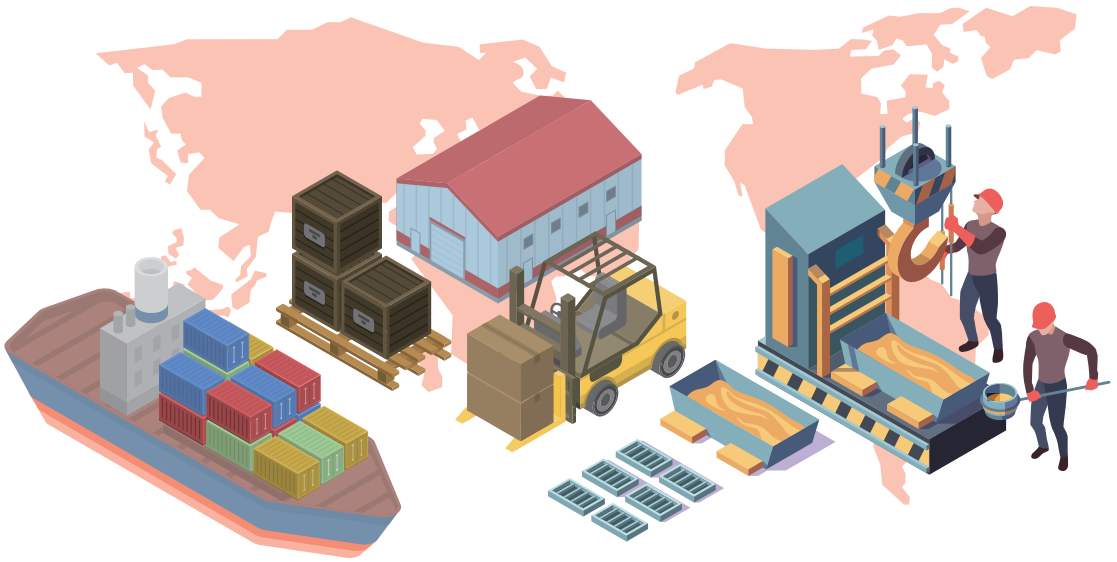

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400% 활용하기

기업의 모든 자료관리부터 사후검증 대비까지 PASS

김소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

FTA-PASS 400% 활용하기

기업의 모든 자료관리부터 사후검증 대비까지 PASS

FTA-PASS는 2010년 관세청 주관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였고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업무를 위한 원산지관리 시스템으로 제조/수출기업을 위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FTA-PASS에서는 정확한 원산지판정,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과 유통,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 사후검증대비 등이 가능하다.

기업에서 FTA-PASS의 핵심인 원산지 판정 기능을 잘 활용 하기 위해서는 자료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대 메뉴 중 부가가치기준을 판정할 수 있는 메뉴인 거래정보에 대해 설명한다.

김소연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

1.1. FTA-PASS란?

FTA-PASS는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이다.

FTA-PAS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 사전교육 → 정보입력 → 판정 및 서류발급→ 사후관리]와 같은 과정을 통해야 한다.

특히, 회원가입 후 사전교육을 받아 FTA-PASS에 대한 이론 및 실습후에 사용하여야 정확한 FTA 업무를 할 수 있다.

①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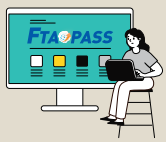

- FTA-PASS 접속
- 기업정보 입력
- 가입완료

② 사전교육

- 원산지결정기준
- 재료비산정방법
- 원산지관리준비
- FTA-PASS 활용 실습

③ 정보입력

- 기준·거래정보
  - 단건수기등록
  - 엑셀일괄등록
  - ERP자료연계

④ 판정·서류발급

- FTA 체약상대국 원산지판정
- 원산지증명서류 발급
  -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확인서
  - 국내제조확인서

⑤ 사후관리

- 1대1 현장지원
- 협력사 교육
- 문의상담
- 기능개선제안

1.2. FTA-PASS 주요기능

FTA-PASS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원산지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증명서류 발급·관리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을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시스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FTA-PASS에서는 정확한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류 발급과 유통,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 원산지검증 대비 등이 가능하다.

FTA-PASS의 주요 기능들을 활용하려면 정보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등록해야 할 메뉴는 기준정보이다. 기준정보는 수정 빈도가 낮은 원산지 기초 정보 관리 메뉴이며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메뉴이다.

그 다음으로 등록해야 할 메뉴는 거래정보이다. 다음장부터 정보관리 중 두 번째인 거래정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정확한 원산지판정!

-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류 발급부터 유통까지!

- 원산지증명서(자율/기관),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발급·유통

원산지 입증자료는 안전하게 보관!

- 원산지판정 및 서류발급 이력관리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류 관리

원산지 검증까지 완벽하게 대비!

-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 자동 생성·출력

2. 거래정보란?

거래정보는 정보의 입력자료 수정 빈도가 높은 원산지 기초 정보 관리 메뉴이다. 거래정보는 3가지 소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매단가, 판매단가 메뉴는 부가가치기준 판정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메뉴이며, 근거서류 메뉴는 사용자 활용 의도에 따라 이용하면 되는 부가서비스 성격을 지닌 메뉴이다.

아래에서는 거래정보에 있는 구매단가, 근거서류, 판매단가에 대해 각각의 메뉴에서 어떤 작업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FTA-PASS 주요 대메뉴

① 기 준 정 보 : 입력자료 수정 빈도가 낮은 원산지 기초 정보 관리

② 거 래 정 보 : 입력자료 수정 빈도가 높은 원산지 기초 정보 관리

③ 판 정 관 리 : 원산지판정 수행 및 판정결과 조회

④ 서 류 관 리 : 원산지증명서류 발급 및 원산지확인서 유통(송수신), 문서보관

⑤ HS 정보조회 : 원산지결정기준, HS연계표 (HS2017 ↔ HS2012 ↔ HS2007) 등을 조회

⑥ 시 스 템 관 리 : 사용자 및 기업정보 관리

2.1. 구매단가

구매단가 메뉴는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메뉴이다. 따라서 정보 수정빈도가 타 메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매입처 및 매입기준일을 토대로 구매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동일한 원재료에 대해 거래하는 매입처가 다수일 경우 매입처별로 단가등록을 상이하게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원재료 및 매입처이지만 단가정보만 변동될 경우 상이한 일자별로 단가만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구매단가 입력시 구매단가 이외에도 계산되어야 할 금액이 있다면 가산조정액 항목을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상이한 정보들은 자재명세서 메뉴에 등록된 정보들(매입처, 매입단가)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며 이는 원산지 관리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구매단가 메뉴는 원재료 단가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매이력 관리의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원산지 제품임을 인증하고 싶은 경우 포괄확인기간 안에 원재료를 구매해왔는지 확인하여 FTA 활용이익을 볼 수 있다.

2.2. 근거서류

근거서류 메뉴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하는 메뉴이며 적어도 1년에 1번은 정보 수정이 필요한 메뉴이다. 해당 메뉴에서는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다.

근거서류 메뉴를 활용하게 되면 협정별로 포괄확인기간 동안 특정 원재료에 대해 역내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 원산지 판정시 유리하다.

특히, 원재료가 상품인 경우 (구매 후 자사에서 충분한 가공 없이 판매) 자재명세서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원재료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원산지 입증서류를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FTA-PASS 메뉴 중 물품 정보에서 원재료 상품여부에 체크한 물품들은 근거서류 메뉴를 활용하여야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다.

2.3. 판매단가

판매단가 메뉴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메뉴이다. 구매단가 메뉴와 마찬 가지로 정보 수정 빈도가 타 메뉴들보다 매우 높은 편이며 매출처 및 매출일을 토대로 판매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동일한 완제품에 대해 거래하는 매출처가 다수일 경우 매출처별로 단가등록을 상이하게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완제품 및 매출처이지만 단가정보만 변동될 경우 변동된 일자별로 단가만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판매단가 입력시 협정별로 가격기준을 상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FTA-PASS에서는 EXW 기준과 FOB 가격기준을 지원한다.

이렇게 상이한 정보들은 자재명세서 메뉴에 등록된 생산일자(적용일자)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며 이는 원산지 관리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판매단가 메뉴는 완제품 단가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매출처별 협정 관리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물품별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면 거래처 메뉴에서 등록한 국가를 근거로 판정이 이루어지며, 해당 국가가 포함된 협정이 신규로 추가될 때마다 판정만 다시 수행하면 신규 협정은 시스템에서 자동판정 및 추가된다.

3. 마무리하며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매달 FTA 및 시스템 기능 이해를 위한 내용을 소식지로 제작하여 회원사에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FTA-PASS 회원으로 가입하면 등록한 메일을 통해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덧붙여 FTA-PASS 활용기업을 위해 품목분류(HS) 자문, 현장방문, 원격지원, 전화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서 FTA-PASS를 사용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FTA-PAS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 FTA-PASS를 무료로 활용하세요!

▶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ftapass.or.kr

1. FTA-PASS 개요

■ 시스템 개요

중견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로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 활용상 이점

정확한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관리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실현

2. FTA-PASS 주요기능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빙 서류 발급	체계적인 정보관리	원산지검증 대비
▶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판정	▶ 원산지증명서(자율/기관),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 확인서 발급·유통	▶ 원산지판정 및 서류발급 이력관리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류 관리	▶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 자동 생성·출력

3. FTA-PASS 활용 유형

기본형	수출 (재고관리기능 사용)	· 재고관리기법(월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료비를 산출 -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원장, 매출원장, 수불부, FTA별 정보관리 (엑셀13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수출/국내공급 (재고관리기능 미사용)	· 사용자가 정의한 재료비를 사용하여 원산지관리 -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단가, 판매단가 (엑셀 9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간편형	국내공급 (영세기업)	· 최소한의 정보와 노력으로 원산지관리 - 정보관리 : 거래처, 자재명세서 (엑셀 2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작성대장, 서명카드
체험형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	· 로그인 없이 최소한의 정보 입력으로 모의판정 가능 - 수출(공급)물품의 자재명세서(BOM) 입력 후 원산지판정 수행

상담전화 : 1544-0645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문의메일 : fta-pass@origin.or.kr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와 이를 수입하는 FTA 체약상대국의 HS CODE의 해석 상이에 따른 대응

신호근 | 관세법인 한림(서울) 대표 관세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와 이를 수입하는 FTA 체약상대국의 HS CODE의 해석 상이에 따른 대응

신호근
관세법인 한림(서울) 대표 관세사

FTA 업무를 하다보면 기업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FTA 체약상대국과의 HS CODE 다른 경우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많이 받곤 한다.

HS 코드는 FTA 협정상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보니 HS 코드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다를 경우 FTA 협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HS CODE가 다른 경우 어떻게 이러한 사항을 해결해야할지 사례와 함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서론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은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다. 해당 수출신고를 할 때 수출자, 제조자, 환급신청인, 거래구분,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유무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작성하며 수출물품에 대한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10자리)는 수출신고서 35번란에 기재한다.

해당 HSK는 일반적으로 수출화주, 수출신고인으로서 관세사가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품명, 기능, 용도, 재질, 보존법, 가공 등을 검토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관련 주, 호의 용어, 각 부, 류의 총설, 호 해설 및 소호 해설 등에 근거를 두고 결정한다. 또한 HS 분류의견서,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 고시 등 사례 역시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체약상대국인 경우 수출신고 목적의 품목분류를 통한 HS코드를 확인 뿐 만 아니라 수입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HS코드 또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HS는 국제거래물품에 대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지만 각국의 해석에 대한 상이함으로 인하여 동일 물품인 경우에도 6자리가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제품의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관련 FTA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체약상대국에서 FTA 적용실익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할 수 있지만 동일물품에 대하여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행 시 수출신고서상 HS 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며 체약상대국의 HS 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

FTA 협정상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인 HS 코드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해석상의 차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사례

A는 특정 과실을 이용하여 쥬스를 제조한다. 해당 물품에 대한 각종 전시회 참가, SNS 활동 등을 한 결과 EU 회원국 중 어느 국가로부터 구매의사를 받아 해당 물품을 해당 국가로 수출하고자 한다.

A는 수소문 끝에 관세청 홈페이지 HS 정보시스템에서 쥬스란 품명을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아래 표상 HS 제2009.89호(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쥬스)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세사로부터 해당 쥬스는 제2009호에 분류됨을 확인(분류의견서) 받았다.

분류단계	호의 용어(품명)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009호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2009.89호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 기타
제2009.89-10호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이외의 과실주스
제2009.89-1090호	기타 과실주스

추가적으로 관세사로부터 상기와 같이 쥬스의 경우 품목분류가 세분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결과 회신을 HSK HS 제2009.89-1090호로 받았다.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개정 2020. 12. 22.〉)

따라서 A는 상기 HSK로 수출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HS코드로 EU 현지 관세율(MFN) 및 FTA 협정세율 및 관련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회하였다. 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관세율 (MFN rate)	
대상기간	2012.01.01 ~
기본세율	33.6 % + 20.6 EUR/ 100 kg (Third country duty)
FTA 협정세율 (FTA Preferential rate)	
FTA 협정 세율	0.0 %
발효일자	2011.07.01
대상기간	2012.01.01 ~

상기와 같이 FTA 적용실익(0%)이 있으며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A는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EU에 소재하는 자(B)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B는 해당 물품에 대한 HS는 자국에서 쥬스가 아닌 샐러드를 먹을 때 뿌려먹는 소스로 보아 HS 제2103.90호로 수입통관을 한다는 것을 회신 받았다.

HS 제2103.90호의 EU 현지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기본관세율 (MFN rate)	
대상기간	2000.07.01 ~
기본세율	7.7 % (Third country duty)

FTA 협정세율 (FTA Preferential rate)	
FTA 협정 세율	0.0 %
발효일자	2011.07.01
대상기간	2011.07.01 ~

HS 제2103.90호의 해당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A는 세관으로부터 해당 협정에 대하여 인증수출자를 받아 원산지신고문안을 상업서류에의 삽입을 통한 원산지 자율증빙 및 수출신고 모두 HS 제2009.89호로 하려 하였으나 당해물품에 대한 HS에 대하여 수입자와의 의견차이가 있어 수출신고 및 원산지 증명을 둘 중 어느 HS로 하여야 할지 난처해하고 있다.

2.2 해결 근거 및 방법

■ 수출신고서상 HS

수출신고는 우리나라 세관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HS에 대하여 관세사에게 문의, 분류사례 등을 통하여 관련 주규정, 호의 용어 등 근거 규정에 의하여 분류됨을 확인하고 정한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HS가 경합되는 등 정확한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 심사를 통하여 이를 해결 할 수 있다. 추가로 결정된 품목분류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관세청은 품목분류 사전 심사 결과에 대하여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고시를 한다.

3. 원산지증명을 위한 HS

사례와 같이 수입자가 다른 HS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소재하는 체약상대국에서 그 다른 HS로 수입을 한다는 공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개정 2020. 8. 4.)"을 정하여 다음 서류를 공적인 근거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 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상기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기업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주장하는 HS에 대한 근거로서 상기 서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당해물품을 샘플로서 먼저 해당 수입자에게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샘플의 현지 수입신고필증이 근거서류가 될 수 있다. 해당 서류는 일반적으로 현지 수입자가 제공해 준다.

해당 물품을 수입 후 누구에게 재판매하는지 수입신고필증만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공요청 사유를 설명하고 정중히 요구하는 경우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의 현지 수입자는 제공을 하였다.

즉, 동일물품에 대한 HS에 대한 차이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관련 협정세율은 HS를 기준으로 규정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HS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상기 지침으로 이를 인정하고 FTA 협정세율은 현지 체약상대국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FTA 협정의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일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원활한 발급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기관발급시 원산지증명서에 HS 코드가 기입되는 경우 상기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HS에 대한 상이점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수입국의 HS 기준으로 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수출국의 HS 기준으로 당연 충족을 하여야 한다.

해당 업무처리 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를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2018.7.9. 신설)

또한 앞서 언급된 사례에서 수출신고는 HS 제2009.89호, 원산지증명(한-EU : 자율적 송품장 증명 방식)은 HS 제2103.90호인 경우 한-EU FTA 적용 건이므로 6천 유로가 넘는 수출의 경우에는 관련 품목에 대하여 인증수출자를 받아야 한다.

이때 세관에 원산지증명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체약상대국간 HS에 대한 상이점을 다음과 같이 인정해주고 있다.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상기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 HS번호로 추가 인증처리(2020.8.4. 개정)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판 단 근 거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역내가치발생기준 35%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제품에 해당

우리나라에서 해당 사례에 대한 HS 제2009.89호에 대한 다음 원산지결정기준은 CTH를 당연 포괄하는 충족방식이다.(즉, CTH를 충족을 기본으로 추가적으로 제17류의 당류는 MC 30 %을 조건으로 함.)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업체는 세관으로부터 2가지 HS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고 2가지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인증수출자(또는 업체별인증수출자)를 지정받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4. 결론

FTA 원산지증명 시 수출제품에 대한 HS 코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대한 첫 단계이다. 해당 첫 단계에 의하여 원부자재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수취여부 등이 필요 또는 충분조건인지 정해진다.

품목분류는 국가별로 기능, 용도 등에 따라 HS 코드에 대한 해석이 다르며 우리나라 안에서도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해서도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간 해당 물품의 HS 코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통하여 관세청의 의견을 확보하고 수입국 등 이와 다른 견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또한 검토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사후 검증에 대한 다양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FTA 활용 UP!!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 대표전화 ☎031.600.0701~3
www.orgin.or.kr

FTA 무역리포트
March 2021 Vol. 01(통합33권) (비매품)

발 행 일 2021년 03월

발 행 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 042)481-3282 / FAX : 042)481-7753
http://www.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3 /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 집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원산지정보원

디자인·인쇄 화신문화(주)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E-mail

□□□□□

우 표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담당자 앞

1 3 5 0 3

독자의 소리

〈FTA 무역리포트〉 독자의 소리를 2021년 6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FTA 무역리포트〉를 보신 소감을 적어 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yesfta.customs.go.kr
ftapass.or.kr

관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Tel. 042-481-3282 Fax. 042-481-7753

국제원산지정보원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야탑동 성남세관 5층)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